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791-0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 구 책 임 자 : 선민정(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장)
고명희(제주여성인권연대 전 대표)
강지영(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오윤정(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이연화(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지 원 : 현소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조원)
연 구 기 간 : 2021년 3월 ~ 11월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1.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 무 숙**

본 보고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연구 요약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자치법규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파급력이 매우 크며,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자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렇듯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자치법규에는 성차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송효진 외, 2016; 송효진 외, 2015; 전주상 외, 2017; 정형옥 외, 2008) 이러한 성차별적인 규정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성차별을 발생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자치법규에 대한 성차별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와 더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 상 정책 수혜 및 수급 요건 등에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이 필요한지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인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있는데 이는 제·개정 추진 대상인 법령 및 자치법규에 한해 실시되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제외되기 때문에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전체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 하지만 2016년에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10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성인지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

○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전체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인 규정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함.

2. 연구대상

○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21년 4월 19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전체로 해당 자치법규 총 개수는 1,039개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를 행정안전부 정부기능분류체계(2020. 7. 31.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자치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담당 부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14개의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 및 정리하였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성별영향평가 관련 문헌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현황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

- 여성가족부의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지표(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에 기초한 성인지적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성차별적 사안 도출 및 개정방향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나.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자치법규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현황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공동연구자 대상 워크숍

- 대상 : 공동연구자
- 방법 : 워크숍 (1회당 2시간씩 총 3회 실시)
- 내용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워크숍에서는 법령 특정성별영향평가 방법 및 법령에서의 젠더 이슈 공유를 통하여 공동연구자들의 역량강화 등을 도모.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정 및 이후 워크숍에서는 공동연구자 간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을 향상

○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대상 : 법령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총 5명
- 방법 : 초점집단면접조사 (1회당 2시간씩 총 2회 실시)
- 내용 : 법령에서의 성차별적 사안 등 공유 및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 법령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4명 내외
- 방법 : 회의 (1회당 2시간씩 총 2회 실시)
- 내용 : 연구방향, 연구방법, 자치법규에서의 성차별적 사안,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제언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제2장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이해

1.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개념 및 의미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성별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법령 또는 정책 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여 남녀 모두가 공평하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한애경 외, 2018). 2016년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대상 정책인 시행 중인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특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 대상인 시행 중인 조례·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을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함(성별영향평가법 제 10조 및 제10조의 2). 여기서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함(동법 제2조).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심층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하며, 특정된 평가 분석틀이나 분석 내용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음. 그리고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전문가에 의하여 평가가 실시되다 보니 일반인들이 체감하지 못했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성불평등한 구조적 문제까지도 찾아낼 수 있고 성인지적인 정책으로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김경희 외, 2013; 김수완·류연규, 2018; 여성가족부, 2021).

2.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

○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로 여성가족부의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자료를 활용하였음. 즉 여성가족부(2021) 자료에서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로 활용하였음.

○ 해당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평가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및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로 볼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1).

- 첫 번째 평가 항목인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①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와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두 번째 평가 항목인 '성별 특성'은 "제·개정 법령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세 번째 평가 항목인 '성별 균형 참여'는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네 번째 평가 항목인 '성별 통계'는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의 검토 결과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민방위 대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기준인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등의 별도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며,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에 불필요한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두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자치경찰제복 중 임부복의 경우 반팔 원피스형만 명시되어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이 나타나 바지형도 명시해 주도록 제안했음.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국어 진흥 관련 시행계획과 예산 지원 사업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개선과 성평등 언어증진'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그 이유는 2018년 '국어사전의 성차별성'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 결과, 성별어에 대한 770개의 단어 중 92개의 단어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성성·남성성을 강조하거나(35건, 38.1%)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지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20건, 21.7%)가 많았기 때문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 효행에 있어서의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 성별 고정관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하도록 제안했음. 그리고 조례명 및 조례 전체에서 출산 또는 저출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출산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산 또는 저출산 용어를 출생 또는 저출생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와 더불어 조문명이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로 되어 있어 여성에게만 출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져 조문 내용을 반영한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보호'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인상'이라는 표현은 전통적 여성성을 강조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음. 이와 더불어 '효자효부시상식'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자'는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 '효부'는 '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를 의미하므로

남성 중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효도 시상'이나 '효도상'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음.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이 「호적법」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고, 호적, 본적, 원적, 가본적의 용어는 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용어로 모두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2.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구급상황센터에서의 근무는 3교대로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와 임신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정 운영 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수난구조요원의 업무 특성 상 구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에 '성인지 교육 실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서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는데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20~39세 여성청년의 취업자 수가 남성청년에 비하여 더 적고,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은 등 질 낮은 일자리에서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이 강구되도록 제안하였음.

○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 고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시 '보행, 운전자, 대중교통, 임신과 출산,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공공이용시설)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농림 분야에서는 시상부문에 여성어업부문을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성어업인이 어촌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증진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농촌사회가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음. 이 외에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공원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를 반영하여 도시기반 시설 등에서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주로 네 가지 영역으로 제안되었음. 첫째는 관광종사원이나 해설사 또는 미디어 관련과 같이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강한 분야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성폭력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출판과 체육 관련 분야에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둘째는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치 시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도 대피하는 경우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셋째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과 생활체육 진흥 시책 강구 시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넷째는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이유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음.

○ 보건 분야에서 시행계획 수립이나 사업 등에 있어서 성별 또는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즉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사업,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별 간의 욕구와 필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되고 있어서 공중위생영업 지원에 불법촬영 등 예방 지원 사업도 추가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서 성별 특성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첫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른 필요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임.
- 둘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련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에서의 업무 및 사업이나 장년층 생애재설계와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하여 성별에 대한 다른 필요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 그리고 장애인 폭력예방 교육 실시할 때 여성 장애인, 특히 여성 지적장애인은 성폭력 등 폭력 피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성별 특성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음. 이와 더불어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도 같은 이유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하였음.
- 셋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련 도지사의 책무나 정책 시행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장수노인 복지시책을 개발, 발굴하거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 경로당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시행,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관련 도지사의 책무, 사회복지시책의 개발·시행,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지원 시행에 있어서의 도지사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시책 수립 등에 있어서의 도지사의 책무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다른 필요와 욕구가 있

기 때문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발달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성적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의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시 성별 및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장애인의 건강증진사업에 여성장애인의 생리, 임신, 출산 등 모성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향상 사업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내용,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수유시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공무원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에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응시원서에 성별, 외모, 연령 관련 정보 제출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났음.

○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도시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범죄예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 시에 포함되어야 할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에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음.

○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예시에 영·유아 및 임산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받은 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교육에 불법촬영 관련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해설사의 직무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음.

3.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모든 분야의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또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지니고 중요한 의사결정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 외에도 남성으로만 너무 많이 구성돼 있거나 정책결정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즉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관리요원, 의용소방대, 명예기마대, 농림 분야에서는 수리계의 임원 구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협의회,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청문주재자, 옴부즈맨,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 주민협의체, 유니버설 디자인 모니터링 참여단,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이 외에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현재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1명 이상의 여성의원'으로 개정하도록 제안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예시 중에는 문화·예술단체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하여 위촉직 위원 자격을 '대표'에서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여 위촉직 위원에 여성도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 완화'를 제안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 예시를 "관할 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장, 관할 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로만 규정하고 있음. 수산 및 어촌 관련 장이나 대표는 주로 남성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위촉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히게 됨. 이에 위촉직 위원의 위촉이 가능한 자격 예시에 "수산업 또는 어항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4.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성인지 통계 산출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즉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총 389개였음.

- 분야별로 개선이 요구되는 자치법규 수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개, ‘교육’ 분야는 9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개, ‘농림’ 분야는 31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0개, ‘보건’ 분야는 18개, ‘사회복지’ 분야는 57개,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는 11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4개, ‘재정·세제·금융’ 분야는 4개, ‘지역개발’ 분야는 12개, ‘통일·외교’ 분야는 6개, ‘해양수산’ 분야는 16개, ‘환경’ 분야는 46개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 요구 건수는 총 495건으로 나타났음.

- 지표별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에서는 개선 요구 건수가 14건이었고, ‘성별 특성’ 지표에서는 77건, ‘성별 균형 참여’ 지표에서는 253건, ‘성별 통계’ 지표에서는 151건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0건, ‘교육’ 분야가 12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1건, ‘농림’ 분야가 38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18건, ‘보건’ 분야가 21건, ‘사회복지’ 분야가 75건,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가 11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6건, ‘재정·세제·금융’ 분야가 5건, ‘지역개발’ 분야가 19건, ‘통일·외교’ 분야가 9건, ‘해양수산’ 분야가 18건, ‘환경’ 분야가 52건으로 나타났음.

<표 4-1> 성인지적 개선 요구 자치법규 수 및 건수 현황

분야	검토한 자치법규 수(개)	개선 요구 자치법규 수(개)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 요구 건수(건)				
			합계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1. 공공질서 및 안전	55	15	20	3	2	11	4
2. 교육	20	9	12	0	2	4	6
3. 교통 및 물류	62	10	11	0	5	4	2
4. 농림	91	31	38	0	5	26	7
5. 문화·체육·관광	127	80	118	3	20	45	50
6. 보건	47	18	21	0	5	9	7
7. 사회복지	128	57	75	3	20	32	20
8. 산업·통상·중소기업	46	11	11	0	0	11	0
9. 일반공공행정	300	74	86	5	9	58	14
10. 재정·세제·금융	14	4	5	0	0	2	3
11. 지역개발	24	12	19	0	4	10	5
12. 통일·외교	11	6	9	0	0	7	2
13. 해양수산	31	16	18	0	0	9	9
14. 환경	83	46	52	0	5	25	22
총 합계	**1,039**	**389**	**495**	**14**	**77**	**253**	**151**

2. 성인지적 자치법규를 위한 개선과제

가. 성인지적 개선 요구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성인지적 자치법규가 되기 위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자치법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성별 균형 참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한 자치법규와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도록 개선을 요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일괄개정을 통하여 한 번에 개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나. 의원발의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공무원은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대상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의원발의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의원이 제·

개정하는 자치법규의 심사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원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적 자문체계 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다.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본 연구에서 검토된 자치법규 이후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성별영향평가도 하지만 전문가가 이후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들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특히 의원발의 제·개정 자치법규는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기에 더욱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정기적으로 필요할 것임.

라.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성인지 교육 실시

○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과 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된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때 '성별영향평가'부문에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내용 및 성인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필요. 그리고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컨설팅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의원 및 도의회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등을 통하여 도의원 및 도의회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마. 성인지적 자치법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성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이처럼 성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자치법규 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하여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좋은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타 지역의 성인지적인 자치법규 사례를 발굴하여 자료화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대상 ·····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5

Ⅱ.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이해

1.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개념 및 의미 ····· 9
2.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 ····· 9

Ⅲ.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 공공질서 및 안전 ····· 15
2. 교육 ····· 38
3. 교통 및 물류 ····· 52
4. 농림 ····· 65
5. 문화체육관광 ····· 106
6. 보건 ····· 246
7. 사회복지 ····· 269
8. 산업·통상·중소기업 ····· 348
9. 일반공공행정 ····· 360
10. 재정・세제・금융 ····· 456
11. 지역개발 ····· 462
12. 통일・외교 ····· 484
13. 해양수산 ····· 494
14. 환경 ····· 516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 587
2. 성인지적 자치법규를 위한 개선과제 ····· 588
가. 성인지적 개선 요구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 588
나. 의원발의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589
다.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589
라.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성인지 교육 실시 ····· 589
마. 성인지적 자치법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590

참고문헌 ····· 591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대상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자치법규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파급력이 매우 크며,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자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렇듯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자치법규에는 성차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송효진 외, 2016; 송효진 외, 2015; 전주상 외, 2017; 정형옥 외, 2009) 이러한 성차별적인 규정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성차별을 발생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자치법규에 대한 성차별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와 더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 상 정책 수혜 및 수급 요건 등에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이 필요한지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인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있는데 이는 제·개정 추진 대상인 자치법규에 한해 실시되고, 이미 제정되어 있던 자치법규나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제외되기 때문에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전체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

○ 하지만 2016년에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10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성인지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전문 연구진에 의뢰하여 몇 년에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야별로 차례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송효진 외, 2016; 송효진 외, 2015; 전주상 외, 2017).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체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체가 되어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된 적은 전무함.

○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특정된 평가 분석틀이나 분석 내용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조사기법들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성차별적인 사안들을 심층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성인지적인 개선안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많이 실시하고 있음(김경희 외, 2013; 김수완·류연규, 2018; 여성가족부, 2021). 따라서 제·개정 중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 등 자치법규 전체를 대상으로 내제되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성차별적인 사안들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를 통하여 자치법규로 인한 광범위한 성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전체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인 규정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함.

2. 연구 대상

○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21년 4월 19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전체로 해당 자치법규 총 개수는 1,039개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를 행정안전부 정부기능분류체계(2020. 7. 31.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자치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담당 부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 및 정리하였음. 행정안전부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주요 분야는 총 17개로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교육, 교통 및 물류, 국방, 농림,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통상·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 재정·세제·금융, 지역개발, 통신, 통일·외교, 해양수산, 환경임. 해당 분야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를 분류한 결과, 과학기술 및 국방, 통신 분야를 제외한 총 14개의 분야로 나타났음.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자치법규

분야	자치법규 개수	분야	자치법규 개수
1. 공공질서 및 안전	55	8. 산업·통상·중소기업	46
2. 교육	20	9. 일반공공행정	300
3. 교통 및 물류	62	10. 재정·세제·금융	14
4. 농림	91	11. 지역개발	24
5. 문화·체육·관광	127	12. 통일·외교	11
6. 보건	47	13. 해양수산	31
7. 사회복지	128	14. 환경	83
총 계		1,039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 성별영향평가 관련 문헌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현황 검토

○ 자치법규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현황 검토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1,039개(2021. 4. 기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의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지표(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에 기초한 성인지적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성차별적 사안 도출
○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의 개정방향 제시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성인지적인 자치법규가 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나.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 자치법규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현황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2) 공동연구자 대상 워크숍

○ 대상 : 공동연구자
○ 방법 : 워크숍 (1회당 2시간씩 총 3회 실시)
○ 내용 : 공동연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실시 중, 실시 후로 전 과정에서 실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워크숍에서는 법령 특정성별영향평가 방법 및 법령에서의 젠더이슈 공유를 통하여 공동연구자들의 역량강화 등을 도모.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정 및 이후 워크숍에서는 공동연구자 간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을 향상.

3)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대상 : 법령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총 5명
○ 방법 : 초점집단면접조사 (1회당 2시간씩 총 2회 실시)
○ 내용 : 법령에서의 성차별적 사안 등 공유 및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검토

4)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 법령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4명 내외
○ 방법 : 회의 (1회당 2시간씩 총 2회 실시)
○ 내용 : 연구방향, 연구방법, 자치법규에서의 성차별적 사안,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제언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 검토 · 관련 현황 및 정책 검토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회)
4단계	조사 실시	➪	· 문헌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공동연구자 대상 워크숍 실시 (3회) · 초점집단면접조사 실시 (2회)
5단계	조사 결과 분석	➪	· 결과 분석 · 집필
6단계	정책 제언	➪	· 정책 제언

제 2 장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이해

1.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개념 및 의미
2.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

1.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개념 및 의미

○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각각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음. 2016년에는 동법에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임(여성가족부, 2021).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성별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법령 또는 정책 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여 남녀 모두가 공평하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한애경 외, 2018).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대상 정책인 시행 중인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특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 대상인 시행 중인 조례·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을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함(「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여기서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함(동법 제2조).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심층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하며, 특정된 평가 분석틀이나 분석 내용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음. 반면에 성별영향평가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실시되며,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음(김수완 · 류연규, 2018; 여성가족부, 2021).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전문가에 의하여 평가가 실시되다 보니 일반인들이 체감하지 못했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성불평등한 구조적 문제까지도 찾아낼 수 있고 성인지적인 정책으로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김경희 외, 2013; 김수완·류연규, 2018).

2.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

○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로 여성가족부의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자료를 활용하였음. 즉 여성가족부(2021) 자료에서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로 활용하였음.

○ 해당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평가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및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로 볼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1).

- 첫 번째 평가 항목인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①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와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두 번째 평가 항목인 '성별 특성'은 "제·개정 법령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세 번째 평가 항목인 '성별 균형 참여'는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네 번째 평가 항목인 '성별 통계'는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표 2-1>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 point
Ⅰ.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예)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과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을 다르게 판정하는 부상의 등급 판정 규정이나 훈·포장 수여 시 남성과 여성의 훈장 크기를 달리하는 규정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상시여성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반영 1-3.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Ⅱ. 성별 특성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Ⅲ.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 point
Ⅳ.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주: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제 3 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 공공질서 및 안전
2. 교육
3. 교통 및 물류
4. 농림
5. 문화·체육·관광
6. 보건
7. 사회복지
8. 산업·통상·중소기업
9. 일반공공행정
10. 재정·세제·금융
11. 지역개발
12. 통일·외교
13. 해양수산
14. 환경

1. 공공질서 및 안전 (20개)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의 검토 결과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기준에 있어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민방위 대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기준인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이란 기준을 두고 있음. 이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어서 문제가 됨. 따라서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기준에서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에 불필요한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두고 있어서 여성 민방위대원의 주체적 결정에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문제가 됨. 이에 별지 서식에 ‘세대주와의 관계’란을 삭제하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는 별표 2에서 자치경찰제복 중 임부복의 경우 반팔 원피스형만 명시되어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이 나타났음. 이에 바지형도 명시해 주도록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편성기준)</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의 1항과 2항에서 민방위 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1항에서는 1호~18호까지 민방위 대원의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제3조 1호~3호의 별도의 기준을 둠으로써 민방위기본법에서의 지원민방위 자격 기준 외에 ‘협동심이 강한,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등의 기준을 둠으로써 젠더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편성기준에서의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에 준한 기준으로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편성기준) 지원대의 대원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 ·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td><td>제3조(편성기준) 지원대의 대원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편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편성기준을 젠더 고정관념에 의한 여성성을 강화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방위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제안</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지원서 제출)의 1항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당조례의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서식인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에서 지원자의 ‘세대주와의 관계’항목은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정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여성’민방위대원의 주체적 결정에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지원서식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 삭제</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지원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 지원서
<table>
<tr><td colspan="5">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 지원서</td></tr>
<tr><td rowspan="4">지원자(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전화번호</td><td>자택:
휴대폰:</td><td>세대주와의 관계</td><td>의</td></tr>
<tr><td>직업</td><td></td><td>학력</td><td></td></tr>
</table></td><td>제4조(지원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 지원서
<u>[별지 제1호서식]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지원서 ‘세대주와의 관계’삭제</u>
<table>
<tr><td colspan="5">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 지원서</td></tr>
<tr><td rowspan="4">지원자(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3">자택:
휴대폰:</td></tr>
<tr><td>직업</td><td></td><td>학력</td><td></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편성기준을 젠더 고정관념에 의한 여성성을 강화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방위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원서식에서의 가족관계 중심의 항목인 ‘세대주와의 관계’삭제</td></tr>
</table>

3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표 2] 자치경찰제복</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임부의 경우 복부의 압박으로 정복이나 근무복과 같은 형태의 복장은 근무 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 이를 고려하여 임부복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원피스형으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바지 임부복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임부의 복장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줄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임부복의 경우 원피스가 임부의 복부를 편안하게 해 줄 거라는 통념에 의한 것으로 임부복의 경우 원피스나 바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선 필요</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표 2] 자치경찰제복(제5조 관련)

9. 임부복
가. 임부복(하복)
1) 반팔 원피스형으로 하고, 목둘레선을 V형으로 하고,
2) ~ 3) (생략)
<신설>
나. 임부복(동복)
1) 민소매 원피스형으로 하고 목둘레선을 V형으로 한다.
2) ~ 3) (생략)</td><td>[별표 2] 자치경찰제복(제5조 관련)

9. 임부복
가. 임부복(하복)
1) 원피스형 또는 바지형(상의 티셔츠형)으로 한다.
2) 원피스형은 목둘레선을 V형으로 하고,
3) ~ 4) (현행과 같음)
나. 임부복(동복)
1) 원피스형 또는 바지형(상의 티셔츠형)으로 한다.
2) 원피스형은 목둘레선을 V형으로 한다.
3) ~ 4)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임부복의 경우 원피스형과 바지형을 기본 복장으로 규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td></tr>
</table>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에서의 근무가 3교대이며, 각 호에 의한 경우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각호 중 2호에서는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 임신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음. 즉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와 임신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따라서 ‘휴가, 임신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한 경우도 추가하여 명시해 주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교육, 훈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수상구조요원의 업무 특성 상 구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따라서 해당 조례 교육·훈련 관련 제14조에서 성폭력 예방 등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본 규칙의 제4조(운영) 2항의 2.에서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근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파견’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밖의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휴가’ 등의 사유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신 여성근로자의 권리 및 모부성권리’ 등의 사용에 있어 동료 간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함. 타 지역의 조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교육, 파견, 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2019년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성보호 · 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 시간 사용 촉진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및 모 · 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 등의 실질적 활용에 대해 권고하고 있음.
참고로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실차운영 규칙」 제4조(운영)과 「대전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규칙」 제4조(운영)에서는 ‘휴가’에 대해서도 3교대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업무 특성 상 수반되는 요건이 있겠으나 여성가족부의 권고를 기준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 여성근로자의 권리 및 모부성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운영)
① (생략)
② 구급상황센터에서의 근무는 3교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4. (생략)
③ (생략)</td><td>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임신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격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 및 임신, 육아 등 모부성권 관련 제도 이용을 위한 규칙의 개선 권고</td></tr>
</table>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 ·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교육 · 훈련)</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당 조항에서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등 임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의 예방 및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 등의 사고 발생율이 높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성인지 교육 관련 과목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물놀이 안전 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응급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예방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조치가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교육 훈련)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기 전에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td><td>제14조(교육 훈련)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기 전에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및 성폭력 예방 등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교육 이수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안전관리요원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의용소방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서 명예기마대를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그 이유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의용소방대, 명예기마대는 대부분 남성으로 극명하게 많이 구성되어 있어 여성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의 경우에는 여성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성의 필요를 잘 알고 여성이 편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성인 여성의 구성이 일부 필요할 것임. 따라서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의용소방대, 명예기마대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 ·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배치기준)</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4조(배치기준)에서는 ‘시민수상구조대원’ 배치에 대해 물놀이 장소의 규모·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놀이 장소 이용객의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에서 ‘성별 균형 배치’가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물놀이 안전 사고 등 안전에 취약한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성별 특성 및 동반 가족 등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성별 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 조치가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배치 기준)
①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 그 규모·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원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4조(배치 기준)
①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 그 규모·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수상구조대원 등의 배치에서 이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성별 균형 배치를 명시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행사 진행시 안전요원은 남성들이 대부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출처: 선민정·정은숙·홍선영·이화진(2020).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요원에 대한 성별 분리가 지나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 임명 시에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해 안전요원 배치 시 안전요원의 연령, 의상 착용 및 업무 등에 대해서만 적시되어 있어서 행사 안전 요원 배치 시 성별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계획 등에서 성별 고려가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 3. (생략)</td><td>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임명할 것
2. ~ 3.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옥외 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요원 배치 시 성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함. 의용소방대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균형적인 참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의용소방대 구성원에 대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문의 수정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8. (생략)</td><td>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
1. ~ 8.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전문의용소방대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장례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촉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장례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td><td>1안)
제5조(장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5조(장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장례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장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성별 균형 고려 구성에 대해 명시해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장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장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생략)</td><td>1안)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방송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⑥</u> (현행과 같음)

2안)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방송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⑥</u>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제51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에서는 자문단 구성 시 성별 균형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자문단의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1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51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51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자문단의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5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5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1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2안)
제제5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5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0조(명예기마대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당 조문에서는 <명예기마대>의 구성에 대한 인원 제한에 대한 것만 제시되고 있을 뿐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제22조(명예기마대의 활동 범위)에서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서 사열식 및 퍼레이드 등의 활동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대외적인 활동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조건화함으로써 <기마대>라는 직업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을 개선하는 역할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짐. 주로 남성이 과대표 되는 직업군에서 여성의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여아 또는 여자 청소년에게 직업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음을 각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명예기마대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20조(명예기마대의 구성)
① (생략)
② 명예기마대의 대원(이하 “명예기마대원”이라 한다)은 승마 관련 사회봉사활동이나 승마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단장이 위촉한다.
③ ~ ⑤ (생략)</td><td>제20조(명예기마대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명예기마대의 대원(이하 “명예기마대원”이라 한다)은 승마 관련 사회봉사활동이나 승마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자치경찰단장이 위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명예기마대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에서는 재난관련 분야 및 인원수 등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을 분 성별 균형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음. 성별균형 참여로 재난기금 지원 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략)</td><td>1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심의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자치법규에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1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사용신청 등)에 따른 [별지 서식]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성별에 따른 이용 실태나 요구도를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이용 신청 시 신청서의 <예상 인원>에 성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분함으로써 이용 실태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별시 서식] 공원 사용 신청서 양식에 <예상 인원>의 성별, 연령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서식]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
<table><tr><td>구분</td><td>기 재 사 항</td></tr><tr><td>단체명</td><td></td></tr><tr><td>단체 주소</td><td></td></tr><tr><td>대표자
(담당교사)</td><td>( )</td></tr><tr><td>연락처</td><td>TEL :
FAX :</td></tr><tr><td>예상 인원</td><td>명
(인솔자 : , HP)</td></tr></table></td><td>[별지 서식]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
<table><tr><td>구분</td><td>기 재 사 항</td></tr><tr><td>단체명</td><td></td></tr><tr><td>단체 주소</td><td></td></tr><tr><td>대표자
(담당교사)</td><td>( )</td></tr><tr><td>연락처</td><td>TEL :
FAX :</td></tr><tr><td>예상 인원</td><td>총 명 (남: 명, 여: 명)
(인솔자 : , HP)</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이용 실태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 작성가능 하도록 [별지 서식]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8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항공기 사고 보고서</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즉 <항공기 사고 보고서>에 승무원 및 승객 수 등 인명 보고에 성별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분 항목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항공기 사고 보고서>에서 승무원 및 승객의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 분리 통계 산출 및 보고가 필요</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항공기 사고 보고서
<table>
<tr><th colspan="5">항공기사고보고서</th></tr>
<tr><td colspan="2">①사고발생일시</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②사고발생장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항공기</td><td>③기종 및 형식</td><td></td><td>④등록기호</td><td></td></tr>
<tr><td>⑤비행구간</td><td></td><td>⑥소유자등</td><td></td></tr>
<tr><td>⑦최종출발지 및 시간</td><td></td><td>⑧목적지및도착 예정시간</td><td></td></tr>
<tr><td>⑨승무원수 및 승객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⑩사고내용
(6하원칙에의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⑪피해내용</td><td colspan="3">○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td></tr>
</table>
[별지] 항공기 사고 보고서
<table>
<tr><th colspan="5">항공기사고보고서</th></tr>
<tr><td colspan="2">①사고발생일시</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②사고발생장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항공기</td><td>③기종 및 형식</td><td></td><td>④등록기호</td><td></td></tr>
<tr><td>⑤비행구간</td><td></td><td>⑥소유자등</td><td></td></tr>
<tr><td>⑦최종출발지 및 시간</td><td></td><td>⑧목적지및도착 예정시간</td><td></td></tr>
<tr><td>⑨승무원수 및 승객수</td><td colspan="3">승무원 수: (남: 명, 여: 명)
승객수: (남: 명, 여: 명)</td></tr>
<tr><td colspan="2">⑩사고내용
(6하원칙에의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⑪피해내용</td><td colspan="3">○ 인 명 : (남: 명, 여: 명)
○ 항공기 :
○ 기 타 :</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항공기 사고 보고서에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에서 성별 특성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항목 수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주 이용자인 어린이 및 동반 보호자 등에 대한 통계나 실태조사 내용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목에 제시되고 있지 않음. 놀이 시설 및 기구의 종류나 노후 정도 등을 포함하여 놀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이용 실태 및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 및 안전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또한, 비엔나 등의 유럽 도시에서는 놀이 시설 및 공원 등에서 성별, 연령 및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해 실태 조사 및 개선 사항으로 반영하고 있음. 소녀들의 경우는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 안전을 위한 시야의 확보 등으로 그리고 소년들의 경우는 단일 종목이나 변형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놀이기구나 코트가 아닌 디자인을 마지막으로 보호자들은 연령에 맞춘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더 큰 아이와 경쟁하거나 눈치보지 않는 놀이 공간 등에 대한 요구도가 반영되고 있음.
실태조사에서 성별 분리 통계 및 놀이 시설 및 기구 이용에서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성별에 따른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한 실태 조사 필요.</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에서 이용 아동 및 동반 보호자의 성별, 연령 등의 고려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
2. ~ 7. (생략)</td><td>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 아동의 연령 및 성별, 동반 보호자의 성별 등을 포함한 어린이놀이시설 및 이용자 실태조사
2. ~ 7.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에서 이용 아동 및 동반 보호자의 성별, 연령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제3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서식에 성별 기입란이 없으므로 인해 평가단원의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함.
본 조례 10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서도 평가단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 시 본 서식에서도 성별 기입란을 추가함으로써 평가단 참여에 대한 성별 균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에 성별 조사항목 추가</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신청서
<table><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소 속</td><td></td><td>직 급</td><td></td></tr></table></td><td>[별지 제3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신청서
<table><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소 속</td><td></td><td>직 급</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에 성별 조사항목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 교육 (12개)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교육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서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데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20~39세 여성청년의 취업자 수가 남성청년에 비하여 더 적고,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은 등 질 낮은 일자리에서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해당 협의회에서 지역균형인재의 "성별"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서는 도지사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20~39세 여성청년의 취업자 수가 남성청년에 비하여 더 적고,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은 등 질 낮은 일자리에서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해당 조례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이 강구되도록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20~39세의 여성청년은 취업자 수가 3,938천명이고, 남성청년은 취업자 수가 5,027천명으로 취업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089천명 더 적었음(출처: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 임금에 비하여 62.9%에 불과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는 등 질 낮은 일자리에서 많이 일하고 있음(출처: 신승배·손태주(2020).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다른 양상으로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서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서 지역균형인재의 성별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 3. (생략)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 7. (생략)</td><td>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의 <u>성별</u>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 7.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서 지역균형인재의 성별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20~39세의 여성청년은 취업자 수가 3,938천명이고, 남성청년은 취업자 수가 5,027천명으로 취업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089천명 더 적었음(출처: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리고 제주지역에서도 20~39세 여성청년은 취업자 수가 48천명인데 비하여 남성청년은 68천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0천명이 더 적었음(출처: 신승배·손태주(2020).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또한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 임금에 비하여 62.9%에 불과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는 등 질 낮은 일자리에서 많이 일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은 20~40대에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 (출처: 신승배·손태주(2020).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년의 고용 현황 및 환경, 욕구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td><td>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u>성별을 고려하여</u>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교육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외국대학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⑦ (생략)</td><td>1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10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⑤ (생략)
<신설>
⑥ ~ ⑪ (생략)</td><td>1안)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 ⑫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⑦ ~ ⑫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2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교육 분야 자치법규에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td><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td><td>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u>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등록기준지
또는 원적</td><td colspan="3"></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성 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등록기준지
또는 원적</td><td colspan="3"></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성 명</td><td></td><td>생년
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고등과정 검정고시 응시자 실태 조사 시행
2. ~ 5. (생략)</td><td>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고등과정 검정고시 응시자<u>의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u> 실태 조사 시행
2. ~ 5.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td></tr>
<tr><td>사용목적</td><td colspan="3"></td></tr>
<tr><td>사용기간</td><td></td><td>시설
구분</td><td></td></tr>
<tr><td>참가
예상인원</td><td></td><td>사용자</td><td></td></tr>
<tr><td>면제사유</td><td></td><td>사용료</td><td></td></tr>
</table>
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사용허가서</td></tr>
<tr><td>사용
기간</td><td></td><td>시설
구분</td><td></td></tr>
<tr><td>사용
목적</td><td></td><td>사용
자</td><td></td></tr>
</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td></tr>
<tr><td>사용목적</td><td colspan="3"></td></tr>
<tr><td>사용기간</td><td></td><td>시설
구분</td><td></td></tr>
<tr><td>참가
예상인원</td><td></td><td>사용자</td><td><u>(남, 여)</u></td></tr>
<tr><td>면제사유</td><td></td><td>사용료</td><td></td></tr>
</table>
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사용허가서</td></tr>
<tr><td>사용
기간</td><td></td><td>시설
구분</td><td></td></tr>
<tr><td>사용
목적</td><td></td><td>사용
자</td><td><u>(남, 여)</u></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td><td>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 교통 및 물류 (11개)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와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 고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시 '보행, 운전자, 대중교통, 임신과 출산,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공공이용시설)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조례들의 관련 조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도시기반 시설 등에서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의 내용에 근거하여 보도의 정비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을 포함한'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와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한 보호자 등의 보행의 접근성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시 1호~7호에서 ‘보행 · 운전자 · 대중교통 ·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에서는 농어촌 도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선 선정이나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시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의거 ‘여성의 접근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도 반영하여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농어촌 도로사업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를 반영하여 농어촌 여성의 접근성 및 안전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td><td>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 1호 ~ 7호에 따라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13조를 반영하여 계획수립에서의 여성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시 1호~7호에서 ‘보행 · 운전자 · 대중교통 ·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문에서 여성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도로법」을 포함 여성친화도시조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행 환경에 대해서도 준용해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반영하여 횡단보도 조명 설치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성, 접근성의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① (생략)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 · 구조 ·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③ (생략)</td><td>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 · 구조 ·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르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14조에서 제시하는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13조 및 14조를 반영하여 횡단보도 조명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행환경에서의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시 1호~7호에서 ‘보행 · 운전자 · 대중교통 ·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공공이용시설)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문의 1호에서 ‘성별 ·연령별 인구 등 사회 ·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으로 성별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문의 경우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내용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에서 제시하는 도시기반 시설과 공공이용시설 등에서의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반영되도록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 여성의 접근성와 안전성 등의 반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반영</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td><td>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제시하는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임산부 등 여성·아동 동반 보호자 등의 접근성 및 안전성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제시하는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13조를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시 1호~7호에서 ‘보행 · 운전자 · 대중교통 ·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문의 1호에서 ‘성별 ·연령별 인구 등 사회 ·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으로 성별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조례에서 제시하는 도로교통환경과 관련한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는 항목으로 보기 어려움. 2항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성별에 따른 항목을 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도시교통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시 여성의 접근성와 안전성 등의 반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반영하여 관련 실태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 및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근거한 구체적 실태조사 내용 적시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6. (생략)
②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 등 사회 · 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 9. (생략)</td><td>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제시하는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2. ~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제시하는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별 · 연령별 인구 등 사회 · 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 9.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교통정비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13조를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시 1호~7호에서 ‘보행 · 운전자 · 대중교통 ·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공공이용시설)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보도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 성별 및 연령, 장애 등에 의한 기초 통계 조사와 더불어 지역주민 의견청취와 더불어 여성친화도시조례에 의한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가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보도정비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반영하여 관련 실태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 및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근거한 구체적 실태조사 내용 적시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보도의 정비 ·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략)</td><td>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을 포함한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 3. (현행과 같음)
4.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의 보행의 접근성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보도정비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13조를 반영하여 보행 환경에서의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 평가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교통 및 물류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7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7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1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1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지역건설산업잘전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⑪ (생략)</td><td>1안)
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⑫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⑫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5조(예선운영협의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예선운영협의회에는 성별 균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5조(예선운영협의회)
① (생략)
<신설>
② ~ ⑧ (생략)</td><td>1안)
제15조(예선운영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15조(예선운영협의회)
① (생략)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실태조사 항목에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 성별 통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4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성별 및 연령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성별, 연령별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로 개정을 제안하였음.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또한 건설업은 여성 대표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산업군으로 실태조사 시 도급, 하도급 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제주도내 건설업 대표 및 종사자의 성별 분석을 제시가 필요함. 이후 여성 대표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 참여 촉진 등을 위해 기초 자료 작성이 요구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건설 산업에서의 대표 및 종사자 등에서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 ⑤ (생략)</td><td>제5조(실태)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별 통계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건설 산업군에서의 대표자 및 종사자 성별 분리통계 작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조사 시 성별 및 연령 등에 따른 이용 실태 분석이 필요함. 성별 및 연령 등에 따른 이용 형태, 내용, 동반 이용자, 만족도 등의 실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용 실태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하고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한 교통약자이동서비스 정책의 반영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이동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9. ~ 10. (생략)</td><td>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성별, 연령별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9. ~ 10.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교통약자 이동 실태 조사 시 성별, 연령별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농림 (38개)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농림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시상부문에 여성어업부문을 추가하는 내용과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증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공원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 제4조(시상부문)에서는 농업분야에는 여성농업부문이 있지만 수산업분야에서는 '여성어업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못함. 그러나 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과정에서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 확대는 어촌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즉 제주도는 2019년 기준 여성 어가인구는 전체 어가인구 9,123명 중 4,902명으로 53.9%로 남성대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어업인의 대표적 분야인 '해녀'중 40%는 제주에 분포하고 있음. 그렇지만 여성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은 여전히 낮고, 남성어업인의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기에 더욱 수산업 분야 시상에서 '여성어업부문'을 포함하여 여성어업인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해당 조례 제4조 시상부문에 '여성어업부문'이 포함되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서는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마을 행사를 할 때 여성은 '음식장만'을 주로 하는 등 성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에는 농가경영주나 농지소유자가 남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농촌지역이 성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이연화, 2016;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2020) 이러한 성차별적인 마을 상황에 대한 지원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해당 조례의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에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증진 사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과 제14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제17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고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시 '보행, 운전자, 대중교통, 임신과 출산,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공공이용시설)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조례의 관련 조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도시기반 시설 등에서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시상부문)</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과정에서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 확대는 어촌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2017년도 기준, 농림어업조사의 성별 어가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9.8%, 여성이 50.2%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어업인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2016년 해양수산부의 「여성어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업가구 전체 소득에 대한 여성의 기여율은 평균 56.2%로 사실상 여성어업인들이 수산업과 어촌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은 여전히 낮고, 남성어업인의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음.
제주의 경우도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 어가인구는 전체 어가인구 9,123명 중 4,902명으로 53.9%로 남성대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출처: 신승배·손태주(2020).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어업인의 대표적 분야는 '해녀'로 전국 여성 어업인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40%는 제주에 분포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여성어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수산업 분야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농어업인 시상 분야 중 농업분야의 경우 '여성농업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산업 분야에서는 '여성수산업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여성어업인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수산업분야 시상부문에서 '여성어업부문'추가가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시상부문)
① (생략)
② 수산업분야의 시상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설></td><td>제4조(시상부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산업분야의 시상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여성어업부문</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농어업인상 중 수산업 분야의 시상부문에 '여성어업부문'을 추가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지역 여성농민 성평등 실태조사에 의하면 집안의 가사노동 분담을 본인만 하는 경우가 67.1%로 나타났고, 남편이나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서 한다 등은 32.9%로 나타났음. 또한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72.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마을잔치, 면단위 체육행사 등에서 여성이 주로 하는 일은 ‘음식장만’으로 70.3%가 나타나 마을에서 성별에 따라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출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2020). “제주지역 여성농민 성평등 실태조사”).
또한 이연화(2016)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농가경영주는 남편이 53.8%, 여성농업인이 32.6%로 나타났으며, 농지소유자가 남편인 경우가 49.7%, 여성 농업인은 19.3%로 나타났음(출처: 이연화(2016).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제주도의 농촌 지역이 성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평등 관련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있어서 “성평등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신설>
3. ~ 9. (생략)</td><td>제9조(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3.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증진 사업
4. ~ 10.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시 1호~7호에서 ‘보행 · 운전자 · 대중교통 ·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공공이용시설)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문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으로서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의한 방향 제시가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기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의해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접근성와 안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원녹지의 보전 · 확충 · 관리 · 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 6. (생략)</td><td>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원녹지의 보전 · 확충 · 관리 · 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성,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공원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고,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 6.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13조를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 제시 추가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14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시 1호~7호에서 '보행 · 운전자 · 대중교통 ·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공공이용시설)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설치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립을 포함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에서의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하고, 공원조성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특히 해외의 사례에서 비춰보면, 공원 이용의 성별, 연령별, 아동의 경우 동반 보호자 등에 따라 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원 조성 시 이러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해당 조례에서도 세부규칙 등에서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공원조성계획 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제13조에 의해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접근성와 안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14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 라. (생략) <신설> 마. ~ 바. (생략) 4. (생략)	제14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3. (현행과 같음) 4.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공원조성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실시 바. ~ 사.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13조를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 제시 추가하도록 조례 개정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7조(공원시설의 설치 · 관리 기준)</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도시기반시설)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시 1호~7호에서 ‘보행 · 운전자 · 대중교통 · 임신과 출산 · 보육 및 영유아 동반’등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공공이용시설)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도시 공원 특히 어린이 공원이나 체육 공원 설치 시 소녀, 소년, 동반 보호자 등에 따라 요구도를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설치 기준을 제시 하고 있음. 이용자 중심의 요구를 반영한 체크 사항들은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축구장처럼 단일종목만을 위한 코트인지, 배구나 배드민턴 등 다양한 구기 종목이 이용 가능하도록 네트 설치가 되어 있는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휴식 공간(편하게 앉을 수 있는 낮은 벽이나 가림막), 안전을 위한 시야 확보와 조명(시설 공간이나 특히 이동 통로 등이 명확하게 보이는지, 공원 가로등의 조도 등),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청결과 깨끗한 화장실, 보호자가 놀이 공간을 잘 볼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벤치와 테이블, 그늘이 있는 장소, 물과 화장실의 접근성, 어린이 놀이 시설의 경우 연령에 따른 놀이 공간 및 다양한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지’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 이러한 기준들을 세부 규칙으로 평가 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음.
체육공원의 경우 성별, 연령별에 따른 기준 제시 없이 ‘누구나’로 이용 대상을 선정했을 경우 성 또는 연령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있고, 공원시설의 접근 취약 대상에서도 영유아 및 아동 등 돌봄을 위한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원시설 중 체육공원에서의 성별, 연령별 등 이용자의 특성이 반영되는 공원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원 접근 취약 대상에 영유아 및 아동 등 돌봄을 위한 보호자를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7조(공원시설의 설치 · 관리 기준)
①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 ~ 9. (생략)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 유희시설 · 운동시설 · 교양시설(고분 · 성터 · 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td><td>제17조(공원시설의 설치 · 관리 기준)
① 법 제19조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 유희시설 · 운동시설 · 교양시설(고분 · 성터 · 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td></tr>
</table>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 12. (생략) ② (생략) ③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 · 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성 · 연령 · 장애 등을 고려하여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 · 노약자 또는 어린이 및 영유아 등의 보호자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과제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 시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다양성 및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원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농림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수리계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아니지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수리계의 임원 구성이 3인 이내로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수리계는 마을 단위의 농업 용수에 대한 관리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민감한 기구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임원 구성을 마을 규약에 일임하고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고, 임원 구성시 주로 마을 이장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 여성 농업인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임원에서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출하연합회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감귤농가의 경우 부부나 가족 영농의 형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경우 주로 남성이 대표성을 갖는 세대주 중심으로 위원회 참여 경향이 크므로 위원 구성에서의 성별 균형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td><td>1안)
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하연합회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하연합회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① ~ ⑤ (생략)
<신설>
⑥ ~ ⑦ (생략)</td><td>1안)
제6조(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⑦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5조(도시공원위원회 설치 · 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5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⑧ (생략)</td><td>1안)
제55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55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8조(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8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14조(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14조(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약용 · 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약용 · 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약용 · 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⑧ (생략)</td><td>1안)
제10조(약용 · 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약용 · 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td><td>1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2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구성 및 임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 로컬푸드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위원회 설치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⑧ (생략)</td><td>1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⑥ (생략)</td><td>1안)
제6조(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임원)</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수리계의 임원 구성이 3인 이내로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수리계는 마을 단위의 농업 용수에 대한 관리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민감한 기구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임원 구성을 마을 규약에 일임하고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고 주로 마을 이장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방식의 임원 구성에서 특히 여성 농업인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임원에서의 성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임원 구성이 3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성별 균형에 대해 고려하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수리계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생략)</td><td>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며, 수리계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있어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⑥ (생략)</td><td>1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⑥ ~ ⑦</u>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⑥ ~ ⑦</u>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위원회 설치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td><td>1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⑥ (현행과 같음)

2안)
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9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안전대책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의2</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8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⑨ (생략)</td><td>1안)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⑧ (생략)</td><td>1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⑥ (생략)</td><td>1안)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7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td><td>1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1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1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농림 분야 자치법규에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제8조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명품단지 대표자의 성별분리통계 제시와 부부공동일 경우 이를 표기하도록 하였음.

3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사업계획 수립)</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주지역 농가의 경우 전체 농가인구수 83,133명 대비 여성 농가인구는 41,073명으로 49.4%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노동은 주로 농가경영주(남편)의 성과로 대표되고, 여성농업인의 노동은 주로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위치지어지는 경향이 높음.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시 명품단지 대표자의 성별분리통계 및 특히 부부공동명의이거나 공동생산자에 대한 통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필요.</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가시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명의이거나 공동생산자 등에 대해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통계 자료 산출 및 대표자의 성별분리통계의 산출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 6. (생략)</td><td>제8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과 성별. 다만, 대표자가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이를 표기함.
2. ~ 6.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대표자의 성별 및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이에 대하여 표기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 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별지 제1호 서식] 수리계 등록 신청서의 ‘신청인 및 계원 수’, [별지 제2호 서식] 수리계 등록부의 ‘대표자 및 계원수’, [별지 제3호 서식] 수리계 등록증의 ‘대표자’, [별지 제 4호 서식] 기관명의 ‘1. 수리계 현황 - 계원수’등의 성별 표기 및 계원수의 성별 표기 항목이 없음.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조례로 농업 용수 사용에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실태 확인 등 수리계 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으로 성인지 통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성별 표기 항목 생성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 표기 항목 생성으로 성별 통계 생산</td></tr>
<tr><td rowspan="5">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수리계 등록 신청서</td><td>처리기간
1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 번호</td><td></td></tr><tr><td>주소 (소재지)</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수리계 등록 신청서</td><td>처리기간
1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 (소재지)</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별지 제2호 서식]
<table><tr><td>번호</td><td>명칭</td><td>대표자</td><td>소재지</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제2호 서식]
<table><tr><td>번호</td><td>명칭</td><td>대표자</td><td>성별</td><td>소재지</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별지 제3호 서식]
가) 수 리 계 등 록 증
수리계의 명칭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td><td>[별지 제3호 서식]
나) 수 리 계 등 록 증
수리계의 명칭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남, 여)</td></tr>
<tr><td>[별지 제4호 서식]
<table><tr><td colspan="6">1. 수리계의 현황</td></tr><tr><td>조직 일자</td><td>계원 수 (인)</td><td>기반 시설 명</td><td>구역 면적</td><td>수혜 면적</td><td>수리계 대표자 성명</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제4호 서식]
<table><tr><td colspan="7">1. 수리계의 현황</td></tr><tr><td>조직 일자</td><td>계원수 (인)</td><td>기반 시설 명</td><td>구역 면적</td><td>수혜 면적</td><td>수리계 대표자 성명</td><td>수리계 대표자 성별</td></tr><tr><td></td><td>· 총인원수:
· 남성인원수:
· 여성인원수:</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서식에 성별 표기 및 계원수의 성별 통계 생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제1호 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표기 항목이 없음으로 인해 농어촌민박 실태에서 신청인의 성별 통계 생산에 어려움이 있음.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에 대해 ‘제주 거주경력’과 운영자의 성별에 대한 통계는 성별에 따른 제주 이주 및 거주 형태에 대한 실태와 교차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신청인의 성별 통계 생성</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td><td rowspan="2">전화번호</td><td>TEL:</td></tr>
<tr><td>제주 거주 경력</td><td></td><td>H.P :</td></tr>
</table>
</td><td>[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주소</td><td></td><td rowspan="2">전화번호</td><td>TEL:</td></tr>
<tr><td>제주 거주경력</td><td></td><td>H.P :</td></tr>
</table>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신청인의 성별을 표기함으로써 성별 통계 생산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4, 5</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table><tr><td rowspan="2">소유자</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table><tr><td rowspan="2">소유자</td><td>성명</td><td>생년월일
(남, 여)</td></tr><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table></td></tr>
<tr><td>별지 4호 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table><tr><td>신고번호</td><td>민박명칭</td><td>운영자</td><td>생년월일</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4호 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table><tr><td>신고번호</td><td>민박명칭</td><td>운영자</td><td>생년월일</td></tr><tr><td></td><td></td><td></td><td>(남, 여)</td></tr></table></td></tr>
<tr><td>별지 5호 서식. 농업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table><tr><td rowspan="2">운영자
(대표자)</td><td>성명</td><td>생년월일</td><td>전입일</td></tr><tr><td colspan="3">주소
(전화:)</td></tr></table></td><td>별지 5호 서식. 농업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table><tr><td rowspan="2">운영자
(대표자)</td><td>성명</td><td>생년월일
(남, 여)</td><td>전입일</td></tr><tr><td colspan="3">주소
(전화:)</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6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2, 4</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td></tr>
<tr><td rowspan="3">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자녀 통합 교통비 지원신청서
<table>
<tr><td rowspan="3">기재
내용</td><td>학생성명</td><td></td><td>학 년
반</td><td></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통학구간</td><td>간/지선</td><td>⇋</td><td>급행</td></tr>
</table></td><td>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자녀 통합 교통비 지원신청서
<table>
<tr><td rowspan="3">기재
내용</td><td>학생성명</td><td></td><td>학 년
반</td><td></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3">(남, 여)</td></tr>
<tr><td>통학구간</td><td>간/지선</td><td>⇋</td><td>급행</td></tr>
</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대상자 조사의뢰서</td></tr>
<tr><td>학생명</td><td>학생생년월일</td><td>보호자 성명</td><td>생년월일</td><td>주 소</td><td>적격여부</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부)</td><td></td><td></td><td></td></tr>
<tr><td>(모)</td><td></td><td></td><td></td></tr>
</table></td><td>별지 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대상자 조사의뢰서</td></tr>
<tr><td>학생명</td><td>학생생년월일</td><td>보호자 성명</td><td>생년월일</td><td>주 소</td><td>적격여부</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남, 여)</td><td>(부)</td><td></td><td></td><td></td></tr>
<tr><td>(모)</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별지 4호 서식
<table>
<tr><td colspan="8">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내역</td></tr>
<tr><td colspan="8">발신 기관명(학교명) :</td></tr>
<tr><td>학생명</td><td>학생생년월일</td><td>보호자 성명</td><td>연간 출석일수</td><td>통학구간</td><td>1일 교통비</td><td>연간 총 교통비</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별지 4호 서식
<table>
<tr><td colspan="8">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내역</td></tr>
<tr><td colspan="8">발신 기관명(학교명) :</td></tr>
<tr><td>학생명</td><td>학생생년월일</td><td>보호자 성명</td><td>연간 출석일수</td><td>통학구간</td><td>1일 교통비</td><td>연간 총 교통비</td><td>비고</td></tr>
<tr><td></td><td>(남, 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37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3, 4, 5</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td></tr>
<tr><td rowspan="5">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6">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 colspan="2"></td></tr><tr><td>주소</td><td colspan="2"></td><td>전화
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6">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 colspan="2">(남, 여)</td></tr><tr><td>주소</td><td colspan="2"></td><td>전화
번호</td><td></td></tr></table></td></tr>
<tr><td>별지 3호 서식
<table><tr><td colspan="6">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증명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 colspan="2"></td></tr><tr><td>주소</td><td colspan="2"></td><td>전화
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3호 서식
<table><tr><td colspan="6">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증명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 colspan="2">(남, 여)</td></tr><tr><td>주소</td><td colspan="2"></td><td>전화
번호</td><td></td></tr></table></td></tr>
<tr><td>별지 4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td><td>처리기간
1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
월일</td><td></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d>별지 4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td><td>처리기간
1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
월일</td><td>(남, 여)</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r>
<tr><td>별지 5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 지정증
(지정번호 :)</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
월일</td><td></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d>별지 5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 지정증
(지정번호 :)</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
월일</td><td>(남, 여)</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38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4</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 통지서
<table><tr><td rowspan="2">융자지원
대 상 자</td><td>이 름</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 통지서
<table><tr><td rowspan="2">융자지원
대 상 자</td><td>이 름</td><td></td><td>생년
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5. 문화체육관광 (118개)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의 검토 결과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에서 나타났는데 해당 조례의 시행계획과 예산 지원 사업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개선과 성평등 언어증진'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로는 2018년 '국어사전의 성차별성'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 결과, 성별어에 대한 770개의 단어 중 92개의 단어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성성·남성성을 강조하거나(35건, 38.1%)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지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20건, 21.7%)가 많았기 때문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또한 2019년 제주한라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제주 공공기관별 홈페이지에 올라온 2만 3171건을 조사한 결과 성불평등 용어 사례 439건이 발견했고, 논의를 통해 성불평등 용어 40개를 정리했음. 유형별로는 '가장', '경력단절여성', '남고생', '저출산', '요조숙녀' 등과 같은 성별 고정관념·편견에 근거한 성불평등 용어가 37개로 가장 많았음.[1] 이처럼 성차별적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 "생활 속 성평등 언어 사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그리고 해당 조례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차별적 언어 개선 및 성평등 언어 증진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조례 제20조에 도지사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에 "차별적 언어 개선 및 성평등 언어 증진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 이외에도 해녀와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조례명과 조례 내용에 해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남도 현재 있기 때문에 해녀·해남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는 해녀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해녀에 대한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해녀·해남 또는 중립적인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해녀와 관련된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음.

1) "공공기관 성불평등 용어 개선해야", 제주일보, 2019. 10. 21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분류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문제점	· 해당 검토 조례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차별적 언어와 표현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차별적 국어문화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인지 관점의 시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국어사전의 성차별성'에 대한 이슈모니터링 결과, 성별어에 대한 770개의 단어 중 92개의 단어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성성·남성성을 강조하거나(35건, 38.1%) 여성과 남성을 구분지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20건, 21.7%)가 많았음(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2018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보도자료, “국어사전 성차별적 단어”, 2018. 11. 22.). –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표현들이지만, 젠더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어단어 뜻풀이 등에서 성차별적 요소의 지적을 받는 사례처럼, 오늘날 성차별 언어를 매개로 성차별적 인식이 표현되고 확산되어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성차별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차별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기도 함. – 더욱이 제주는 섬 문화 특성상 남성 중심적 성역할과 성별고정관념이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성불평등적인 젠더구조와 문화로 잔재돼 생활 속 언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제주한라대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제주 공공기관별 홈페이지에 올라온 2만 3171건을 조사한 결과 성불평등 용어 사례 439건이 발견했고, 논의를 통해 성불평등 용어 40개를 정리했음. 유형별로는 ‘가장’, ‘경력단절여성’, ‘남고생’, ‘저출산’, ‘요조숙녀’ 등과 같은 성별 고정관념·편견에 근거한 성불평등 용어가 37개로 가장 많았음(출처: 제주일보, “공공기관 성불평등 용어 개선해야”, 2019. 10. 21). – 국어의 차별적 언어와 표현은 성별 간의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성별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성평등 언어 사용과 인식이 활성화 돼 기관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로 성평등 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제5조 국어발전 시행계획에 있어, 차별적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생활 속 성평등 언어 사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내용 신설을 제안함.	
개선의견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 생활 속 성평등 언어 사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생활 속 성평등 언어 사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제주자치도 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민과 공공기관의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생략)	
개선과제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 생활 속 성평등 언어 사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	

2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분류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문제점	· 해당검토조례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차별적 언어와 표현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차별적 국어문화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인지 관점의 시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국어사전의 성차별성'에 대한 이슈모니터링 결과, 성별어에 대한 770개의 단어 중 92개의 단어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성성·남성성을 강조하거나(35건, 38.1%) 여성과 남성을 구분지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20건, 21.7%)가 많았음(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2018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보도자료, “국어사전 성차별적 단어”, 2018. 11. 22..). –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표현들이지만, 젠더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어단어 뜻풀이 등에서 성차별적 요소의 지적을 받는 사례처럼, 오늘날 성차별 언어를 매개로 성차별적 인식이 표현되고 확산되어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성차별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차별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기도 함. – 더욱이 제주는 섬 문화 특성상 남성 중심적 성역할과 성별고정관념이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성불평등적인 젠더구조와 문화로 잔재돼 생활 속 언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제주한라대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제주 공공기관별 홈페이지에 올라온 2만 3171건을 조사한 결과 성불평등 용어 사례 439건이 발견했고, 논의를 통해 성불평등 용어 40개를 정리했음. 유형별로는 ‘가장’, ‘경력단절여성’, ‘남고생’, ‘저출산’, ‘요조숙녀’ 등과 같은 성별 고정관념·편견에 근거한 성불평등 용어가 37개로 가장 많았음(출처: 제주일보, “공공기관 성불평등 용어 개선해야”, 2019. 10. 21). – 국어의 차별적 언어와 표현은 성별 간의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성별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성평등 언어 사용과 인식이 활성화 돼 기관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로 성평등 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제1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도민의 성평등 언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및 ‘공공기간의 수행정책의 성평등 언어표현 사용 장려’의 내용 추가를 제안함.	
개선의견	국어책임관의 임무로 차별적 언어 개선 및 성평등 언어 증진 사업 추가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생략)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신설>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3. 차별적 언어 개선 및 성평등 언어 증진 사업 추진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생략)	
개선과제	국어책임관의 임무로 차별적 언어 개선 및 성평등 언어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3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20조(지원)	
분류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문제점	· 해당검토조례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차별적 언어와 표현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차별적 국어문화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인지 관점의 시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국어사전의 성차별성'에 대한 이슈모니터링 결과, 성별어에 대한 770개의 단어 중 92개의 단어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성성·남성성을 강조하거나(35건, 38.1%) 여성과 남성을 구분지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20건, 21.7%)가 많았음(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2018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보도자료, “국어사전 성차별적 단어”, 2018. 11. 22.). –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표현들이지만, 젠더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어단어 뜻풀이 등에서 성차별적 요소의 지적을 받는 사례처럼, 오늘날 성차별 언어를 매개로 성차별적 인식이 표현되고 확산되어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성차별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차별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기도 함. – 더욱이 제주는 섬 문화 특성상 남성 중심적 성역할과 성별고정관념이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성불평등적인 젠더구조와 문화로 잔재돼 생활 속 언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제주한라대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제주 공공기관별 홈페이지에 올라온 2만 3171건을 조사한 결과 성불평등 용어 사례 439건이 발견했고, 논의를 통해 성불평등 용어 40개를 정리했음. 유형별로는 ‘가장’, ‘경력단절여성’, ‘남고생’, ‘저출산’, ‘요조숙녀’ 등과 같은 성별 고정관념·편견에 근거한 성불평등 용어가 37개로 가장 많았음(출처: 제주일보, “공공기관 성불평등 용어 개선해야”, 2019. 10. 21). – 국어의 차별적 언어와 표현은 성별 간의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성별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성평등 언어 사용과 인식이 활성화 돼 기관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로 성평등 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제20조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차별적 언어문화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 언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포함을 제안함.	
개선의견	도지사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에 차별적 언어 개선 및 성평등 언어 증진 사업 추가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20조(지원)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업	제20조(지원)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차별적 언어 개선 및 성평등 언어 증진 사업 6. ~ 8. (현행과 같음)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업 4.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사업 <신 설> 5. 국어 발전을 위한 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 6.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웅변대회, 국어책임관 활성화 등 한글 보급사업 7.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선과제	도지사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에 차별적 언어 개선 및 성평등 언어 증진 사업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자치법규의 내용은 주로 네 가지 영역으로 제안되었음. 첫 번째는 관광종사원이나 해설사 또는 미디어 관련과 같이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강한 분야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성폭력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출판과 체육 관련 분야에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치 시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도 대피하는 경우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세 번째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과 생활체육 진흥 시책 강구 시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네 번째는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이유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음.

○ 관광 분야와 관련된 관광종사자, 축제 지원자 및 해설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으로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관광종사원들의 여성 비율이 높으며 알지 못하는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하다보니 성희롱 등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광객들에게 성인지적인 관광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하여 관광종사자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축제 전 성인지 교육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축제 시행 중에 성차별적이거나 성희롱적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축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축제 시행 전에 성인지 교육을 축제 관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임. 제주 축제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프로그램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점과 더불어 축제 행사 프로그램 등에서는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음(선민정 외, 2020).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보수 및 심화 교육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도 여성 비율이 75.7%일 정도로 매우 높아 관광객들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할 위험이 있고, 제주를 찾는 다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광 해설을 할 필요가 있음(선민정 외, 2020). 이에 해당 조례 제8조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해설사에게 다크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평등한 언어 사용 및 성평등한 해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 해당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

안하였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별표 1과 별표 3에서는 세계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해설사는 다양한 성별, 연령 등의 특성을 가진 탐방객과 직접 대면하여 세계자연유산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문화관광 홍보대사와도 유사해서 제주를 찾는 다양한 성별과 세대와 상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젠더의식을 함양한 태도와 소양이 필요하기에 성인지 교육도 필요함. 이에 해당 조례 별표 1과 별표 3에 세계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에 “성인지 교육”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분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5조에서는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은 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하여 영향력과 전파력이 매우 크나 영상 콘텐츠 속에는 성차별적이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고, 성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시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해당 조례 제15조에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 시 해당 전문인력이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안하였음.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도내 마을 단위 곳곳에 콘텐츠를 생산·소통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운영인력은 콘텐츠 생산자이자 공동체의 매개자로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다양한 성별, 연령, 계층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 함양이 필요함.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지원하여, 미디어 콘텐츠가 성별 등에 따라 미치는 사회적 영향 및 인식 차이를 점검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례 제5조에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중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사항에 “성인지 교육”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성폭력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출판과 체육 관련 분야에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8조에서는 다양한 지역출판의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출판종사자 68.4%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판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드러낸 바 있음. 성희롱, 성폭력은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뿐 아니라 저역자-노동자 간의 권력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음(전국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 2018).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홍보물 게시 및 배포 방법으로 대신하고

있어서 ‘1인 이상 9인 이하’사업체가 가장 많은 출판사업장의 실정과는 맞지 않음. 이에 해당 조례 제8조에 “지역출판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단체 및 기관의 조직문화가 남성중심,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가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됨. 이를 위해서 종사자의 다수는 ‘임원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구성원 대상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33.8%)’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 임직원에게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환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0). 이처럼 체육계 조직의 위계적·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의 특성은 체육계 현장으로 이어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안이한 대처 및 묵인, 방조 등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악순환 됨. 따라서 체육관련기관 종사자 역시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과 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해당 조례 제6조에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할 때 “체육관련기관 종사자”도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치 시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도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보행약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일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수의 여성들이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은 연령, 성별, 계층,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는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및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행약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일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수의 여성이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조례 제4조 제1호에‘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용과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문화의 거리에 있는‘주변도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의 거리에서 장애·연령·성별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머물며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한 물리

적 환경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조례 제3조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과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이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력대피가 취약하고, 대피능력에 있어서도 성별 격차가 클 수 있음.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사고 시 의사소통, 이동, 의료적 보호 등 추가적인 대응지원도 비장애인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만 함. 따라서 해당 조례 제9조에서 장애인의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성별 및 장애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과 생활체육 진흥 시책 강구 시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 계층, 세대, 지역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계층, 세대, 지역 등의 편견과 차별 없이 양성평등한 문화 공존의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을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9조에서는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선호 종목에 있어서도 남성의 경우 '걷기(32.1%), 등산(20.5%), 보디빌딩(22.9%), 축구·풋살(12.7%)'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걷기(51.8%), 요가·필라테스·태보(15.9%), 등산(13.9%), 수영(12.5%)'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음. 특히 연령대별 성별에 있어서도 선호 종목에 격차를 보였음. 즉 10대 남성은 축구·풋살이 49.6%, 10대 여성은 걷기가 41.6%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20대 남성은 보디빌딩이 38.1%, 20대 여성은 걷기가 38.6%로 선호도가 가장 높아서 극명한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드러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따라서 해당 조례 제19조에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제안하였음.

○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조례들이 발견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3조에서는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 조성 및 관광 선전물을 심사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공영관광지 및 기타 관광지 28곳의 관광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적 콘텐츠가 발견된 관광지는 16곳(57%)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특히 공영관광지보다 민영 또는 기타 운영 주체가 다른 관광지에서 성차별 콘텐츠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나타나 제주지역 관광콘텐츠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강경숙 외, 2019). 따라서 해당 조례 제73조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의 심사 및 지원 시 양성평등 가치를 저해하지

않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활동 시간에서 성별 격차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시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남성근로자보다 일·생활 균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결혼, 출산 및 양육과 함께 기혼 여성근로자는 장시간 근로가 여가시간이나 가사노동 시간 등에 영향을 미쳐 일과 생활의 균형적인 시간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고 있음. 이에 해당 조례에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성별,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배제, 기피의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필요성과 가치, 정책의 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특히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제주는 지역공동체에서 고유의 문화와 각각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융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이 더욱 요구됨. 이에 해당 조례에 "도지사는 교사, 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에 대한 사안을 명시하면서 '생계곤란 문화예술인 및 신진·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예술 행사 등에 우선 참여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여성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더욱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 임신, 출산, 육아 및 그 외의 이유로 인해 경력단절 문제를 심하게 겪으며 직업적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기존 역량을 되살리고 복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제10조 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의 우선 배정에 '경력단절여성 문화예술인'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업무 및 기능)</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 검토조례 제3조에서는 제주웰컴센터의 업무 및 기능으로서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비율이 높고 여행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가지고 활동하는 관광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콘텐츠 기획과 유통 전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관광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수반이 필요함.
–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 수는 3만 3452개로 종사자 수는 총 26만 7561명이며, 여행업(9만 9,077)과 관광숙박업(6만 9926)이 전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관광사업체 1개소 당 평균 종사자 수는 8명으로 나타나는데, 관광사업체 종사자 267,561명 중 남자(145,392명)가 여자(122,168명) 대비 많으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은 남자 종사자, 국제회의업과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은 여자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관광사업체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년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 일자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산업 부문은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에서 문화예술산업(42.7%), 문화산업(41.1%), 스포츠산업(38.8%)보다 여성의 비율이 47.6%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으로서 자세와 윤리, 매너, 친절 등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하는 교육이 주를 이룸. 일례로 제주도내 관광 관련 업종 임직원 및 관광안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0년 제주관광 아카데미 교육 및 컨설팅교육과정’을 보면, ‘온라인광고, 홍보전략/언론홍보, 영업/마케팅, 서비스, 고객관리, 프리미엄 가이드’ 등 6개 직무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음(출처: 제주관광공사(2020). “2020년 관광종사원 교육 실적 정보공개”).
– 따라서 관광산업의 업종별, 직군별 등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교육 시,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적극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광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홍보 등까지 연계되는 관광종사자의 직무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고 모니터링하여 양성평등 관광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병행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관광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광종사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한 관광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 포함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on·off-line)을 통한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홍보
2.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
3. ~ 5. (생략)</td><td>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on·off-line)을 통한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홍보
2.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
3. ~ 5.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관광종사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교육 및 평가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준 제주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44명이며, 여성의 비율이 75.7%(109명)로 남성 24.3%(35명)에 비해 매우 높음(출처: 선민정·좌동열·이연화(2020).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실태와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원).
- 여성비율이 높고 관광객과의 직접적인 대면 활동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양한 성별, 연령 등의 특성을 갖은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여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해설하고 전달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 홍보대사와도 유사함. 따라서 제주를 찾는 다양한 성별과 세대와 상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젠더의식을 함양한 태도와 소양이 필요함.
- 특히 제주에는 여성신화, 해녀, 여성의 독립운동 등등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 역사·문화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설의 자질과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 포함을 제안함.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해설사에게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td><td>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 <u>및 성인지 교육</u>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 제73조에서는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 조성 및 관광 선전물을 심사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 공영관광지 및 기타 관광지 28곳의 관광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적 콘텐츠가 발견된 관광지는 16곳(57%)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특히 공영관광지보다 민영 또는 기타 운영 주체가 다른 관광지에서 성차별 콘텐츠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나타나 제주지역 관광콘텐츠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출처: 강경숙·이해응·고보숙(2019),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 이에 관광콘텐츠 및 홍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할 때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양성평등한 관점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 조정 및 관광 선전물을 제작할 수 있는 지원 신설</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도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③ (생략)</td><td>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의 심사 및 지원 시 양성평등 가치를 저해하지 않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양성평등한 관점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 조정 및 관광 선전물을 제작할 수 있는 지원 내용 신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해설사 배치)</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성평등한 언어를 사용하고 성평등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제11조 제2항 해설사 교육에 있어서, 역사·문화·관광·교육 분야 외에 성평등한 언어와 태도, 인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해설사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해설사 배치)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td><td>제11조(해설사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설사에게 <u>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u>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해설사 교육에 성인지 교육 병행에 관한 규정 추가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0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검토조례 제20조에서는 공공도서관 설립 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명시하고 있는데, 성인지 관점에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물리적 접근성 및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행약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일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수의 여성들이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은 연령, 성별, 계층,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추가를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공도서관 설립 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0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립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기능의 활성화와 지식정보에의 접근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td><td>제20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보행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립하여야 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기능의 활성화와 지식정보에의 접근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공공도서관 설립 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규정 추가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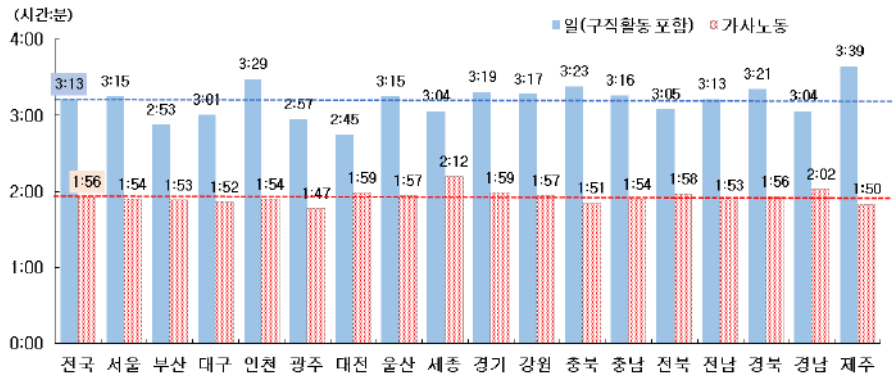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10조(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 현행검토조례는 도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성별 및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평생에 걸친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낮았음. 특히 영유아(45.1%), 아동·청소년(49.1%)은 50%에 가까운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19세 이후(29.5%)부터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져 성인 후기(50~64세)에 이르면 19.4%까지 감소했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2020. 3. 30.). – 특히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직장 초년생 등 청년(20~39세)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을 75.0%(매우 필요함(35.5%)+약간 필요함(39.5%))로 매우 높은 요구를 보였음(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이중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라는 여성의 생애주기 사건과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운 조건 등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스스로의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문화자본 확보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고령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문화다양성의 가속화, 여가시간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성별, 생애주기,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의 다변화가 필요함. – 따라서 다양한 도민이 균등하게 문화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의 성별 및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 제2호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안함.	
개선의견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책 마련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10조(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① ~ ② (생략)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2.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0조(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성별과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u> 수행한다. 1. ~ 8. (현행과 같음)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사업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선과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10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현행 검토조례 제15조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 미디어 기술과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리터러시(literacy)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성평등한 영상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성인지적 관점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지원하는 내용 규정을 제안함. -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가짜뉴스, 1인 미디어플랫폼의 성장 등은 영상산업의 사회적 파급력과 전파력을 확인시키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음.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등등과 관련된 영상산업에는 제작자의 관점에서 표상하는 대상과 재현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 있음. 따라서 영상산업 전문인력의 역량은 단순히 변화하는 시대의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생산 능력을 넘어서, 책임있게 표현하고 새롭게 창조하여 다양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리터러시'의 역량 함양이 필요함. - 특히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은 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하여 영향력과 전파력이 매우 큼. 그러나 영상 콘텐츠 속에서 성차별적이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고, 성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시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영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시, 미디어 생산자로서 성인지 관점에서 영상콘텐츠 등이 성별, 연령, 계층별 등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 및 인식의 차이를 점검하고 창작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을 제안함.	
개선의견	영상전문인력 양성 시 성인지 관점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 규정 추가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영상전문인력 양성 시 성인지 관점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 규정 추가를 위해 조례 개정	

1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신설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 해당 검토조례에서 도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활동 시간에서 성별 격차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시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민의 '쉴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일과 여가의 조화'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전국에서 '일하는 시간이 제일 긴' 제주의 근로자에 대한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함.  통계청(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시도별 시간사용(2019) > – 성별로 유형별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여성은 주로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남성은 '취미·오락 활동', '스포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향은 성별 평균 여가시간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2020년 기준 휴식활동을 제외한 지속적인 여가활동의 경우는 전체 48.9%로 남성(50.2%)이 여성(47.7%) 대비 높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휴일평균 여가시간은 5.9시간으로 여성의 5.3시간 대비 높게 나타남. 또한 남성의 휴일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균 점수 5.07점으로, 여성 4.86점 대비 높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활동 시간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여도가 더 높기 때문인데,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79.3%)은 하루 일과 후 피곤을 느끼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직장 일(50.5%)이었음. 피곤하다고 답한 비율이 특히 높은 집단은 30대(90.5%), 미취학자녀가 있는 사람(93.9%), 맞벌이 가구의 여성(90.5%) 등이었음. 즉 미취학 자녀가 있는 30대 맞벌이 여성이 가장 피곤을 많이 느끼고 있음. 더욱이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의 76.4%가 직장 일을 줄이고 싶은 반면, 여성은 57.6%가 직장일을, 22.9%가 가사를 줄이고 싶어 했음(출처: 통계청(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201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가 보유 및 사용 현황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실제 부여받은 연차 휴가는 14.4일, 실제 사용한 휴가는 8.4일로 연차휴가 사용은 58.4% 수준임. 그 중 연차휴가 미사용 이유는 규제하는 조직 내 분위기, 상사의 눈치, 직장 내 휴가장려제도 부족 등이 22.7%(1순위 기준)로 나타남(출처: 한국관광공사(2018). 「201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 더욱이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

<table>
<tr><td></td><td colspan="2">우 등 고용형태에 따라 휴가 및 휴식권 보장이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직장 내 휴가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큼.
– 특히 여성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남성근로자보다 일·생활 균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결혼, 출산 및 양육과 함께 기혼 여성근로자는 장시간 근로가 여가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 등에 영향을 미쳐 일과 생활의 균형적인 시간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기업이 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일과 여가의 조화'라는 문화 확산은 여성근로자의 이직 및 퇴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휴가경험>
 

주: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 참고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4조와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5조에서는 '일과 여가의 조화'를 조항명으로 하여 제1항에서는 '도민(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도지사(시장)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여성과 남성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일과 여가의 조화' 내용 신설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u><신 설></u></td><td><u>제4조의2(일과 여가의 조화)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여성과 남성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일과 여가의 조화'내용 신설</td></tr>
</table>

12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신설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 해당 검토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계층, 세대, 지역 등의 편견과 차별 없이 양성평등한 문화 공존의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 2019년 기준 국내 외국인 주민은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며, '다문화 사회(외국인 비율 5%)'에 진입을 예고하고 있음(OECD는 총 인구 중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 제주도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5.2%로 나타남(출처: 행정안전부(2019).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만 15세 이상 남녀 3019명을 대상으로 한'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3.85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5점 만점), 문화다양성 증진 시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4.11점)에 대한 기대 응답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71.3%로 확인됐으며, 특히 다양한 사회갈등 현상 중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사회적 신분(29.3%), 성별(23.4%), 세대(15.7%)에 따른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사회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장애(84.9%), 성별(80.6%), 세대(76.6%)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음(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2021. 5. 26.). – 여전히 성별,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배제, 기피의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필요성과 가치, 정책의 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임. 특히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제주는 지역공동체에서 고유의 문화와 각각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융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이 더욱 요구됨. 이에 본 조례에'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신설을 제안함. –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으로 사회 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맞춤형 교육 활동을 촉진함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위한 문화다양성 콘텐츠 및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는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각 호에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개선의견	양성평등한 문화 공존의 인식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 및 지원 내용 신설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신 설>	제9조의2(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① 도지사는 교사, 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차이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선과제	양성평등한 문화 공존의 인식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 및 지원 내용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13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8조(지역출판 지원)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 현행검토조례는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출판산업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한 출판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실태조사 신설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기준 국내 출판사업체 종사자 수는 2만 7,086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 전체에서 남성은 48.7%, 여성은 51.3%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종사자의 경우 29세 이하가 34,537명, 30~34세가 38,302명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체 유형은 '1인 이상 9인 이하'로 매출 규모와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됨(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9). 「2019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 지역출판산업은 소규모 영세 출판사들이 많으며, 여성종사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외주 노동자 규모가 큼. 이로 인해 출판산업 내에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노동 등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장 내부의 업무 압박,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며 외주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출판종사자 68.4%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판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드러낸 바 있음. 성희롱, 성폭력은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뿐 아니라 저역자–노동자 간의 권력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음(출처: 전국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2018). 「2018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 –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홍보물 게시 및 배포 방법으로 대신하고 있어서 '1인 이상 9인 이하'사업체가 가장 많은 출판사업장의 실정과는 맞지 않음.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이 출판계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출판 노동자 중 직접적인 성폭력 경험이 없었던 이의 비율은 31.6%에 불과했다.(…)특히 성폭력 피해는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두드러졌다. 남성 응답자 중 직접적 성폭

<table>
<tr><td></td><td colspan="2">력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는 31명(60.8%)이었으나, 여성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는 46명(22.9%)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자 중 77.1%가 성폭력 피해자였던 셈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는 62.7%였다. 비정규직은 81.5%가 성폭력 경험이 있었다. 취업 형태가 불리할수록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컸던 셈이다. 성폭력 사례로는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가 131명(53.7%, 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성폭력(78명, 32.0%), 술 따르기·노래 부르기·안마 강요·강압적 데이트 신청 등 성적 서비스 강요 성폭력(67명, 27.5%) 비중도 컸다. 소수 응답자 중에는 성관계를 강요당한 사례도 있었다(출처: 프레시안, “출판사 여직원 80% "성폭력 경험 있다”, 2016.11.10.).

– 이에 제8조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 사업에 ‘지역출판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출판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지역출판 지원)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2. 간행물 유통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4.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6. 지역출판사가 발간한 우수 출판물의 배포 지원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8.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신 설>
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d>제8조(지역출판 지원)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출판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10.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출판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규정 추가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1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 검토조례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양성평등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운영인력에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은 미디어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사회의 소통,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야기 및 정보전달과 공유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함. 이는 특정 마을과 특정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별, 연령, 계층으로 이루어진‘공동체’에 기반을 두어 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 또한 공적·사적모임 및 활동을 통해 정보획득이 용이한 남성과 달리, 가사·양육의 역할과 이행의 책임감을 인해 공적·사적모임에 참여가 힘든 여성에게는 정보 소외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각종 생활정치적 의제에 대한 권한 불균형의 원인이 되기도 함. 그러나 여성 외 상대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에게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획득 수단으로써, 성별 등 주민특성을 반영한 마을에 대한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기도 함.
– 따라서 도내 마을 단위 곳곳에 콘텐츠를 생산·소통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운영인력은 콘텐츠 생산자이자 공동체의 매개자로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다양한 성별, 연령, 계층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 함양이 필요함.
– 이에 제5조 제3호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지원하여, 미디어 콘텐츠가 성별 등에 따라 미치는 사회적 영향 및 인식 차이를 점검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에게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4. ~ 6. (생략)</td><td>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성인지 교육 포함)
4. ~ 6.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에게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문화예술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여성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 임신, 출산, 육아 및 그 외의 이유로 인해 경력단절 문제를 심하게 겪으며 직업적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기존 역량을 되살리고 복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검토조례 제10조 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의 우선 배정에 생계곤란 문화예술인 및 신진·청년 문화예술인 외에 '경력단절여성 문화예술인'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기준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포기한 상태인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는 23.9%으로 2015년 15.9% 대비 8.0%로 증가하였으며, 예술 활동을 포기한 이유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7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기타'가 12.6%였으며, 여성의 경우도'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5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출산/육아'가 17.2%로 나타났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예술경력단절 이유>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8">2018</th></tr>
<tr><th>사례수</th><th>예술활동 수입 부족</th><th>기타</th><th>질병</th><th>출산/육아</th><th>학업</th><th>없음</th></tr>
<tr><td rowspan="2">성별</td><td>남성</td><td>25,123</td><td>76.8</td><td>12.6</td><td>6.8</td><td>0.2</td><td>3.7</td><td>0</td></tr>
<tr><td>여성</td><td>17,582</td><td>55.9</td><td>9.9</td><td>8.1</td><td>17.2</td><td>8.7</td><td>0.2</td></tr>
<tr><td rowspan="5">연령별</td><td>39세이하</td><td>16,423</td><td>68.6</td><td>10.7</td><td>5.6</td><td>6.6</td><td>8.4</td><td>0.1</td></tr>
<tr><td>40대</td><td>12,379</td><td>78.6</td><td>6.2</td><td>5</td><td>7.7</td><td>2.5</td><td>0</td></tr>
<tr><td>50대</td><td>8,460</td><td>60.1</td><td>20</td><td>9.1</td><td>6</td><td>4.4</td><td>0.3</td></tr>
<tr><td>60세이상</td><td>5,444</td><td>55.8</td><td>12.7</td><td>14.9</td><td>9.3</td><td>7.3</td><td>0</td></tr>
</table>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10조 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대상에'경력단절여성 문화예술인' 추가하여 범위 확대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공공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하여 사업 범위의 10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생계곤란 문화예술인 및 신진·청년 문화예술인에게 우선 참여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10조(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공공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하여 사업 범위의 10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생계곤란 문화예술인 및 신진·청년·경력단절여성 문화예술인에게 우선 참여를 배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10조 문화예술 행사 등 참여지원 대상에'경력단절여성 문화예술인' 추가하여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공간 및 위치)</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당 검토조례는 주민들이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주민접근성이 고려된 공간과 위치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는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및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행약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일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수의 여성이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움.
따라서 제4조 제1호에‘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용과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를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의 이용과 접근에 관한 규정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작은 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생략)</td><td>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작은 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용과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작은도서관의 이용과 접근에 대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내용 규정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안전관리 계획)</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당검토조례 제9조에서는 장애인이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력대피가 취약하고, 대피능력에 있어서도 성별 격차가 클 수 있음.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사고 시 의사소통, 이동, 의료적 보호 등 추가적인 대응지원도 비장애인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만 함.
따라서 성별 및 장애유형(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등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내용을 담보하여 계획을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안전관리 계획 시 성별과 장애유형을 고려하는 규정 명시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안전관리 계획)
도지사는 장애인이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td><td>제9조(안전관리 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u>성별 및 장애유형을 고려하여</u>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안전관리 계획 시 성별과 장애유형을 고려하는 규정 명시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스포츠인권 교육)</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현행 검토 조례 제6조에서는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스포츠 인권교육은 선수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스포츠 정책을 다루는 담당자와 임직원까지 모두 받아야만 함. 정책담당기관에서 인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인권보호와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형식론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현행 검토조례 제6조에서 스포츠인권 교육 대상자에 체육관련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함.
– 2019년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선수, 코칭스태프, 임직원, 경기 관련 직·간접 종사자) 성폭력 등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들 중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응답자 또한 10명 중 1명(10%)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21.1%)이 남성(2.9%)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특히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와 동료로 나타났고, 기관 임원(상근·비상근)의 비율도 높았음. 조직유형별로는 공공기관(39.1%)과 시도 체육회(37.9%) 또는 시·도 장애인체육회(36.2%)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음(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0).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 이는 체육단체 및 기관의 조직문화가 남성중심,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가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됨. 이를 위해서 종사자의 다수는 '임원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구성원 대상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33.8%)'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며, 임직원에게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환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0).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 이처럼 체육계 조직의 위계적·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의 특성은 체육계 현장으로 이어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안이한 대처 및 묵인, 방조 등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악순환됨. 따라서 체육관련기관 종사자 역시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과 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음.
– 참고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2조에서는 체육인에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도내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스포츠인권 교육 대상자에 체육관련기관 종사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 체육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스포츠인권 교육 대상자에 체육관련기관 종사자 포함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1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실행계획 등의 수립)</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 검토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계층, 세대, 지역 등의 편견과 차별 없이 양성평등한 문화 공존의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 2019년 기준 국내 외국인 주민은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며, ‘다문화 사회(외국인 비율 5%)’에 진입을 예고하고 있음(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 제주도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5.2%로 나타남(출처: 행정안전부(2019).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만 15세 이상 남녀 3019명을 대상으로 한‘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3.85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5점 만점), 문화다양성 증진 시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4.11점)에 대한 기대 응답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71.3%로 확인됐으며, 특히 다양한 사회갈등 현상 중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사회적 신분(29.3%), 성별(23.4%), 세대(15.7%)에 따른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사회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장애(84.9%), 성별(80.6%), 세대(76.6%)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2021. 5. 26.).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단순한 문화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함.
– 이에 제5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 계층, 세대, 지역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참여에 성별, 계층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d>제5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u>성별, 계층, 세대, 지역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u>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참여에 성별, 계층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0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신설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 축제 시행 중에 성차별적이거나 성희롱적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축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축제 시행 전에 성인지 교육을 축제 관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최근 일부 축제의 성차별적 문구와 이미지가 노출된 콘텐츠, 성 상품화된 프로그램 등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음(출처: 뉴시스, "'미스OO' 지역축제 성차별적 문구 시정해야", 2020. 4. 23). - 제주 축제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프로그램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점과 특정 성이 지나치게 배제되는 점들이 지적되었음. 또한 축제 행사 프로그램 제목 및 콘텐츠에서는 성적 대상화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었으며, 일부 성차별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도 확인되었음(출처: 선민정·정은숙·홍선영·이화진(2020).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 더욱이 대규모의 관중이 집중되는 축제장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가족단위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또한 노출될 위험이 높음. * 국내 양대 록 페스티벌 중 하나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공연 기간 내내 남성 관객이 여성 관객을 성추행하거나 간이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특히 늦게까지 진행되는 공연 특성상 새벽 시간대에 여성 관객을 상대로 추근대거나 강제추행한 뒤 달아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경향신문, "록 페스티벌 공연장서 여성 성추행 잇따라 몰카 피해도", 2016. 8. 17.).	
개선의견	축제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축제 전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신설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신설>	제14조2(축제 전 성인지 교육 지원) 도지사는 축제 시행 전 성인지 교육을 축제 관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선과제	축제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축제 전 성인지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2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 검토조례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문화의 거리에 있는‘주변도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의 거리에서 장애·연령·성별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머물며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블록별 무단차 연결, 벤치·가로수, 거리전시대, 계단, 광장, 공중화장실 등등) 보행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높이며, 이는 문화의 거리가 지니고 있는 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의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의 문화명소로서 자리매김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주변도시 환경개선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생략)
<신설></td><td>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과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 수립 시, 주변도시 환경개선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 등의 인증 등) [별표 1], 제9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선발 등) [별표 3]</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 검토조례는 제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교육 내용을 [별표 1], [별표 3]에서 명시하고 있음.
– 해설사는 다양한 성별, 연령 등의 특성을 가진 탐방객과 직접 대면하여 세계자연유산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문화관광 홍보대사와도 유사함. 따라서 제주를 찾는 다양한 성별과 세대와 상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젠더의식을 함양한 태도와 소양이 필요함.
– 따라서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과목을 포함하여 젠더의식을 함양한 전문인력으로서 관람예절과 관광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세계문화유산해설사의 양성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제안</td></tr>
<tr><td>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
[별표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8조 관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인증기준</th></tr>
<tr><td rowspan="7">교육과목 및 교육시간</td><td>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td><td>교육시간</td></tr>
<tr><td>1)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td><td>5시간</td></tr>
<tr><td>2)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td><td>20시간</td></tr>
<tr><td>3)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td><td>25시간</td></tr>
<tr><td>4)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td><td>40시간</td></tr>
<tr><td>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td><td>10시간</td></tr>
<tr><td>합 계</td><td>100시간</td></tr>
</table>
[별표 3]
○ 세계유산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과정 교육내용(제9조 관련)
<table>
<tr><th>교육 내용</th><th>시간</th><th>비고</th></tr>
<tr><td>·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td><td>5시간</td><td></td></tr>
<tr><td>·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td><td>20시간</td><td>실습포함</td></tr>
<tr><td>·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td><td>25시간</td><td>실습포함</td></tr>
<tr><td>·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td><td>40시간</td><td>실습포함</td></tr>
<tr><td>·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td><td>10시간</td><td>실습포함</td></tr>
<tr><td>총 계</td><td>100시간</td><td></td></tr>
</table>
*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td><td>개정안
[별표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8조 관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인증기준</th></tr>
<tr><td rowspan="7">교육과목 및 교육시간</td><td>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td><td>교육시간</td></tr>
<tr><td>1)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td><td>5시간</td></tr>
<tr><td>2)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td><td>20시간</td></tr>
<tr><td>3)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td><td>25시간</td></tr>
<tr><td>4)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td><td>40시간</td></tr>
<tr><td>5) 성인지 교육,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td><td>10시간</td></tr>
<tr><td>합 계</td><td>100시간</td></tr>
</table>
[별표 3]
○ 세계유산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과정 교육내용(제9조 관련)
<table>
<tr><th>교육 내용</th><th>시간</th><th>비고</th></tr>
<tr><td>·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td><td>5시간</td><td></td></tr>
<tr><td>·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td><td>20시간</td><td>실습포함</td></tr>
<tr><td>·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td><td>25시간</td><td>실습포함</td></tr>
<tr><td>·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td><td>40시간</td><td>실습포함</td></tr>
<tr><td>· 성인지 교육,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td><td>10시간</td><td>실습포함</td></tr>
<tr><td>총 계</td><td>100시간</td><td></td></tr>
</table>
*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세계문화유산해설사의 양성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2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9조(생활체육의 진흥)</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는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위한 시책 마련에 있어서, 제19조에서 생활체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선호 종목에 있어서도 남성의 경우 ‘걷기(32.1%), 등산(20.5%), 보디빌딩(22.9%), 축구·풋살(12.7%)’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걷기(51.8%), 요가·필라테스·태보(15.9%), 등산(13.9%), 수영(12.5%)’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음. 특히 연령대별 성별에 있어서도 선호 종목에 격차를 보였음. 즉 10대 남성은 축구·풋살이 49.6%, 10대 여성은 걷기가 41.6%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20대 남성은 보디빌딩이 38.1%, 20대 여성은 걷기가 38.6%로 선호도가 가장 높아서 극명한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드러냈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별·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관심도와 선호도가 다르며 연령대별로 생활체육의 참여 격차 등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정책 대상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도민 모두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됨.
– 따라서 일률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진흥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9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생략)</td><td>제19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u>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u>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또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지니며, 중요한 의사결정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을 구성할 때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해당 주민협의회와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을 통하여 관련 정책 발굴 및 시행 등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예시 중에는 문화·예술단체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하여 위촉직 위원 자격을 ‘대표’에서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여 위촉직 위원에 여성도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 완화’를 제안하였음.

2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이사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검토조례는 제14조에서는 제주관광공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의 규정 취지를 반영하여 관광공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특정 성별의 과다한 독점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원 구성 시 성별균형에 따른 고려를 명시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승진에 제약과 차별을 받거나 조직에서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함.
- 2021년 경영평가대상 공공기관 131곳(공기업36, 준정부기관 95)을 대상으로 임원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1556명 중 341명(21.91%)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18.9%)를 달성했지만, 공공기관 여성 임원 대부분은 외부에서 영입한 비상임 이사들임. 특히 내부 출신 상임이사 중 여성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음(출처: 이데일리, “공공기관 임원 5명중 1명은 여성이지만…상임은 고작 5.3%뿐”, 2021. 6. 15.).
- 제주 대표 공기업 여성임원 비율이 전무한 가운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원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보면 전체 18% 중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은 없음(출처: 제주도민일보, “제주개발공사 등 여성 임원 ‘제로(0)’…조례 개정”, 2020. 9. 3.).</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 ⑧ (생략)</td><td>제1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주민협의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지구 시책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문화지구를 보존하고 관리 및 육성하는 과정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됨.
이에 제7조 주민협의체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정 추가를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양성평등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을 고려한 주민협의체 구성 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td><td>제7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u>성별과 연령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u>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주민협의체 구성 시 성별과 연령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당검토조례는 제7조에서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양성의 균형있는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균형의 규정 추가를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7조 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 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7조 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 조례 개정</td></tr>
</table>

2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평가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평가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⑥ (생략)</td><td>1안)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평가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에 있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 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4조의 축제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위원회 구성 시, 공적 영역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하여 위촉직 위원 자격을 ‘대표’에서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완화’를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한 구성 개정 제안
·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완화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2. (생략)
3. 문화·예술단체 대표 5명
4.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
5.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신 설></td><td>1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자 5명
4.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자 5명
5.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2. (현행과 같음)</td></tr>
</table>

		3.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자 5명 4.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자 5명 5.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선과제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 ·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완화 및 안전전문가, 성인지 전문가 등의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	

2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9조의 관광교육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td><td>1안)
제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0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5조(구성)	
분류	③ 성별 균형 참여	
문제점	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조의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5조(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	1안)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	

3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주자치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성인지 전문가 포함 및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⑤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문화, 성인지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문화, 성인지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성인지 전문가 포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공정관광 위원회 설치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조 공정관광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공정관광 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⑧ (생략)</td><td>1안)
제5조(공정관광 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공정관광 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생략)</td><td>1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6조 평정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⑥ (생략)</td><td>1안)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1조 관광진흥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⑫ (생략)</td><td>1안)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⑬ (현행과 같음)

2안)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⑬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생략)</td><td>1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조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td><td>1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td><td>1안)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 국어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0조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td><td>1안)
제1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1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협의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td><td>1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위원회)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생략)</td><td>1안)
제6조(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0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td><td>1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4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분류	③ 성별 균형 참여	
문제점	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1안)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선과제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	

4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협의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⑥ (생략)</td><td>1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조 옛길조성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생략)</td><td>1안)
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운영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u><신 설></u></td><td>1안)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2안)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조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⑦ (생략)</td><td>1안)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4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td><td>1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신 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2조의2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⑨ (생략)</td><td>1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2조의2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④ ~ ⑨ (생략)</td><td>1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⑤ ~ ⑩</u> (현행과 같음)

2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⑤ ~ ⑩</u>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2조의2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⑨ (생략)</td><td>1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3조의2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⑨ (생략)</td><td>1안)
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3조(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3조(구성 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 ⑩ (생략)</td><td>1안)
제23조(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⑪ (현행과 같음)

2안)
제23조(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⑪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심의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심의회 구성)
① (생략)
<신 설>
② ~ ③ (생략)</td><td>1안)
제6조(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의3(위원회 구성 및 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4조의3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의3(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u><신 설></u>
④ ~ ⑦ (생략)</td><td>1안)
제4조의3(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⑤ ~ ⑧</u>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의3(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⑤ ~ ⑧</u>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⑩ (생략)</td><td>1안)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⑪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⑪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구성)
① ~ ③ (생략)
<u><신 설></u></td><td>1안)
제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2안)
제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2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2조 미술관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td><td>1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2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6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구성 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6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 해신제봉행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구성 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6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3조(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3조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td><td>1안)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3조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td><td>1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⑥ (생략)</td><td>1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자치법규에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6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위하여 제10조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영관광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 및 분석할 수 있는 관광객의 평가가 필요함.
– 성별, 연령별, 대상별, 국가별 특성 등을 반영한 관광객 현황 및 그 평가의 결과로서 '관광객만족도 조사'는 입장객의 수요변화를 파악하고 관광지별 수용태세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서비스 향상 및 환류체계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자료이자, 여성과 남성의 요구, 관광약자의 관광객의 만족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방향의 설정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이에 제10조 제1항에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관광객만족도 조사 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만족도 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관광객만족도 조사 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7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7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제8조의 2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인적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
–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문화, 역사, 관광 등에 대한 해설 확대 및 수요 증대에 따른 문화해설사 활동의 질적 개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 시 수요자의 성별, 연령별, 대상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7조 제3항에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 신설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문화관광해설사 실태조사 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 근거 마련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생략)</td><td>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문화관광해설사 실태조사 및 관광객만족도조사 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7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의2(관광객 만족도 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7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제8조의 2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인적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
–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문화, 역사, 관광 등에 대한 해설 확대 및 수요 증대에 따른 문화해설사 활동의 질적 개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 시 수요자의 성별, 연령별, 대상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7조 제3항 및 제8조2에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 신설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만족도조사 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 근거 마련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의2(관광객 만족도 조사) 도지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td><td>제8조의2(관광객 만족도 조사) 도지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만족도 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만족도조사 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7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별지 제25호식], 제72조 (관광 통계), 제74조(지역축제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는 제72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광통계 작성에서의 제주관광 관련 통계 작성 및 제74조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으며 관련 계획 및 여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적 사항을 작성하는 제12조 [별지 제25호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제12조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2조 [별지 제25호식]
[ ] 지정 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td><td>제12조 [별지 제25호식]
관광편의시설업 [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남, 여)
주 소 | 전화번호</td></tr>
<tr><td>제72조 (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및 제주특별법 제23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td><td>제72조 (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및 제주특별법 제23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관광통계 작성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제74조(지역축제 등)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td><td>제74조(지역축제 등)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제12조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조례 개정</td></tr>
</table>

7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 제9조에서는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적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
– 성별, 연령별, 대상별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상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자료이자 그 결과를 육성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상황, 정책과 수혜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하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td><td>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융자신청) [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융자신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년도 ○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1. 신청인의 현황
<table><tr><td>상 호①
(법인명/업체명)</td><td colspan="2"></td><td>사업
종류(등급)②</td><td></td></tr><tr><td>대 표 자</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tr><td>설립(등록)일</td><td></td><td>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tr><td>기업규모</td><td colspan="2">( )계열, 대, 중소</td><td>결 산 일</td><td>월 일</td></tr></table></td><td>제2조(융자신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년도 ○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1. 신청인의 현황
<table><tr><td>상 호①
(법인명/업체명)</td><td colspan="2"></td><td>사업
종류(등급)②</td><td></td></tr><tr><td>대 표 자</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tr><td>설립(등록)일</td><td></td><td>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남, 여)</td></tr><tr><td>기업규모</td><td colspan="2">( )계열, 대, 중소</td><td>결 산 일</td><td>월 일</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75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별지 제1호서식] ,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별지 제3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제6조 [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3">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6">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td><td>처리기한
20일</td></tr><tr><td rowspan="4">신청인</td><td colspan="2">업 체 명</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td></tr><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td><td>대표자 성명</td><td></td></tr><tr><td rowspan="2">실 무
담 당 자</td><td>성 명</td><td></td><td>부 서</td><td></td><td>직 위</td><td></td></tr><tr><td>Tel</td><td></td><td>Fax</td><td></td><td>E-mail</td><td></td></tr></table></td><td>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6">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td><td>처리기한
20일</td></tr><tr><td rowspan="4">신청인</td><td colspan="2">업 체 명</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td></tr><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td><td>대표자 성명</td><td>(남, 여)</td></tr><tr><td rowspan="2">실 무
담 당 자</td><td>성 명</td><td></td><td>부 서</td><td></td><td>직 위</td><td></td></tr><tr><td>Tel</td><td></td><td>Fax</td><td></td><td>E-mail</td><td></td></tr></table></td></tr>
<tr><td>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별지 제3호서식]
<table><tr><td colspan="4">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기관 지정(연장)신청서</td></tr><tr><td>①기관명</td><td colspan="3"></td></tr><tr><td>②대표자</td><td></td><td>③법인등록번호</td><td></td></tr><tr><td>④소재지</td><td colspan="3"></td></tr></table></td><td>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별지 제3호서식]
<table><tr><td colspan="4">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기관 지정(연장)신청서</td></tr><tr><td>①기관명</td><td colspan="3"></td></tr><tr><td>②대표자</td><td>(남, 여)</td><td>③법인등록번호</td><td></td></tr><tr><td>④소재지</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76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제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제1항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별지 제2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4">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신청서</td></tr><tr><td>①업 체 명</td><td></td><td>②신청종류</td><td>1. 제주관광명품
2. 우수업체
3. 제주관광명장</td></tr><tr><td>③성 명
(대표자)</td><td>한 글 (한자)</td><td>④생년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4">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신청서</td></tr><tr><td>①업 체 명</td><td></td><td>②신청종류</td><td>1. 제주관광명품
2. 우수업체
3. 제주관광명장</td></tr><tr><td>③성 명
(대표자)</td><td>한 글 (한자)</td><td>④생년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4">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읍·면·동장 추천서</td></tr><tr><td>①업 체 명</td><td></td><td>②추천분야</td><td>1. 제주관광명품
2. 우수업체
3. 제주관광명장</td></tr><tr><td>③성 명
(대표자)</td><td>한 글 (한자)</td><td>④생년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4">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읍·면·동장 추천서</td></tr><tr><td>①업 체 명</td><td></td><td>②추천분야</td><td>1. 제주관광명품
2. 우수업체
3. 제주관광명장</td></tr><tr><td>③성 명
(대표자)</td><td>한 글 (한자)</td><td>④생년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7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5조(사용허가) 제1항 [별지 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5조 제1항 [별지 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서식]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table><tr><td rowspan="3">신
청
자</td><td>성 명
(대표자)</td><td></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r><tr><td>단 체 명</td><td></td></tr><tr><td>주 소</td><td></td><td>연락
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서식]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table><tr><td rowspan="3">신
청
자</td><td>성 명
(대표자)</td><td></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남, 여)</td></tr><tr><td>단 체 명</td><td></td></tr><tr><td>주 소</td><td></td><td>연락
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78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사용허가 등)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사용허가 취소신청) [별지 제7호서식] , 제4조(사용료 감면) [별지 제8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4호서식] , 제3조 [별지 제7호서식] , 제4조 [별지 제8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5">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문예회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주 소 / 직업 또는 단 체 명 / 전화번호(휴대폰)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td><td>[별지 제1호서식]
문예회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주 소 / 직업 또는 단 체 명 / 전화번호(휴대폰)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 여)</td></tr>
<tr><td>[별지 제4호서식]
문예회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사용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핸드폰)</td><td>[별지 제4호서식]
문예회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사용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전화번호(핸드폰)</td></tr>
<tr><td>[별지 제7호서식]
문예회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사용자: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핸드폰)</td><td>[별지 제7호서식]
문예회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사용자: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생년월일 (남, 여) / 전화번호(핸드폰)</td></tr>
<tr><td>[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체명(직명) :
2. 사용 시설명 :
3. 공연·전시·행사명 :
4. 사용기간 :
5. 사 용 료 : 원(기본시설사용료 원의 %감면)
6. 감면사유 :</td><td>[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별 :
단체명(직명) :
2. 사용 시설명 :
3. 공연·전시·행사명 :
4. 사용기간 :
5. 사 용 료 : 원(기본시설사용료 원의 %감면)
6. 감면사유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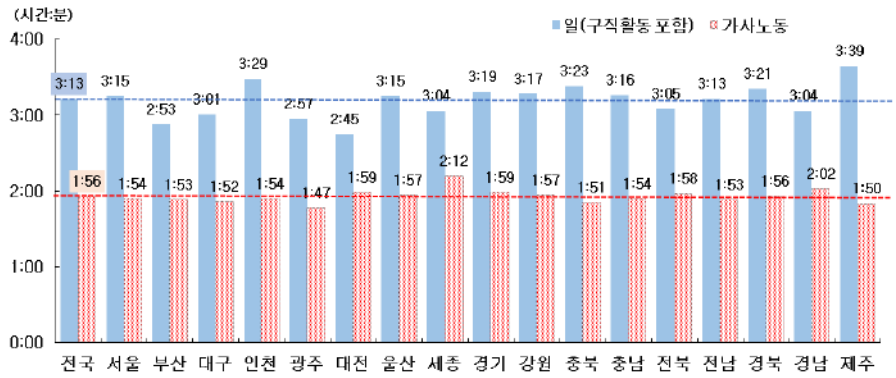
7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시설 사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5">문화관람실 사용(변경)신청서</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직업또는단체명</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tr><td>성 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5">문화관람실 사용(변경)신청서</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직업또는단체명</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tr><td>성 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이 용 자 기 록 부
<table><tr><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월일</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연령</td><td rowspan="2">주소</td><td rowspan="2">전화</td><td colspan="3">이 용 시 설</td></tr><tr><td>시청각실 (인터넷, CD, 비디오)</td><td>A/V 감상실</td><td>독서및공부방</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제2호서식]
이 용 자 기 록 부
<table><tr><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월일</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연령</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주소</td><td rowspan="2">전화</td><td colspan="3">이 용 시 설</td></tr><tr><td>시청각실 (인터넷, CD, 비디오)</td><td>A/V 감상실</td><td>독서및공부방</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각 종 자 료 이 용 기 록 부
<table><tr><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월일</td><td colspan="4">자 료 열 람 신 청 서</td><td rowspan="2">대여시간</td><td rowspan="2">반납시간</td><td rowspan="2">반납확인</td></tr><tr><td>자료명</td><td>수량</td><td>성명</td><td>서명</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제3호서식]
각 종 자 료 이 용 기 록 부
<table><tr><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월일</td><td colspan="5">자 료 열 람 신 청 서</td><td rowspan="2">대여시간</td><td rowspan="2">반납시간</td><td rowspan="2">반납확인</td></tr><tr><td>자료명</td><td>수량</td><td>성명</td><td>성별</td><td>서명</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8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3">영상산업진흥지구지정 및 조성계획승인(변경)신청서</td><td>처리기간
40일</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법인또는기관명</td><td colspan="3"></td></tr><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3">영상산업진흥지구지정 및 조성계획승인(변경)신청서</td><td>처리기간
40일</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법인또는기관명</td><td colspan="3"></td></tr><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별지 제4호서식]
<table><tr><td colspan="5">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직업 또는
단체명</td><td></td><td>연 락
전화번호</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4호서식]
<table><tr><td colspan="5">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직업 또는
단체명</td><td></td><td>연 락
전화번호</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별지 제7호서식]
<table><tr><td colspan="4">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td></tr><tr><td rowspan="2">1. 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2"></td></tr><tr><td>성 명
(단체명)</td><td colspan="2"></td></tr></table></td><td>[별지 제7호서식]
<table><tr><td colspan="4">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td></tr><tr><td rowspan="2">1. 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2"></td></tr><tr><td>성 명
(단체명)</td><td colspan="2">(남, 여)</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8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5조(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분류	② 성별 특성, ④ 성별 통계
문제점	· 해당검토조례는 도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있어서 제5조에서 '도민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도민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제5조 제1호 '도민여가생활 실태조사' 시, 성별의 따른 수혜와 수급이 형평성있는 정책 효과로 나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성별분리통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민여가생활 실태조사에 '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실태조사' 포함하여 전국에서 '일하는 시간이 제일 긴'제주의 근로자의 휴가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제안함.  통계청(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시도별 시간사용(2019) > – 제5조 제2호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서 성별에 따라 즐기는 여가활동과 그 의미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측면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여도로 인해 여가활동 시간에서 성별 격차를 보이는 점 등을 반영하여'성별 특성'에 대한 규정 추가를 제안함. – 성별로 유형별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여성은 주로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남성은 '취미·오락 활동', '스포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향은 성별 평균 여가시간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2020년 기준 휴식활동을 제외한 지속적인 여가활동의 경우는 전체 48.9%로 남성(50.2%)이 여성(47.7%) 대비 높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휴일평균 여가시간은 5.9시간으로 여성의 5.3시간 대비 높게 나타남. 또한 남성의 휴일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균 점수 5.07점으로, 여성 4.86점 대비 높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활동 시간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여도가 더 높기 때문인데,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79.3%)은 하루 일과 후 피곤을 느끼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직장 일(50.5%)이었음. 피곤하다고 답한 비율이 특히 높은 집단은 30대(90.5%), 미취학자녀가 있는 사람(93.9%), 맞벌이 가구의 여성(90.5%) 등이었음. 즉 미취학 자녀가 있는 30대 맞벌이 여성이 가장 피곤을 많이 느끼고 있음. 더욱이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의 76.4%가 직장 일을 줄이고 싶은 반면, 여성은 57.6%가 직장일을, 22.9%가 가사를 줄이고 싶어 했음(출처: 통계청(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201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가 보유 및 사용 현황에서 2017년 한

<table>
<tr><td></td><td colspan="2">해 동안 근로자가 실제 부여받은 연차 휴가는 14.4일, 실제 사용한 휴가는 8.4일로 연차휴가 사용은 58.4% 수준임. 그 중 연차휴가 미사용 이유는 규제하는 조직 내 분위기, 상사의 눈치, 직장 내 휴가장려제도 부족 등이 22.7%(1순위 기준)로 나타남(출처: 한국관광공사(2018). 「201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 더욱이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등 고용형태에 따라 휴가 및 휴식권 보장이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직장 내 휴가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큼.
– 특히 여성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남성근로자보다 일·생활 균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결혼, 출산 및 양육과 함께 기혼 여성근로자는 장시간 근로가 여가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 등에 영향을 미쳐 일과 생활의 균형적인 시간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기업이 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일과 여가의 조화'라는 문화 확산은 여성근로자의 이직 및 퇴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휴가경험>
 

주: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 도민여가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하도록 제안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
2. 도민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 9. (생략)</td><td>제5조(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
2. 도민 성별·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 9.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 도민여가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
·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8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검토조례는 제8조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 조사 시, 도민의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여 문화다양성 확산의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국적 등을 포함하여 성별분리통계 구축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제8조 제1항에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외의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외의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현행검토조례 제5조에서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에 대해 성별로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 정책 및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제5조 제1항에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실태 조사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 제7조에서는 도민의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환경 등에 관한 자료수립 및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인적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
– 이에 제7조 제1항에‘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7조(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 제4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실시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성별에 다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인적현황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4조 제3항에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td><td>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6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신설
분류	② 성별 특성, ④ 성별 통계
문제점	· 현행검토조례는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출판산업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한 출판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실태조사 신설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기준 국내 출판사업체 종사자 수는 2만 7,086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 전체에서 남성은 48.7%, 여성은 51.3%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종사자의 경우 29세 이하가 34,537명, 30~34세가 38,302명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체 유형은 '1인 이상 9인 이하'로 매출 규모와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됨(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9), 「2019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 지역출판산업은 소규모 영세 출판사들이 많으며, 여성종사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외주 노동자 규모가 큼. 이로 인해 출판산업 내에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노동 등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장 내부의 업무압박,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며 외주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출판종사자 68.4%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판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드러낸 바 있음. 성희롱, 성폭력은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뿐 아니라 저역자–노동자 간의 권력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음(출처: 전국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2018), 「2018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 –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홍보물 게시 및 배포 방법으로 대신하고 있어서 '1인 이상 9인 이하'사업체가 가장 많은 출판사업장의 실정과는 맞지 않음.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이 출판계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출판 노동자 중 직접적인 성폭력 경험이 없었던 이의 비율은 31.6%에 불과했다.(…)특히 성폭력 피해는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두드러졌다. 남성 응답자 중 직접적 성폭력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는 31명(60.8%)이었으나, 여성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는 46명(22.9%)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자 중 77.1%가 성폭력 피해자였던 셈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는 62.7%였다. 비정규직은 81.5%가 성폭력 경험이 있었다. 취업 형태가 불리할수록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컸던 셈이다. 성폭력 사례로는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가 131명(53.7%, 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성폭력(78명, 32.0%), 술 따르기·노래 부르기·안마 강요·강압적 데이트 신청 등 성적 서비스 강요 성폭력(67명, 27.5%) 비중도 컸다. 소수 응답자 중에는 성관계를 강요당한 사례도 있었다(출처: 프레시안, "출판사 여직원 80% "성폭력 경험 있다", 2016.11.10.). – 이에 지역출판 진흥에 대한 시책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별통계를 반영한 지역출판 산업 실태조사 내용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
개선의견	지역출판 진흥의 시책마련을 위한 성별통계를 반영한 지역출판 산업 실태조사 신설 제안

	현행 조례	개정안
조례개정안	<신 설>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에 대한 시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선과제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한 지역출판 산업 실태조사 내용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87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10조(실태조사 등)	
분류	④ 성별 통계	
문제점	· 해당검토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청년 문화역량은 남성과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여건, 예술활동 수입, 고용형태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태조사 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 내용의 근거 마련해야함. – 따라서 제10조 제1항에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	
개선의견	제10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제10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	

8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실태조사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검토조례 ‘제5조 복지실태 및 실태조사 실시’에서는 성별분리통계가 부재한 상황임.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문화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복지실태와 실태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 작성의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제5조에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5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td><td>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5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사용신청)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사용료 감면) [별지 제6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 [별지 제6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td><td>[별지 제1호서식]
해변공연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 주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연락 전화번호 | 성 명 (대표자) | 생년월일</td><td>[별지 제1호서식]
해변공연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 주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연락 전화번호 | 성 명 (대표자) | 생년월일 (남, 여)</td></tr>
<tr><td></td><td>[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체명(직업) :
2. 사용시설명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액 : 원 (사용료 원의 퍼센트)
6. 감면사유 :
위와 같이 해변공연장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수지계산서
2.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td><td>[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별 :
단체명(직업) :
2. 사용시설명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액 : 원 (사용료 원의 퍼센트)
6. 감면사유 :
위와 같이 해변공연장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수지계산서
2.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9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는 사업에 대한 요구도와 차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분석으로 실효적인 정책개발 및 개선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제5조 제1항에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사용허가의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자 | 주 소 | | | |
직업 또는 단 체 명 | |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사용료 감면 대상 여부 | · 국가 또는 도(행정시 포함) 주최 행사( ) - 100% 감면
· 도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 - 50% 감면
· 도 단위 이상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의 바정회 문화행사( ) - 50% 감면</td><td>[별지 제1호서식]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자 | 주 소 | | | |
직업 또는 단 체 명 | |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남, 여)
사용료 감면 대상 여부 | · 국가 또는 도(행정시 포함) 주최 행사( ) - 100% 감면
· 도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 - 50% 감면
· 도 단위 이상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의 바정회 문화행사( ) - 50% 감면</td></tr>
<tr><td>[별지 제5호서식]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설사용 변경신청서
신청자 | 주 소 | | | |
직업 또는 단 체 명 | |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td><td>[별지 제5호서식]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설사용 변경신청서
신청자 | 주 소 | | | |
직업 또는 단 체 명 | |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남, 여)</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9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사용허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별지 제5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제7조 [별지 제5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자 / 주 소 / 직업또는 단체명 / 전화번호 / 성 명 (대표자) / 생년월일</td><td>[별지 제1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자 / 주 소 / 직업또는 단체명 / 전화번호 / 성 명 (대표자) / 생년월일 (남, 여)</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시설 추가사용 신청서
사용자 /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성 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td><td>[별지 제3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시설 추가사용 신청서
사용자 /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성 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남, 여)</td></tr>
<tr><td>[별지 제4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사용자 /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td><td>[별지 제4호서식]
제주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사용자 /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남, 여)</td></tr>
</table>

<table>
<tr>
<td></td>
<td>[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체명(직명) :

2. 사용 시설명 :

3. 행 사 명 :

4. 사용기간 :

5. 사 용 료 :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의 %감면)
(부대시설사용료 원의 %감면)
6. 감면사유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사단법인 도 단위이상 문화예술단체 지회(지부)인준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td>
<td>[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별 :
단체명(직명) :

2. 사용 시설명 :

3. 행 사 명 :

4. 사용기간 :

5. 사 용 료 :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의 %감면)
(부대시설사용료 원의 %감면)
6. 감면사유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사단법인 도 단위이상 문화예술단체 지회(지부)인준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td>
</tr>
<tr>
<td>개선과제</td>
<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
</tr>
</table>

9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사용신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사용료감면) [별지 제6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 [별지 제6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문화회관 사용허가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직업 또는 단체명</td><td></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2">사용 시설</td><td>기본시설</td><td colspan="3"></td></tr>
<tr><td>부대시설</td><td colspan="3"></td></tr>
</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문화회관 사용허가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직업 또는 단체명</td><td></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 rowspan="2">사용 시설</td><td>기본시설</td><td colspan="3"></td></tr>
<tr><td>부대시설</td><td colspan="3"></td></tr>
</table></td></tr>
<tr><td>[별지 제2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직업 또는 단체명</td><td></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성 명 (대 표 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able></td><td>[별지 제2호 서식]
문화회관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직업 또는 단체명</td><td></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성 명 (대 표 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able></td></tr>
<tr><td>[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구 분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td><td>[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별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구 분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9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제9조(사용료 감면) [별지 제4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도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과 그 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r>
<tr><td>사용 시설명 또는 사용내용</td><td colspan="4"></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도민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과 그 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r>
<tr><td>허 가 사 항</td><td colspan="2">허가 내용</td><td colspan="2">변경 신청내용</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 업 (단체, 클럽) 명 :
전화번호 :
2. 사 용 시 설 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구 분 : 전 액 ( ), 50퍼센트 ( )
6. 감 면 사 유 :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민회관의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td><td>[별지 제1호서식]
도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과 그 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사용 시설명 또는 사용내용</td><td colspan="4"></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도민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과 그 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허 가 사 항</td><td colspan="2">허가 내용</td><td colspan="2">변경 신청내용</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성 별 :
직 업 (단체, 클럽) 명 :
전화번호 :
2. 사 용 시 설 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구 분 : 전 액 ( ), 50퍼센트 ( )
6. 감 면 사 유 :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민회관의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9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별지 제5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5호서식]
기 증·기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증(탁)하오니 연구·전시 또는 사회교육 등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운영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tr><th>품 목</th><th>수 량</th><th>종 류</th><th>규 격</th><th>시 대</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1. 기증(기탁)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료목록

※기탁의 경우 기탁기간 표시

년 월 일

기증(탁)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td><td>[별지 제5호서식]
기 증·기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증(탁)하오니 연구·전시 또는 사회교육 등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운영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tr><th>품 목</th><th>수 량</th><th>종 류</th><th>규 격</th><th>시 대</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1. 기증(기탁)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료목록

※기탁의 경우 기탁기간 표시

년 월 일

기증(탁)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u>성 별 :</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9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공공미술 설치 신청) [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h colspan="5">공공미술 설치 신청서</th></tr>
<tr><td rowspan="2">신 청 자</td><td>성명(단체명)</td><td></td><td>전화</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설치위치</td><td colspan="4"></td></tr>
<tr><td>설치목적</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td><td>성명(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생 존 기 간</td><td colspan="3"></td></tr>
<tr><td>주요업적개요</td><td colspan="3"></td></tr>
</table>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h colspan="5">공공미술 설치 신청서</th></tr>
<tr><td rowspan="2">신 청 자</td><td>성명(단체명)</td><td></td><td>전화</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설치위치</td><td colspan="4"></td></tr>
<tr><td>설치목적</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td><td>성명(한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생 존 기 간</td><td colspan="3"></td></tr>
<tr><td>주요업적개요</td><td colspan="3"></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97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제3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table><tr><td colspan="4">사용허가취소신청 및 사용료반환청구서</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
(핸드폰)</td><td></td></tr><tr><td>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3호서식]
<table><tr><td colspan="4">사용허가취소신청 및 사용료반환청구서</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
(핸드폰)</td><td></td></tr><tr><td>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98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대관허가 신청 등)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 제13조(소장품 이용허가신청 등) [별지 제16호서식] , 제14조(작품대여 신청 등)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 제13조 [별지 제16호서식] , 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4">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9호서식]
대 관 허 가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4">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소속·단체명</td><td></td><td>연 락 전 화</td><td>직 장</td><td></td></tr>
<tr><td></td><td></td><td></td><td>자 택</td><td></td></tr>
<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전시(행사)명</td><td colspan="5"></td></tr>
</table></td><td>[별지 제9호서식]
대 관 허 가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4">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소속·단체명</td><td></td><td>연 락 전 화</td><td>직 장</td><td></td></tr>
<tr><td></td><td></td><td></td><td>자 택</td><td></td></tr>
<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남, 여)</td></tr>
<tr><td>전시(행사)명</td><td colspan="5"></td></tr>
</table></td></tr>
<tr><td>[별지 제12호서식]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소 속
단체명</td><td></td><td>연락전화</td><td>직 장</td><td></td></tr>
<tr><td></td><td></td><td></td><td>자 택</td><td></td></tr>
<tr><td>대표자
성 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전시(행사)명</td><td colspan="5"></td></tr>
</table></td><td>[별지 제12호서식]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소 속
단체명</td><td></td><td>연락전화</td><td>직 장</td><td></td></tr>
<tr><td></td><td></td><td></td><td>자 택</td><td></td></tr>
<tr><td>대표자
성 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남, 여)</td></tr>
<tr><td>전시(행사)명</td><td colspan="5"></td></tr>
</table></td></tr>
<tr><td>[별지 제16호서식]
소 장 품 이 용 허 가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4">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소속·단체명</td><td></td><td>연 락 전 화</td><td>직 장</td><td></td></tr>
<tr><td></td><td></td><td></td><td>자 택</td><td></td></tr>
<tr><td>대 표 자 성 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able></td><td>[별지 제16호서식]
소 장 품 이 용 허 가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4">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소속·단체명</td><td></td><td>연 락 전 화</td><td>직 장</td><td></td></tr>
<tr><td></td><td></td><td></td><td>자 택</td><td></td></tr>
<tr><td>대 표 자 성 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남, 여)</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별지 제18호서식]
작 품 대 여 신 청 서
<table><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tr><td>소속·단체명</td><td></td><td>연 락 전 화</td><td>직 장</td><td></td></tr><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자 택</td><td></td></tr></table></td><td>[별지 제18호서식]
작 품 대 여 신 청 서
<table><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tr><td>소속·단체명</td><td></td><td>연 락 전 화</td><td>직 장</td><td></td></tr><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자 택</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제20호서식]
작 품 대 여 연 장 신 청 서
<table><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tr><td>소속·단체명</td><td></td><td>연 락 전 화</td><td>직 장</td><td></td></tr><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자 택</td><td></td></tr></table></td><td>[별지 제20호서식]
작 품 대 여 연 장 신 청 서
<table><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tr><td>소속·단체명</td><td></td><td>연 락 전 화</td><td>직 장</td><td></td></tr><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자 택</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99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1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신청서 등) [별지 제16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1조 [별지 제16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td><td>[별지 제16호서식] (앞쪽)
<table><tr><td colspan="3">외국인국내공연 □추 천 □변경추천 신청서</td><td>처리기간</td></tr><tr><td colspan="3">※ ⑭, ⑮, ⑯은 변경추천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td><td>추천 : 10일
변경 : 5일</td></tr><tr><td rowspan="5">신청인</td><td>①공연자의명칭</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 :)</td></tr><tr><td>②공연자소재지</td><td colspan="2">(전화 :)</td></tr><tr><td>③대 표 자 성 명</td><td>④생년월일</td><td></td></tr><tr><td>⑤대 표 자 주 소</td><td colspan="2">(전화 :)</td></tr></table></td><td>[별지 제16호서식] (앞쪽)
<table><tr><td colspan="3">외국인국내공연 □추 천 □변경추천 신청서</td><td>처리기간</td></tr><tr><td colspan="3">※ ⑭, ⑮, ⑯은 변경추천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td><td>추천 : 10일
변경 : 5일</td></tr><tr><td rowspan="5">신청인</td><td>①공연자의명칭</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 :)</td></tr><tr><td>②공연자소재지</td><td colspan="2">(전화 :)</td></tr><tr><td>③대 표 자 성 명</td><td>④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⑤대 표 자 주 소</td><td colspan="2">(전화 :)</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0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8조(정기조사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 제18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예능 현황,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등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18조 제1항에 ‘다만 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8조(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예능·기능·지식의 3개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td><td>제18조(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예능·기능·지식의 3개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u>다만 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1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4">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td></tr>
<tr><td rowspan="2">유산
구분</td><td colspan="2">① 지정 종류</td><td>□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td></tr>
<tr><td colspan="2">②유형/종목</td><td></td></tr>
<tr><td rowspan="12">대상
유산
현황</td><td rowspan="2">③명칭</td><td>한글</td><td>한자</td></tr>
<tr><td>영문</td><td></td></tr>
<tr><td colspan="2">④ 시대/연대</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⑤ 소재지</td><td>지번주소</td><td></td></tr>
<tr><td>도로명주소</td><td></td></tr>
<tr><td colspan="2">⑥ 구조/형식/형태</td><td></td></tr>
<tr><td colspan="2">⑦ 재료/품질</td><td></td></tr>
<tr><td colspan="2">⑧ 수량/규모/크기</td><td></td></tr>
<tr><td colspan="2">⑨ 현재 용도/기능</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⑩ 소유자
(단체)</td><td>성명(명칭)</td><td>전화번호</td></tr>
<tr><td>주소</td><td></td></tr>
<tr><td colspan="2">⑪ 연혁/유래/특징</td><td></td></tr>
<tr><td rowspan="2">⑫ 관리
단체(안)</td><td>단 체 명</td><td>대표자</td></tr>
<tr><td colspan="2">지정신청사유</td><td></td></tr>
</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4">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td></tr>
<tr><td rowspan="2">유산
구분</td><td colspan="2">① 지정 종류</td><td>□ 향토유형유산 □ 향토무형유산</td></tr>
<tr><td colspan="2">②유형/종목</td><td></td></tr>
<tr><td rowspan="12">대상
유산
현황</td><td rowspan="2">③명칭</td><td>한글</td><td>한자</td></tr>
<tr><td>영문</td><td></td></tr>
<tr><td colspan="2">④ 시대/연대</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⑤ 소재지</td><td>지번주소</td><td></td></tr>
<tr><td>도로명주소</td><td></td></tr>
<tr><td colspan="2">⑥ 구조/형식/형태</td><td></td></tr>
<tr><td colspan="2">⑦ 재료/품질</td><td></td></tr>
<tr><td colspan="2">⑧ 수량/규모/크기</td><td></td></tr>
<tr><td colspan="2">⑨ 현재 용도/기능</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⑩ 소유자
(단체)</td><td>성명(명칭) (남, 여) 전화번호</td></tr>
<tr><td>주소</td></tr>
<tr><td colspan="2">⑪ 연혁/유래/특징</td><td></td></tr>
<tr><td rowspan="2">⑫ 관리
단체(안)</td><td>단 체 명</td><td>대표자 (남, 여)</td></tr>
<tr><td colspan="2">지정신청사유</td><td></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02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전승자등의 인정서 교부) [별지 제4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4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앞쪽)
무형문화재 명칭
전승자 구분 [ ] 보유자 / [ ] 보유단체 / [ ] 명예보유자 / [ ] 보유자후보 / [ ] 전승교육사
성명 (보유단체명) /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 대표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td><td>[별지 제4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앞쪽)
무형문화재 명칭
전승자 구분 [ ] 보유자 / [ ] 보유단체 / [ ] 명예보유자 / [ ] 보유자후보 / [ ] 전승교육사
성명 (보유단체명) / 생년월일 (남, 여)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 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보유단체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03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제4조(도지정문화재 지정기준 및 절차)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제12조(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제1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제4조 [별지 제5호서식], 제9조 [별지 제8호서식], 제12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제13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3">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5">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td><td>처리기간
15일</td></tr><tr><td rowspan="4">동물치료소
지정신청대상</td><td>기 관 명</td><td></td><td>주 소</td><td colspan="2"></td></tr><tr><td>대 표 자</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tr><td>전화번호</td><td></td><td>전자메일</td><td colspan="2"></td></tr><tr><td>수 의 사
면허번호</td><td></td><td>수 의 사
면허일자</td><td colspan="2"></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5">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td><td>처리기간
15일</td></tr><tr><td rowspan="4">동물치료소
지정신청대상</td><td>기 관 명</td><td></td><td>주 소</td><td colspan="2"></td></tr><tr><td>대 표 자</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남, 여)</td></tr><tr><td>전화번호</td><td></td><td>전자메일</td><td colspan="2"></td></tr><tr><td>수 의 사
면허번호</td><td></td><td>수 의 사
면허일자</td><td colspan="2"></td></tr></table></td></tr>
<tr><td>[별지 제4호서식]
<table><tr><td colspan="4">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td><td>처리기간
5일</td></tr><tr><td rowspan="2">지정번호</td><td colspan="2"></td><td>지정일자</td><td></td></tr><tr><td>기관명</td><td></td><td>주 소</td><td></td></tr><tr><td rowspan="2">신 청 기 관</td><td>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수 의 사
면허번호</td><td></td><td>수 의 사
면허일자</td><td></td></tr></table></td><td>[별지 제4호서식]
<table><tr><td colspan="4">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td><td>처리기간
5일</td></tr><tr><td rowspan="2">지정번호</td><td colspan="2"></td><td>지정일자</td><td></td></tr><tr><td>기관명</td><td></td><td>주 소</td><td></td></tr><tr><td rowspan="2">신 청 기 관</td><td>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수 의 사
면허번호</td><td></td><td>수 의 사
면허일자</td><td></td></tr></table></td></tr>
</table>

[별지 제5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지정신청서

문화재명		수 량 (면 적)	
크 기		규 모	
재 질		구조·형식	
연 대		작 가 (건축가)	
소 유 자 성 명	(인)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 호		· 문화재 소재지(보관장소)	

[별지 제5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지정신청서

문화재명		수 량 (면 적)	
크 기		규 모	
재 질		구조·형식	
연 대		작 가 (건축가)	
소 유 자 성 명	(인)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 호	(남, 여)	· 문화재 소재지(보관장소)	

[별지 제8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문화재의 명칭		② 종류		③ 지정번호		④수량	
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⑥ 보호구역·보호물							
소 유 자	⑦성명		⑧ 생년월일		⑨ 직업		
	⑩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8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문화재의 명칭		② 종류		③ 지정번호		④수량	
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⑥ 보호구역·보호물							
소 유 자	⑦성명		⑧ 생년월일	(남, 여)	⑨ 직업		
	⑩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지정 (등록)번호		⑦수량	
	⑧ 소재지(보관 장소)					

[별지 제1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성명		②생년월일	(남, 여)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지정 (등록)번호		⑦수량	
	⑧ 소재지(보관 장소)					

[별지 제1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류		⑥지정(등록) 번호		⑦수량	
	⑧ 소재지(보관 장소)					

[별지 제1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 생 년 월 일	(남, 여)		
	③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류		⑥지정(등록) 번호		⑦수량	
	⑧ 소재지(보관 장소)					

[별지 제1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대상문화재	④ 명 칭			
	⑤ 종 류		⑥ 지정번호	
	⑦ 소재지			

[별지 제1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남, 여)
	③ 주 소	(전화번호:)		
대상문화재	④ 명 칭			
	⑤ 종 류		⑥ 지정번호	
	⑦ 소재지			

[별지 제14호서식]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도래지·생산지			

[별지 제14호서식]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남, 여)
	③ 주소	(전화번호:)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도래지·생산지			

[별지 제15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 상 문 화 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 장소)						

[별지 제15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남, 여)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 상 문 화 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 장소)						

[별지 제16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 명 칭		⑤ 종별		⑥지정번호		⑦ 수량	
⑧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						
관리자 신구	⑨성명		⑩ 생년월일				
	⑪주소						
	⑫성명		⑬ 생년월일				
	⑭주소						

[별지 제16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남, 여)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 명 칭		⑤ 종별		⑥지정번호		⑦ 수량	
⑧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						
관리자 신구	⑨성명		⑩ 생년월일				(남, 여)
	⑪주소						
	⑫성명		⑬ 생년월일				(남, 여)
	⑭주소						

[별지 제17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소유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① 문화재의 명칭		② 종별		③ 지정(등록) 번호		④ 수량	
⑤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⑥ 보 호 물 · 보 호 구 역							
소유자 변경 후	⑦ 성 명		⑧ 생년월일		⑨ 직업		
	⑩ 주 소	(전화번호 :)					
소유자 변경 전	⑪ 성 명		⑫ 생년월일		⑬ 직업		
	⑭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17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소유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① 문화재의 명칭		② 종별		③ 지정(등록) 번호		④ 수량	
⑤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⑥ 보 호 물 · 보 호 구 역							
소유자 변경 후	⑦ 성 명		⑧ 생년월일 (남, 여)		⑨ 직업		
	⑩ 주 소	(전화번호 :)					
소유자 변경 전	⑪ 성 명		⑫ 생년월일 (남, 여)		⑬ 직업		
	⑭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18호서식]

소유자 · 보유자 · 관리자의 성명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 ) 변경신고서 소재지 · 보관장소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 명칭		⑤ 종별		⑥ 지정(등록) 번호		⑦ 수량

[별지 제18호서식]

소유자 · 보유자 · 관리자의 성명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 ) 변경신고서 소재지 · 보관장소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남, 여)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 명칭		⑤ 종별		⑥ 지정(등록) 번호		⑦ 수량

[별지 제19호서식]

멸 실 유 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 ) 신고서 도 난 훼 손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 명칭		⑤ 지정(등록)종별 및 번호	제 호	

[별지 제19호서식]

멸 실 유 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 ) 신고서 도 난 훼 손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남, 여)
	③ 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 명칭		⑤ 지정(등록)종별 및 번호	제 호	

[별지 제20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재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문화재의 명칭		⑤ 종별		⑥ 지정번호		⑦ 수량	

[별지 제20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재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남, 여)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문화재의 명칭		⑤ 종별		⑥ 지정번호		⑦ 수량	

<table>
<tr><td></td><td>[별지 제21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td><td>처리기간
2일</td></tr>
<tr><td rowspan="2">신고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대상문화재</td><td>④ 명 칭</td><td></td><td>⑤ 종별</td><td>⑥지정 (등록)번호</td><td></td></tr>
<tr><td>⑦ 소재지 (보관장소)</td><td colspan="4"></td></tr>
</table></td><td>[별지 제21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등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td><td>처리기간
2일</td></tr>
<tr><td rowspan="2">신고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남, 여)</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대상문화재</td><td>④ 명 칭</td><td></td><td>⑤ 종별</td><td>⑥지정 (등록)번호</td><td></td></tr>
<tr><td>⑦ 소재지 (보관장소)</td><td colspan="4"></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0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7조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수목원시설 사용 신청서</td></tr>
<tr><td rowspan="3">신청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직업또는 단체명</td><td></td><td>전화번호 (FAX)</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td><td>휴대폰 번 호</td><td></td></tr>
</table></td><td>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수목원시설 사용 신청서</td></tr>
<tr><td rowspan="3">신청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직업또는 단체명</td><td></td><td>전화번호 (FAX)</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남, 여)</td><td>휴대폰 번 호</td><td></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0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 · 이용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체육시설업의 등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제15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별지 제13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6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제15조 [별지 제13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td><td>[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 ② 생년월일 |
신청인 | ③ 주소 | (전화:)</td><td>[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 ② 생년월일 | (남, 여)
신청인 | ③ 주소 | (전화:)</td></tr>
<tr><td></td><td>[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 ② 생년월일 |
신청인 | ③ 주소 | (전화:)</td><td>[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 ② 생년월일 | (남, 여)
신청인 | ③ 주소 | (전화:)</td></tr>
<tr><td></td><td>[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등신청내용 | ① 성명(대표자) | | ② 생년월일 |
③ 업종 | | ④ 상호 |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⑥ 부지면적 | ㎡ | ⑦ 건축물 | 동수: 동 연면적 ㎡
⑧ 시설설치 내용 | 별지와 같음
⑨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 명
⑩ 체육지도자 |</td><td>[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등신청내용 | ① 성명(대표자) | | ② 생년월일 | (남, 여)
③ 업종 | | ④ 상호 |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⑥ 부지면적 | ㎡ | ⑦ 건축물 | 동수: 동 연면적 ㎡
⑧ 시설설치 내용 | 별지와 같음
⑨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 명
⑩ 체육지도자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td><td>[별지 제9호서식]
<table><tr><td colspan="4">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td></tr><tr><td>① 성명(대표자)</td><td></td><td>② 생년월일</td><td></td></tr><tr><td>③ 영업소 소재지</td><td colspan="3">(전화:)</td></tr></table></td><td>[별지 제9호서식]
<table><tr><td colspan="4">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td></tr><tr><td>① 성명(대표자)</td><td></td><td>② 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③ 영업소 소재지</td><td colspan="3">(전화:)</td></tr></table></td></tr>
<tr><td>[별지 제13호서식]
<table><tr><td colspan="6">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td></tr><tr><td rowspan="2">신고인</td><td>① 성명(대표자)</td><td></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4">(전화)</td></tr><tr><td rowspan="5">영업소</td><td>④ 상호</td><td></td><td>⑤ 전화번호</td><td colspan="2"></td></tr><tr><td>⑥ 소재지</td><td colspan="4"></td></tr><tr><td>⑦ 종류</td><td colspan="4"></td></tr><tr><td>⑧ 규모</td><td colspan="4"></td></tr><tr><td rowspan="2">⑨체육지도자</td><td>성명</td><td></td><td>자격종류 및 자격번호</td><td colspan="2"></td></tr><tr><td>주소</td><td colspan="4"></td></tr></table></td><td>[별지 제13호서식]
<table><tr><td colspan="6">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td></tr><tr><td rowspan="2">신고인</td><td>① 성명(대표자)</td><td></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남, 여)</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4">(전화)</td></tr><tr><td rowspan="5">영업소</td><td>④ 상호</td><td></td><td>⑤ 전화번호</td><td colspan="2"></td></tr><tr><td>⑥ 소재지</td><td colspan="4"></td></tr><tr><td>⑦ 종류</td><td colspan="4"></td></tr><tr><td>⑧ 규모</td><td colspan="4"></td></tr><tr><td rowspan="2">⑨체육지도자</td><td>성명</td><td></td><td>자격종류 및 자격번호</td><td colspan="2"></td></tr><tr><td>주소</td><td colspan="4"></td></tr></table></td></tr>
<tr><td>[별지 제13호서식]
<table><tr><td colspan="5">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①성명(대표자)</td><td></td><td>②생년월일</td><td></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td></tr></table></td><td>[별지 제13호서식]
<table><tr><td colspan="5">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①성명(대표자)</td><td></td><td>②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0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 검토조례는 체육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에 있어, 제10조에서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성인지적 관점에서 스포츠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별로 구분된 통계 작성이 필요함.
· 이에 제10조 제1항에‘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10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10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7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사용허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제7조(위탁관리) [별지 제14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제7조 [별지 제14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5">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단 체
(성명)</td><td row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사용시설명칭</td><td></td><td>경기(행사)명</td><td></td></tr>
</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단 체
(성명)</td><td row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 colspan="2">사용시설명칭</td><td></td><td>경기(행사)명</td><td></td></tr>
</table></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단 체
(성명)</td><td row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허가사항</td><td>변 경 전</td><td colspan="2">변 경 후</td></tr>
</table></td><td>[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단 체
(성명)</td><td row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 colspan="2">허가사항</td><td>변 경 전</td><td colspan="2">변 경 후</td></tr>
</table></td></tr>
<tr><td>[별지 제6호서식]
월회원권 발급신청
<table>
<tr><td>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체육시설명</td><td></td></tr>
</table></td><td>[별지 제6호서식]
월회원권 발급신청
<table>
<tr><td>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d>체육시설명</td><td></td></tr>
</table></td></tr>
<tr><td>[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 위·수탁 승인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단체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용시설명</td><td colspan="3"></td></tr>
</table></td><td>[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 위·수탁 승인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단체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용시설명</td><td colspan="4"></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0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 제14조(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9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별지 제11호서식],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별지 제13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제12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 제14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제16조 [별지 제8호서식], 제19조 [별지 제10호서식], 제21조 [별지 제11호서식], 제24조 [별지 제13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카지노업허가 신청서 (앞 쪽)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6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td><td></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r><td colspan="2">상 호(명 칭)</td><td></td><td>면 적</td><td></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카지노업허가 신청서 (앞 쪽)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6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r><td colspan="2">상 호(명 칭)</td><td></td><td>면 적</td><td></td></tr></table></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앞 쪽)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6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td><td></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r><td colspan="2">상 호(명 칭)</td><td></td><td>면 적</td><td></td></tr></table></td><td>[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앞 쪽)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6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r><td colspan="2">상 호(명 칭)</td><td></td><td>면 적</td><td></td></tr></table></td></tr>
</table>

[별지 제5호서식]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④상 호(명 칭)				

[별지 제5호서식]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남, 여)
	③주 소	(전화)		
④상 호(명 칭)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④상 호(명 칭)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남, 여)
	③주 소	(전화 :)		
④상 호(명 칭)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전화 :)		
수탁인	④성명(대표자)		⑤생 년 월 일	
	⑥주 소	(전화 :)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 년 월 일	(남, 여)
	③주 소	(전화 :)		
수탁인	④성명(대표자)		⑤생 년 월 일	
	⑥주 소	(전화 :)		

[별지 제8호서식]

[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8호서식]

[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카지노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카지노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table>
<tr><td></td><td>[별지 제10호서식]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신고 – 20일
• 변경 신고 – 15일</td></tr><tr><td rowspan="2">신고인</td><td>성 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td><td></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제10호서식]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신고 – 20일
• 변경 신고 – 15일</td></tr><tr><td rowspan="2">신고인</td><td>성 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제11호서식]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1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제11호서식]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1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제13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15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제13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able><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 15일</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0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5조(시설 사용허가 신청) [별지 제8호서식], 제16조(시설 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별지 제11호서식] , 제23조(복제신청) [별지 제13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5조 [별지 제8호서식], 제16조 [별지 제11호서식] , 제23조 [별지 제13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제안</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8호서식]
해녀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일련번호 :
신청인 | 성 명 | | 전화번호 |
주 소 |
[별지 제8호서식]
해녀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일련번호 :
신청인 | 성 명 | (남, 여) | 전화번호 |
주 소 |</td></tr>
<tr><td>[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청인 | 주 소 | | | | |
소속단체명 | | 연락전화 | 직 장 | |
자 택 | |
대표자 성 명 | | 생년월일 | |
[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청인 | 주 소 | | | | |
소속단체명 | | 연락전화 | 직 장 | |
자 택 | |
대표자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td></tr>
<tr><td>[별지 제13호서식]
박물관자료 복제·열람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성 명 (기관명) | | E-mail |
주 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박물관자료 복제·열람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성 명 (기관명) | (남, 여) | E-mail |
주 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사후관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는 해녀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제7조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 생산을 구축해야함.
· 제7조 제3항에 ‘다만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에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사후관리)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매년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td><td>제7조(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매년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u>다만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반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 제5조의 2에서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우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적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
- 문화환경 취약지역에서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특성을 포함한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따라서 제5조의 2에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5조의 2에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별지 제1호 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별지서식에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d colspan="3">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변경)신청서</td><td>처리기간
40일</td></tr><tr><td rowspan="3">신 청 인</td><td>법인또는기관명</td><td colspan="3"></td></tr><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d colspan="3">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변경)신청서</td><td>처리기간
40일</td></tr><tr><td rowspan="3">신 청 인</td><td>법인또는기관명</td><td colspan="3"></td></tr><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별지서식에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1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7조(문화지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제37조에서는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지표는 지역의 문화 현황과 정책, 도민들의 문화 수요의 흐름·동향 등에 남성과 여성이 처한 문화적인 변화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로 분리해서 생산되어야 함.
– 따라서 제37조 제1항에 ‘다만 문화지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문화지표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7조(문화지표조사)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37조(문화지표조사)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지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문화지표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1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 등의 인증 등) [별지 제1호의 서식] 및 [별지 제2호의 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
–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8조 [별지 제1호의 서식],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별지서식에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 별지 제1호의 서식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기간 20일</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신청자
(기관·단체)
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td><td>전화번호
팩스번호</td><td></td></tr>
</table></td><td>■ 별지 제1호의 서식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기간 20일</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신청자
(기관·단체)
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주소</td><td></td><td>전화번호
팩스번호</td><td></td></tr>
</table></td></tr>
<tr><td>■ 별지 제2호의 서식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기간 20일</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신청자
(기관·단체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td><td>전화번호
팩스번호</td><td></td></tr>
</table></td><td>■ 별지 제2호의 서식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기간 20일</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신청자
(기관·단체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주소</td><td></td><td>전화번호
팩스번호</td><td></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별지서식에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1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의2(만족도 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는 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5조의 2에서 해설사 활동에 대한 탐방객 만족도 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인적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
–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설 확대 및 수요 증대에 따른 해설사 활동의 질적 개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탐방객 만족도 조사 시, 수요자의 성별, 연령별, 대상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5조의 2에 ‘다만 만족도 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해설사 활동에 대한 탐방객만족도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의2(만족도 조사)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해설사 활동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활용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td><td>제5조의2(만족도 조사)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해설사 활동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활용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만족도 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해설사 활동에 대한 탐방객만족도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의2(시설 사용 신청 등) [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7조의2 [별지 제1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별지서식에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시설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제7조의2제1항 관련)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
(대표자)</td><td></td><td>단체명</td><td></td></tr>
<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시설명</td><td colspan="4"></td></tr>
</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시설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제7조의2제1항 관련)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
(대표자)</td><td>(남, 여)</td><td>단체명</td><td></td></tr>
<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시설명</td><td colspan="4"></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별지서식에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17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진료기관의 지정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청) [별지 제3호서식],
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 [별지 제4호서식], 제6조(해녀증의 재발급)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진료비의 청구) [별지 제8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이에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별지 제7호서식], 제7조 [별지 제8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4">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해녀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
진료기관명 | | 종 별 |
소 재 지 |
진 료 과 목 |
개설신고일자 |
개설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연락처 |</td><td>[별지 제1호서식]
해녀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
진료기관명 | | 종 별 |
소 재 지 |
진 료 과 목 |
개설신고일자 |
개설자(대표자) 주 소 (남, 여)
성 명 | 연락처 |</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해녀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
진료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지정 일자</td><td>[별지 제3호서식]
해녀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
진료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남, 여)
지정 일자</td></tr>
<tr><td>[별지 제4호서식]
해녀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 소속 수협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보험자
해녀 구분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해녀경력 | 년</td><td>[별지 제4호서식]
해녀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 소속 수협
성 명 |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피보험자
해녀 구분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해녀경력 | 년</td></tr>
</table>

<table>
<tr><td></td><td>[별지 제7호서식]
<table><tr><td colspan="5">해녀증 재발급 신청서</td></tr><tr><td rowspan="5">신청인</td><td>소속 수협</td><td colspan="3"></td></tr><tr><td>성 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피보험자</td><td colspan="3"></td></tr><tr><td>해녀구분</td><td colspan="3">1. 해녀 ( )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으로 도외 거주자가 아닌 사람 ( )
3. 위 1. 또는 2.에 상응하는 남자 ( )</td></tr></table></td><td>[별지 제7호서식]
<table><tr><td colspan="4">해녀증 재발급 신청서</td></tr><tr><td rowspan="5">신청인</td><td>소속 수협</td><td colspan="2"></td></tr><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피보험자</td><td colspan="3"></td></tr><tr><td>해녀구분</td><td colspan="3">1. 해녀 ( )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으로 도외 거주자가 아닌 사람 ( )
3. 위 1. 또는 2.에 상응하는 남자 ( )</td></tr></table></td></tr>
<tr><td></td><td>[별지 제8호서식]
<table><tr><td colspan="5">진 료 비 청 구 서(○○년도 ○월분)</td></tr><tr><td rowspan="4">진료기관</td><td>상 호</td><td></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td></tr><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tr><td>대 표 자</td><td colspan="3"></td></tr><tr><td>전화번호</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8호서식]
<table><tr><td colspan="4">진 료 비 청 구 서(○○년도 ○월분)</td></tr><tr><td rowspan="4">진료기관</td><td>상 호</td><td></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td></tr><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tr><td>대 표 자</td><td colspan="3">(남, 여)</td></tr><tr><td>전화번호</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18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 제5조에서는 해녀증의 발급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발급대장 정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적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
① ~ ⑥ (생략)
⑦ 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녀증을 회수하고 해녀증 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td><td>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녀증을 회수하고 해녀증 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및 발급대장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6. 보건 (21개)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보건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주로 시행계획 수립이나 사업 등에 있어서 성별 또는 연령 고려와 관련하여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시행계획에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에 따라 자살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모지환·배진희, 2011)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5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광역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명시하면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는 성별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전진아, 2014)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해서 성별을 고려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서는 센터가 하는 사업을 명시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만성질환 유병률이나 정신건강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표정선, 2009)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해서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흡연·음주·약물 경험, 건강상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박민희·전해옥, 2013) 고려하고 있지 못해서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공중위생 영업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되고 있어서 공중위생영업 중 하나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있어서는 불법촬영 등에 대한 예방 지원 사업이 매우 필요할 것임. 이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에 공중위생영업 지원에 불법촬영 등 예방 지원 사업도 추가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되고 있음. 따라서 공중위생영업 중 하나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있어서는 불법촬영 등에 대한 예방 지원 사업이 매우 필요할 것임.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에 있어서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교육에 관해서만 한정하고 있어서, 불법촬영 등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필요함.
또한 인천광역시는 2020년 7월에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강원도도 2021년 9월에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공중위생영업 지원에 불법촬영 등 예방 지원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td><td>제1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교육과 불법촬영 등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공중위생영업 지원에 불법촬영 등 예방 지원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모지환·배진희(2011)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자살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즉 여성 성인은 스트레스, 우울, 자살태도, 경제상태, 건강상태가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성인은 스트레스, 우울, 동거형태가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연령대별에 따라서 자살에 대한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다고 시사하였음(출처: 모지환·배진희(2011). “자살행동 영향 요인 : 성별, 연령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했을 때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고려뿐만 아니라 성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즉 ‘성별’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또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제2조(기본시책)에 자살예방시책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자살예방시행계획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성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2. (생략)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③ (생략)</td><td>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u>및 성별</u>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자살예방시행계획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성별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 즉 여성은 우울을 포함한 불안장애나 기분장애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남성은 알코올·약물중독 및 반사회성 인격장애에서 여성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음. 또한 우울에 있어서는 여성이 우울증상경험률과 우울장애유병률에서 남성보다 약2배 이상 높게 보고되었으며, 우울 수준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출처: 전진아(2014). “한국 성인의 성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 우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10(1)).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했을 때 정신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있어서 생애주기별만 고려하고 성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에서는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4조(지원계획 등의 수립)에서도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 성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생략)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 7. (생략)</td><td>제5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생애주기별 <u>및 성별</u>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 7.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 성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만성질환 유병률에 있어서 여성은 고콜레스테롤혈증, 빈혈, 관절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서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비만,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당뇨증에서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또한 우울증상 경험률 및 자살생각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출처: 표정선(2009). “국민건강통계에 나타난 성별차이와 여성 내 차이 정신건강, 의료이용,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10(1)). 또한 연령에 따라서 건강상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할 때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2. ~ 7. (생략)</td><td>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u>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u>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2. ~ 7.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박민희·전해옥(2013)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 경험은 남학생이 32.9%, 여학생이 18.4%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 및 약물 경험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비만율은 남학생이 11.9%, 여학생은 4.4%로 나타나 남학생이 더 높았음.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평상시 스트레스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비율은 남학생이 3.9%, 여학생이 1.9%였으며,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도 남학생이 13.6%, 여학생이 9.6%로 나타나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음. 즉 성별에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출처: 박민희·전해옥(2013). “성별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건강행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따라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에서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시행시 성별에 대한 고려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수행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4.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5. 청소년 구강관리 관련 사업
6. 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d>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성별 특성을 고려하여</u> 시행할 수 있다.
1. ~ 7. (생략)</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수행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보건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그리고 위원회는 아니지만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즉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지니며, 중요한 의사결정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제안하였음.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td><td>1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2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⑩ (생략)</td><td>1안)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⑪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⑪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에서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이사회 구성시 성별 고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자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td><td>제5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의3</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의3(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4조의3(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의3(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2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약사심의위원회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약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조직)
① ~ ③ (생략)
<u><신설></u></td><td>1안)
제3조(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2안)
제3조(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3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4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보건 분야 자치법규에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1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td><td>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또는 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td><td>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또는 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td><td>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u>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실태조사 등)
① (생략)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신설></td><td>제3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2, 5, 6</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5">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
(한 자)</td><td></td></tr><tr><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
(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
(한 자)</td><td></td></tr><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
(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table><tr><td rowspan="3">추천대상자</td><td>성 명
(한 자)</td><td></td></tr><tr><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
(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table><tr><td rowspan="3">추천대상자</td><td>성 명
(한 자)</td><td></td></tr><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
(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별지 5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table><tr><th>발행
번호</th><th>소 속</th><th>성 명</th><th>생년월일
(전화번호)</th></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5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table><tr><th>발행
번호</th><th>소 속</th><th>성 명</th><th>생년월일
(전화번호)</th></tr><tr><td></td><td></td><td></td><td>(남, 여)</td></tr></table></td></tr>
<tr><td>별지 6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단독 직무수행 승인서</td></tr><tr><td rowspan="3">금연지도원</td><td>① 소속
(단체명)</td><td></td><td>② 성명</td><td></td></tr><tr><td>③ 생년
월일</td><td></td><td>④ 전화
번호</td><td></td></tr><tr><td>⑤ 주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6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단독 직무수행 승인서</td></tr><tr><td rowspan="3">금연지도원</td><td>① 소속
(단체명)</td><td></td><td>② 성명</td><td></td></tr><tr><td>③ 생년
월일</td><td>(남, 여)</td><td>④ 전화
번호</td><td></td></tr><tr><td>⑤ 주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u>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서식. 방문방역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자</td><td>세대주 성명</td><td></td><td>주소</td><td></td></tr><tr><td>생년월일</td><td></td><td>연락처</td><td></td></tr><tr><td>주택 형태</td><td colspan="3">☐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기타 : ㎡)</td></tr></table></td><td>별지 서식. 방문방역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자</td><td>세대주 성명</td><td></td><td>주소</td><td></td></tr><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d>연락처</td><td></td></tr><tr><td>주택 형태</td><td colspan="3">☐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기타 : ㎡)</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 사회복지 (75개)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의 검토 결과

○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자칫하면 성별 고정관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임. 즉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효행에 대하여 여성은 조신하게 부모님에게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봉양해야하며, 며느리로서 시댁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음. 따라서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 이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 성별 고정관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조례에 위의 내용이 신설되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서는 조례명 및 조례 전체에서 출산 또는 저출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산 또는 저출산 용어를 출생 또는 저출생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해당 조례 제21조에서 조문명이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로 되어 있어 여성에게만 출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져 조문 내용을 반영한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 보호’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당 조례 제4조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자칫하면 성별 고정관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임. 즉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효행에 대하여 여성은 조신하게 부모님에게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봉양해야하며, 며느리로서 시댁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음.
따라서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 이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 성별 고정관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신설></td><td>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효행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함에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조례명 및 조례 전체	
분류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문제점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저출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출산도 출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의견	조례명 및 조례 내용에 대하여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조례명 및 조례 전체>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조례 내용 : 저출산	<조례명 및 조례 전체>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출생영향평가 및 출생장려지원 조례」 로 변경 조례 내용 : (저)출산 -> (저)출생 으로 용어 변경 ※ 다만 제1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5조에서 언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에서 언급된 출산 용어는 출생으로 변경하지 않음
개선과제	조례명 및 조례 내용에 대하여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1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1조는 제목을‘여성에 대한 출산장려’로 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례 제21조의 내용은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으며,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라는 제목은 여성에게만 출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져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해당 조례 제21조의 제목을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를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 보호’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해당 조례 제21조 제목을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 보호’로 변경</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1조(여성에 대한 출산장려)
① 도지사와 도민은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u>21조(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 보호)</u>
① ~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해당 조례 제21조 제목을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 보호’로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크게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설치 및 운영, 업무 및 사업, 정책 및 책무, 기금, 성별영향평가 관련으로 나타났음.

○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른 필요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15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4조에서는 회관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련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에서의 업무 및 사업이나 장년층 생애재설계와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하여 성별에 대한 다른 필요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제3조(업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7조(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안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4조에서 명시된 장애인 폭력예방 교육 실시할 때 여성 장애인, 특히 여성 지적장애인은 성폭력 등 폭력 피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성별 특성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음. 이와 더불어 해당 조례 제10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도 같은 이유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하였음.

○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련 도지사의 책무나 정책 시행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장수노인 복지시책을 개발, 발굴하거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 경로당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시행,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관련 도지사의 책무, 사회복지시책의 개발·시행,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지원 시행에 있어서의 도지사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시책 수립 등에 있어서의 도지사의 책무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다른 필요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조(기본이념),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경로

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조(기본이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임),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등을 시행하도록 제안하였음.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음. 황남희 외(2016)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였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좀 더 많았으며,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필요도 다르게 나타났음. 즉 남성노인은 식사서비스(73.9%), 여성노인은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63.9%)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은 식사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노인은 황혼육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에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출처: 황남희·정경희·오영희·김경래·박신아(2016).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이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에서 이루어진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경우 걱정 1순위가 여성은 34.1%가 ‘노후대책’이었으며, 남성은 51.2%가 ‘건강’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복지 욕구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출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길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빈곤이나, 고독, 건강 문제 등을 겪음(출처: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이와 같은 이유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성별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필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다른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에는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td><td>제1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업무)</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7)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사례 중 여성노인이 74.9%(3,460명), 남성노인은 25.1%(1,162명)으로 여성노인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황은 학대 유형별 피해 노인의 성별에도 반영되고 있음. 즉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있어서 여성노인의 피해가 거의 80% 정도에 가까웠으며, 남성노인은 20% 정도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봤을 때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임을 알 수 있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7).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따라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노인은 학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한 노인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업무)
① 전문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략)</td><td>제4조(업무)
① 전문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성별을 고려하여</u> 수행한다.
1. ~ 8.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업무)</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황남희 외(2016)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였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좀 더 많았으며,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필요도 다르게 나타났음. 즉 남성노인은 식사서비스(73.9%), 여성노인은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63.9%)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은 식사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노인은 황혼육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에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출처: 황남희·정경희·오영희·김경래·박신아(2016).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이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에서 이루어진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경우 걱정 1순위가 여성은 34.1%가 ‘노후대책’이었으며, 남성은 51.2%가 ‘건강’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복지 욕구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출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길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빈곤이나, 고독, 건강 문제 등을 겪음(출처: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이와 같은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사업, 상담사업, 건강운동사업 등은 성별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성별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함. 이에 노인복지회관의 업무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노인복지회관의 업무에 있어서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업무)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가.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나.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선택사업으로는 지역이나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이 가능한 사업
가.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나.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및 교통안전봉사사업
다.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d>제3조(업무)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성별을 고려하여</u> 수행한다.
1. ~ 2.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노인복지회관의 업무에 있어서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7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4조(시설)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황남희 외(2016)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였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좀 더 많았으며,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필요도 다르게 나타났음. 즉 남성노인은 식사서비스(73.9%), 여성노인은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63.9%)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은 식사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노인은 황혼육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에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출처: 황남희·정경희·오영희·김경래·박신아(2016).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이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에서 이루어진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경우 걱정 1순위가 여성은 34.1%가 ‘노후대책’이었으며, 남성은 51.2%가 ‘건강’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복지 욕구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출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길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빈곤이나, 고독, 건강 문제 등을 겪음(출처: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이와 같은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사업, 상담사업, 건강운동사업 등은 성별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에 성별을 고려한 사업이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도 확보되어야 함. 즉 휴게실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필요 시설에서 성별에 따른 다른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이에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설치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설치에 있어서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강당 및 회의실 3. 상담실 및 건강관리실 4. 식당 및 휴게실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u>성별을 고려하여</u> 설치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설치에 있어서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	

8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3조(도지사의 책무)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황남희 외(2016)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였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좀 더 많았으며,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필요도 다르게 나타났음. 즉 남성노인은 식사서비스(73.9%), 여성노인은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63.9%)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은 식사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노인은 황혼육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에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출처: 황남희·정경희·오영희·김경래·박신아(2016).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이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에서 이루어진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경우 걱정 1순위가 여성은 34.1%가 ‘노후대책’이었으며, 남성은 51.2%가 ‘건강’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복지 욕구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출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길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빈곤이나, 고독, 건강 문제 등을 겪음(출처: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장수노인의 성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복지시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하여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장수노인 복지시책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수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장수노인 복지시책을 개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수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장수노인 복지시책을 개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다만 장수노인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개선과제	장수노인 복지시책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기본이념)</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노인복지 정책 등을 수립할 때 노인의 성별에 따른 다른 차이를 반영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길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빈곤이나, 고독, 건강 문제 등을 겪음(출처: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따라서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성별을 고려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고려한 노인복지정책 시책 수립·추진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기본이념)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td><td>제2조(기본이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과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시책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황남희 외(2016)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였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좀 더 많았으며,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필요도 다르게 나타났음. 즉 남성노인은 식사서비스(73.9%), 여성노인은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63.9%)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은 식사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노인은 황혼육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에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출처: 황남희·정경희·오영희·김경래·박신아(2016).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이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에서 이루어진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경우 걱정 1순위가 여성은 34.1%가 ‘노후대책’이었으며, 남성은 51.2%가 ‘건강’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복지 욕구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출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길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빈곤이나, 고독, 건강 문제 등을 겪음(출처: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따라서 노인복지 시책 등을 마련할 때 노인의 성별에 따른 다른 차이를 반영하도록 노인복지 시책 마련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시책 마련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u>성별을 고려하여 마련하고</u>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시책 마련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지원 사업)</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장년층은 남성장년층에 비하여 가사노동을 더 부담하고, 취업시장에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경향이 있음. 여전히 여성장년층은 노동시장에 재취업하고자 할 때 남성에 비하여 더 성차별을 받음.
이처럼 장년층은 성별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서는 이와 같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함.
참고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을 할 시에는 장년층의 “성별, 경제상태, 취업경력, 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시책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사업
4.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d>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지원 사업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도지사의 책무)</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황남희 외(2016)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였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좀 더 많았으며,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필요도 다르게 나타났음. 즉 남성노인은 식사서비스(73.9%), 여성노인은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63.9%)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은 식사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노인은 황혼육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에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출처: 황남희·정경희·오영희·김경래·박신아(2016).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이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에서 이루어진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경우 걱정 1순위가 여성은 34.1%가 ‘노후대책’이었으며, 남성은 51.2%가 ‘건강’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복지 욕구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출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길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빈곤이나, 고독, 건강 문제 등을 겪음(출처: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따라서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및 복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시책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범위)에는 예산 지원 범위를 명시하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시책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략)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td><td>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시책에 있어서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3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5조(사업)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황남희 외(2016)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였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좀 더 많았으며,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필요도 다르게 나타났음. 즉 남성노인은 식사서비스(73.9%), 여성노인은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63.9%)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은 식사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노인은 황혼육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에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출처: 황남희·정경희·오영희·김경래·박신아(2016).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이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에서 이루어진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경우 걱정 1순위가 여성은 34.1%가 ‘노후대책’이었으며, 남성은 51.2%가 ‘건강’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복지 욕구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출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길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빈곤이나, 고독, 건강 문제 등을 겪음(출처: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따라서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상담, 일자리 사회참여사업, 건강증진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후생복지사업 등은 성별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성별에 따라 원하는 교육이나 일자리, 건강 등의 욕구 및 필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이에 노인복지관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노인복지관 이용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5조(사업)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5조(사업)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성별을 고려하여</u> 수행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노인복지관 이용에 있어서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	

14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2조(도지사의 책무)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한애경 외(2018) 연구에 의하면 2017기준으로 충북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비율은 여성은 64.0%(410명), 남성은 36.0%(231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의 자활사업 성별 참여자 비율을 보더라도 여성은 54.7%, 남성은 45.3%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자활 참여자 중 여성은 연령이 높은 편이고 자녀나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있었으며, 남성은 알콜의존증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높아 성별에 따라 다른 상황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활사업에 여성 참여율이 높아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구성은 요리, 식품 및 가공, 영농 등과 같은 여성친화적 일자리로 간주되었던 일자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 참여율도 적지 않게 높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한 자활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출처: 한애경·최은희·이해진(2018). 「충북 자활근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충북여성재단) 또한 박정호(2010) 연구에 의하면 자활사업의 성과에 있어서 참여자의 연령, 성별 등의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을 이러한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출처: 박정호(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활사업 지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에 있어서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개선의견	자활사업 지원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u>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u>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u>확보하여야 한다.</u>
개선과제	자활사업 지원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조례 개정	

15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2조(책무)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신승배·손태주(2020) 연구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은 농업 활동 외에도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정책 필요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연령별에 따라서 지원 정책 수요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30대 여성농업인은 소득활동에 대한 지원 외에도 보육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으며, 40대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과 더불어 자녀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 욕구가 강했음. 50대 여성농업인은 농업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욕구가 높아서 30, 40대 여성농업인에 비하여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정책 욕구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가 높았음(출처: 신승배·손태주(2020).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방안 - 세대 간 특성을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농어촌주민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개선의견	도지사가 농어촌주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함에 있어서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촌주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촌주민의 <u>성별 및 연령별</u>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선과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에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	

1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기본이념)</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김수정(2015)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아동 및 노동 등 돌봄과 관련하여 정부 책임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 지출과 관련해서는 남성은 노인, 장애인, 빈곤층 지원에 대한 확대 요구가 더 높았고, 여성은 고용 및 주거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확대 요구가 더 높았음.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 증세에 대하여 더 부정적이었음(출처: 김수정(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성별 격차”. 「여성학연구」. 25(1)). 즉 사회복지에 대한 성별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음.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혜 대상이 되는 노인, 장애인, 여성, 노숙인, 아동 등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른 특징 및 다른 상황,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 개발·시행에 있어서 수요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는 사회복지시책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의 고려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기본이념에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기본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실정에 부합하고 특색있는 사회복지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 ③ (생략)</td><td>제2조(기본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실정에 부합하고 <u>수요자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u> 특색있는 사회복지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기본이념에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도지사의 책임)</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김수정(2015)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아동 및 노동 등 돌봄과 관련하여 정부 책임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 지출과 관련해서는 남성은 노인, 장애인, 빈곤층 지원에 대한 확대 요구가 더 높았고, 여성은 고용 및 주거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확대 요구가 더 높았음.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 증세에 대하여 더 부정적이었음(출처: 김수정(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성별 격차”. 「여성학연구」. 25(1).). 즉 사회복지에 대한 성별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음.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혜 대상이 되는 노인, 장애인, 여성, 노숙인, 아동 등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른 특징 및 다른 상황,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수요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는 사회복지정책의 발굴·지원에 있어서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의 고려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도지사의 책무에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도지사의 책임)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td><td>제4조(도지사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도민의 요구와 성별 및 연령이 고려된 사회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도지사의 책무에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도지사의 책무)</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노숙인은 73.5.%(8,335명)로 여성노숙인 25.8%(2,929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음.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40대 미만에 비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우 나쁘거나 나쁜 편이 점차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높은 노숙인의 경우 연령이 낮은 노숙인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뿐만 아니라 대상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노숙인(34.2%)에 비하여 여성노숙인(42.7%)이 더 높았으며, 70세 이상 노숙인(53.3%)이 40세 미만 노숙인(12.2%)에 비하여 더 높았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여성노숙인(47.6%)이 남성노숙인(22.9%)에 비하여 더 높았으며, 40~49세 노숙인(34.0%)이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 노숙인(14.3%)이 가장 낮았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여성노숙인(55.4%)이 남성노숙인(27.3%) 보다 더 높았으며, 40세 미만 노숙인(42.1%)이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 노숙인(28.0%)이 가장 낮았음(출처: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면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 등을 지원할 때에는 성별에 따른 다른 상황과 욕구,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항에서는 도지사 또는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도지사의 책무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도지사의 책무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1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에서 이루어진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경우 걱정 1순위가 여성은 34.1%가 ‘노후대책’이었으며, 남성은 51.2%가 ‘건강’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복지 욕구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출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길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빈곤이나, 고독, 건강 문제 등을 겪음(출처: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또한 김학실·송수진(2008)에 의하면 중증여성장애인은 “육아나 자녀학습, 학부모활동 가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장장애인은 운동 및 식요법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보조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은 주돌봄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조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출처: 김학실·송수진(2008). 「2008 충청북도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장애인 생활체육, 농업경영컨설팅, 장애인정책 환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이러한 조사 및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성별, 연령, 장애유형에 따른 다른 상황과 욕구,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연령,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도지사의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 ③ (생략)</td><td>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성별, 연령, 장애유형을 고려하여</u> 시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도지사의 책무)</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이재영(2018)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인터넷 게임 중독과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예방하고 사회적 대책을 마련 시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음(출처: 이재영(2018).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 융복합적 요인: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10).).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대 학교 밖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 및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어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의 고려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td><td>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며 성별을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성별 특성의 고려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 장애인은 비장애 여성에 비하여 장애인이란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며, 그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은 신체장애인에 비하여 더 성폭력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출처: 문현주(2015).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재활복지」. 19(3)). 이렇듯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며, 성폭력 피해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성별에 따라 폭력 유형 등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생애주기 뿐만 아니라 성별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서는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에 장애인의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시의 책무)에서는 “시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성별’을 고려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은 장애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① (생략)
②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은 장애유형과 생애주기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 ④ (생략)</td><td>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은 장애유형과 생애주기, 성별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은 장애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 장애인은 비장애 여성에 비하여 장애인이란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며, 그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은 신체장애인에 비하여 더 성폭력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문현주(2015).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재활복지」. 19(3)). 이렇듯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며, 성폭력 피해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성별에 따라 폭력 유형 등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시의 책무)에서는 “시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성별’을 고려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은 장애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td><td>제10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별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은 장애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황옥경·한유미·김정화(2018)에서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놀이·여가 대상에서 아버지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여가 장소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음. 즉 카페나 PC방, 극장, 쇼핑몰은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많이 이용했으며, 카페나 노래방은 여자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더 많이 이용한 반면 운동장이나 PC방, 당구장은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하여 더 많이 이용했음(출처: 황옥경·한유미·김정화(2018).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놀이·여가 실태에 대한 연구 -연령별, 지역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5)).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놀이 선택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남학생들은 경쟁놀이를 선호하고, 여학생들은 모의놀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경쟁놀이, 운놀이, 현기놀이를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출처: 최지혜·정수연·허준·김경미(2009). “학령기 아동의 놀이 가치와 놀이선택과의 상관관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2); 최범규·이녹범(2004).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놀이 성향 - R. Caillois의 놀이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4(1)).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을 실시할 때는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에 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도록 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이・여가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3. 놀이・여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사업
4. 놀이・여가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보육, 돌봄, 청소년 문화 활동, 아동친화도시 관련 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한 기반 조성 사업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td><td>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에 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사회복지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에 위원회 구성 시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에서 정책결정 과정 여성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 그리고 위원회는 아니지만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즉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지니며, 중요한 의사결정 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제안하였음.

2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건축정책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는 제3조(건축정책위원회)에 이러한 성별 균형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td><td>1안)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위원회의 설치)</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이러한 성별 균형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td><td>1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에 이러한 성별 균형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td><td>1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8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8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18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8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는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2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제3항</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⑫ (생략)</td><td>1안)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⑬ (현행과 같음)

2안)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⑬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체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8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는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8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제2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위원회 설치)</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는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td><td>1안)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u>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u>이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9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④ ~ ⑤</u>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④ ~ ⑤</u>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사회공헌장)</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는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사회공헌장)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5조(사회공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사회공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사회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d>제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u>하여야 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전문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 조례 」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전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전문위원회)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11조(전문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④ ~ ⑤</u>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전문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④ ~ ⑤</u>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성별 균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성별 균형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td><td>1안)
제1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2안)
제1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4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원회 구성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가지나 해당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생략)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td><td>제10조(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4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3조(기금운용심의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는 기금운영심의회 구성에서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심의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심의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42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신설>
② (생략)</td><td>1안)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43

시행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10조(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 등)	
분류	③ 성별 균형 참여	
문제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개선의견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시행규칙	개정안
	제10조(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⑨ (생략)	1안) 제10조(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	

4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는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td><td>1안)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45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9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분류	③ 성별 균형 참여	
문제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는 김만덕상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개선의견	김만덕상심사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9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김만덕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안) 제9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① 김만덕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9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① 김만덕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을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선과제	김만덕상심사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의 규정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4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에서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이사회 구성시 성별 고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자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이사회 구성)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td><td>제5조(이사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자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의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⑬ (생략)</td><td>1안)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⑭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⑭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의2</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⑤</u>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⑤</u>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6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⑧ (생략)</td><td>1안)
제1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1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자문단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자문단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 ⑪ (생략)</td><td>1안)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⑤ ~ ⑫</u>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⑤ ~ ⑫</u>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무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무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55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포함한 6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td><td>1안)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포함한 6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2안)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포함한 6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 분야 자치법규에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5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년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td><td>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년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다만 운영실태 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실태파악)</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실태 파악에 있어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실태파악)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들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실태를 매년 파악해야 한다.</td><td>제10조(실태파악)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들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실태를 매년 파악해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에 있어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조사실시)</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조사실시)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td><td>제6조(조사실시)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복지지원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복지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생략)</td><td>제7조(복지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다만 생활실태를 점검할 때는 성별을 조사항목에 포함
4.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td><td>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실태조사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실태조사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td><td>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실태조사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또는 퇴소 아동,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또는 퇴소 아동,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각종 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인권 보장 등의 추진)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td><td>제8조(인권 보장 등의 추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각종 현황 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각종 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td><td>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td><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td><td>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시켜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해당 조례에서는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남성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여성폭력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태조사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연령·혼인상태·취업상태 등
2. ~ 3. (생략)
② (생략)</td><td>제5조(여성폭력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태조사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연령·<u>성별</u>·혼인상태·취업상태 등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입양가정의 양육상태, 생활환경, 입양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상태 등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td><td>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입양가정의 양육상태, 생활환경, 입양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상태 등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3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2</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별지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6">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
월일</td><td colspan="2"></td></tr><tr><td>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td></tr><tr><td>거래
은행</td><td></td><td>계 좌
번 호</td><td colspan="2"></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6">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
월일</td><td colspan="2">(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td></tr><tr><td>거래
은행</td><td></td><td>계 좌
번 호</td><td colspan="2"></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별지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7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2</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별지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td></tr><tr><td rowspan="2">위반자</td><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3"></td></tr></table>
별지 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table><tr><td colspan="3">인 적 사 항</td></tr><tr><td>주 소</td><td>성 명</td><td>생년월일</td></tr><tr><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td></tr><tr><td rowspan="2">위반자</td><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 (남, 여)</td></tr><tr><td>주소</td><td colspan="3"></td></tr></table>
별지 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table><tr><td colspan="3">인 적 사 항</td></tr><tr><td>주 소</td><td>성 명</td><td>생년월일</td></tr><tr><td></td><td></td><td>(남, 여)</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별지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75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4</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별지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4호 서식. 장학금지급대장
<table>
<tr><td rowspan="2">월일</td><td colspan="3">장학금 지원 대상자</td><td rowspan="2">지급
내용</td><td rowspan="2">비고</td></tr>
<tr><td>학교 및
학년,
반</td><td>성명</td><td>지급액
(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별지 4호 서식. 장학금지급대장
<table>
<tr><td rowspan="2">월일</td><td colspan="4">장학금 지원 대상자</td><td rowspan="2">지급
내용</td><td rowspan="2">비고</td></tr>
<tr><td>학교 및
학년,
반</td><td>성명</td><td>성별</td><td>지급액
(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별지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8. 산업 · 통상 · 중소기업 (11개)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1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1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3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3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1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1조(위원회 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1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2. (생략)
<신설></td><td>1안)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협의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의 참여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이 배제되었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 참여를 규정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협의회 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td><td>1안)
제6조(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2안)
제6조(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6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6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td><td>1안)
제1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1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위원 위촉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위원 위촉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td><td>1안)
제9조(위원 위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위원 위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td><td>1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2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기업 ·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구성)
① ~ ④ (생략)
<신설></td><td>1안)
제9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9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물류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민간유치위원회의 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민자유치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거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민간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4조(민간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민간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일반공공행정 (86개)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의 검토 결과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열거하면서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를 명시하였음. 하지만 '여인상'이라는 표현은 전통적 여성성을 강조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여성'으로 대체되어야 함. 따라서 조례의 내용 중 '새마을 여인상'을 '새마을 여성봉사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바르기살기운동조직의 사업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효자효부시상식'을 명시하였음. 그러나 '효자'는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 '효부'는 '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를 말하므로 남성 중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효도 시상'이나 '효도상'으로 대체하여 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호적등본이란 용어의 사용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도 본적, 원적, 가본적, 호적과 같은 용어의 사용이 있음. 그러나 2005년 민법의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이 「호적법」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고, 호적, 본적, 원적, 가본적의 용어는 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용어로 모두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안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저출산'이란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음'이란 의미로 출산의 책임이 가임기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음. 이에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⑤ 성평등 언어</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본 조례의 목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중 ‘새마을 여인상’ 시상 행사가 있음. 새마을 여인상은 1990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제주도새마을부녀회는 2016년부터 새마을 여인상의 명칭을 ‘제주도새마을부녀봉사상’으로 변경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여인상’이라는 표현은 전통적 여성성을 강조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부녀’라는 표현은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므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여성’으로 대체되어야 함
따라서 조례의 내용 중 ‘새마을 여인상’을 ‘새마을 여성 봉사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하여 “새마을 여인상”을 “새마을 여성 봉사상”으로 대체해야 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 여인상 시상 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훈련 사업”
4. ~ 6. (생략)</td><td>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 <u>여성 봉사상</u> 시상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훈련사업
4. ~ 6.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새마을 여인상”을 “새마을 여성 봉사상”으로 조례 개정</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효자’는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 ‘효부’는 ‘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를 말하므로 남성 중심의 표현임.
‘효자효부시상식’이 효도를 실천한 사람을 시상함으로서 효 문화 확산을 하는 사업이라면, ‘효도 시상’이나 ‘효도상’으로 대체하여 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서 ‘효자효부시상식’을 ‘효도 시상’이나 ‘효도상’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가. ~ 다. (생략)
라. 효자효부시상식, 어르신효도관광 등 효문화 계승사업
마. ~ 바. (생략)
3. ~ 4. (생략)</td><td>제3조(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효도 시상(효도상), 어르신효도관광 등 효문화 계승사업
마. ~ 바.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효자효부시상식’을 ‘효도 시상’이나 ‘효도상’으로 대체하여 성평등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2005년 민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함”. 이후 「호적법」을 대체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여, 기존의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대체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음에도 호적등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제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해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 첨부 서류는 “호적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1부, 치료비산출명세서(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청구서 첨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td><td>[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1부, 치료비산출명세서(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청구서 첨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 첨부 서류는 “호적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제2호 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음에도 호적법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제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해야 함. 호적초본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에서 사용된 호적, 본적, 원적, 가본적의 용어는 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용어로 모두 수정해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가족관계등록법」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2호 서식]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적을 전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td><td>[별지 제2호 서식]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사람은 반드시 변경 전 등록기준지를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변경 전 등록기준지란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변경 전 등록기준지로 정정하고 기재)
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가족관계등록법」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낳음[2]’이라는 의미이며,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음’을 의미함. ‘저출산’ 용어는 출산의 책임이 가임기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인구 정책에서 여성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보거나 객체로 평가하는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어 변경을 통해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출산의 주체인 산모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에게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저출생’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추계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td><td>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추계에 관한 사항
3.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발달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성적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의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시 성별 및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업에 여성장애인의 생리, 임신, 출산 등 모성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향상 사업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내용,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수유시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공무원 당직 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에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응시원서에 성별, 외모, 연령 관련 정보 제출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8%로 남성보다 19.8%p 더 낮으며, 제주도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남성에 비하여 10.6%p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20). 따라서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95%의 비율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무엇보다 전체 피해 장애인 2,960명 중 발달장애인은 2,195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74.2%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따라서 해당 조례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 차별은 성별 및 장애유형별에 따라 피해 양상이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성별 및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도지사는 사업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연화(2019)에 의하면 제주지역 남녀장애인의 취업인구는 여성 20.7%, 남성 46.1%로 남성이 2배 정도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 79.3%, 남성 48.0%로 여성이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취

업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증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28.5%로 중증 여성장애인 5.4%보다 높게 나타나 중증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해당 조례 제3조 제2항의 도지사의 책무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여성은 신체적으로 생리현상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3조부터 제75조에는 모성보호 관련 조항에 생리, 출산, 임신, 육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권·모성권이 지켜지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의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여성장애인의 생리, 임신, 출산 등 모성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향상 사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한 공무원의 모성보호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보건·안전을 도모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편의시설로 보육시설은 포함하고 있으나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공무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인 수유실은 포함하고 있지 못해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수유실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의2에서 공무원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에는 태아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공무원과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는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양육자의 돌봄이 매우 중요하며, 영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 ~ 25)에서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핵심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필수시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례에서 공무원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에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2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 2012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부터 정보 소외계층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의 4개 계층 외에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조례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을 포함한 응시표 및 응시원서 등이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응시원서의 정보는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직무중심채용정책을 채택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차별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정 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 학력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요구 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인사혁신처, 2018). 따라서 해당 규칙 별지서식에서 응시원서 정보에서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별, 외모, 연령과 관련된 정보 제출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8%로 남성보다 19.8%p 더 낮음. 제주도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남성에 비하여 10.6%p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출처: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러한 실정을 보았을 때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14조에서는 ‘여성·장애인·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 제5조에서는 ‘여성·장애인·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해당 조례에서는 제6조에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앞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일자리 창출 사업에 여성 고용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td><td>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u>4.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u>
<u>5.</u>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u>6.</u>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u>7.</u>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상에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제11조</td></tr>
<tr><td>분류</td><td>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2020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95%의 비율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피해 연령은 19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 1,731명(58.5%), 13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는 524명(17.7%), 만13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는 131명(4.5%), 65세 이상 피해자는 56명(1.9%)임. 전체 피해 장애인 2,960명 중 발달장애인은 2,195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74.2%로 압도적으로 높음.

<성폭력 피해자 연령>
(단위 : 명, %)
<table><tr><th colspan="2" rowspan="2">계</th><th colspan="6">피 해 자 연 령</th></tr><tr><th>7세미만</th><th>7-13세미만</th><th>13-19세미만</th><th>19-65세미만</th><th>65세이상</th><th>미상</th></tr><tr><td rowspan="2">전체</td><td>26,031</td><td>262</td><td>1,422</td><td>4,013</td><td>16,560</td><td>380</td><td>3,394</td></tr><tr><td>100%</td><td>1.0</td><td>5.5</td><td>15.4</td><td>63.6</td><td>1.5</td><td>13.0</td></tr><tr><td rowspan="2">장애인</td><td>2,960</td><td>5</td><td>126</td><td>524</td><td>1,731</td><td>56</td><td>518</td></tr><tr><td>100%</td><td>0.2</td><td>4.3</td><td>17.7</td><td>58.5</td><td>1.9</td><td>17.5</td></tr></table>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2021. 7. 14.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47)

<장애인 피해자 장애 유형>
(단위 : 명, %))
<table><tr><th rowspan="2">계</th><th colspan="5">신체 장애</th><th colspan="2">정신 장애</th><th rowspan="2">중복장애</th></tr><tr><th>지체</th><th>뇌병변</th><th>시각</th><th>청각언어</th><th>기타</th><th>발달</th><th>정신</th></tr><tr><td>2,960</td><td>90</td><td>109</td><td>50</td><td>67</td><td>29</td><td>2,195</td><td>340</td><td>80</td></tr><tr><td>100%</td><td>3.0</td><td>3.7</td><td>1.7</td><td>2.3</td><td>1.0</td><td>74.2</td><td>11.5</td><td>2.7</td></tr></table>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2021. 7. 14.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47)

그리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수 교육과 별도로 성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지원 제도 및 법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 및 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과 별도로 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할 것을 제안</td></tr>
</table>

	현행 조례	개정안
조례개정안	제11조(교육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신설>	제11조(교육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선과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차별은 성별 및 장애유형별에 따라 피해 양상이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장애 유형 및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성별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td><td>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u>성별 및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u> 실시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직업은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삶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장애인에게도 직업은 사회적 주체, 경제적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에 불리하고 취약한 실정이며, 특히 여성과 장애의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이연화(2019)에 의하면 제주지역 남녀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성별 취업인구는 여성 20.7%, 남성 46.1%로 남성이 2배 정도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 79.3%, 남성 48.0%로 여성이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7%로 전국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율(23.1%)보다 낮고, 제주지역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52.0%)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증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28.5%로 중증 여성장애인 5.4%보다 높게 나타나 중증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출처 : 이연화(2019).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시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이 절실함. 이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도지사의 책무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사업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td><td>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업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일반적으로 모성권이란 “여성의 임신, 출산으로 파생되는 광범위한 모성보호 정책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상기의 내용과 함께, 장애로 인한 임신, 출산, 육아 수행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지님(출처: 서해정·장명선(2018).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이화젠더법학」 10(2))
여성은 신체적으로 생리현상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3조부터 제75조에는 모성보호 관련 조항에 생리, 출산, 임신, 육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권·모성권이 지켜지기 쉽지 않음.
그리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에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건강권·모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생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접근성 향상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여성장애인의 생리, 임신, 출산 등 모성권 보호를 위한 내용과 이에 따른 의료접근권 향상 사업이 포함되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② (생략)</td><td>제4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여성장애인의 생리, 임신, 출산 등 모성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향상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여성장애인의 생리, 임신, 출산 등 모성권 보호를 위한 내용과 이에 따른 의료접근권 향상 사업을 추가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제도나 시설 운영에 해당함.
임신 중의 공무원이나 출산한 공무원의 모성 보호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보건·안전을 도모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편의시설로 보육시설은 포함하고 있으나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공무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인 수유실은 포함하고 있지 못함.
그리고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에 모유수유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6조에서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에 수유실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보육시설과 함께 수유실을 포함하여 여성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임신·출산 공무원 모성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 운영을 추가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커피자동판매기, 보육시설
2. ~ 4. (생략)
② (생략)</td><td>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커피자동판매기, 보육시설, <u>수유실</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임신·출산 공무원 모성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 운영을 추가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본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함.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파악·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되고 있음. 2012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부터 정보 소외계층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의 4개 계층 외에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음.
제주 지역의 결혼이주자 현황은 2,814명(여성 2,404명, 남성 410명), 북한이탈주민은 321명(여성 248명, 남성 73명)임(출처: 법무부(2020),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결혼이주자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현저히 높음.
또한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2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을 추가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2조(정의) 중 ‘정보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 6. (생략)</td><td>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을 말한다.
5. ~ 6.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2조(정의) 중 ‘정보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을 추가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3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응시원서의 정보는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직무중심채용정책을 채택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차별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정 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 학력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요구 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출처: 인사혁신처(2018). 「공정 채용 가이드북」). 지원자의 인적사항 보호 등 공정성 담보조치로서 응시번호를 사용하여 나이·성별 등을 알 수 없도록 함.
하지만 본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인 응시원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성별, 외모,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요인이 될 수 있음. 공정한 채용과 평정을 위해서 응시원서에 사진 제출 항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응시표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응시번호로를 사용하거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별지 제2호 서식]인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별지 제8호 서식]인 ‘직위공모 응모서’의 주민번호도 차별요인을 배제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번호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차별요인을 배제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별지 서식의 원서와 안내사항 등을 검토하고, 서식별 사진 제출 사항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응시원서 정보에서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별, 외모, 연령과 관련된 정보 제출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d colspan="2">응 시 표
㉓제 회 시험</td><td rowspan="3">㉖ 사 진
반명함판
(3.5㎝×4.5㎝)</td></tr><tr><td>㉔성 명</td><td></td></tr><tr><td>㉕주민등록
번 호</td><td></td></tr><tr><td colspan="3">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td></tr></table>
[별지 제2호 서식]
<table><tr><td>① 성 명
한글
(한문)</td><td>② 생 년 월 일

19 . . .(세)
③ 주민등록번호</td><td>④ 성 별

남 □

여 □</td></tr></table></td><td>[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d colspan="2">응 시 표
㉓제 회 시험</td><td rowspan="3">㉖ 삭제</td></tr><tr><td>㉔성 명</td><td></td></tr><tr><td>㉕생년월일</td><td></td></tr><tr><td colspan="3">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td></tr></table>
[별지 제2호 서식]
<table><tr><td>① 성 명
한글
(한문)</td><td>② 생 년 월 일

19 . . .(세)
③ 삭제</td><td>④ 삭제</td></tr></table></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사진 란) -> 삭제
	[별지 제8호 서식] (사진) (주민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사진 란) -> 삭제 (주민번호 란) -> 삭제
개선과제	응시원서 정보에서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별, 외모, 연령과 관련된 정보 제출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1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2</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는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양육자의 돌봄이 매우 중요하며, 영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 ~ 25)에서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핵심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필수시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에는 태아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공무원이 포함됨. 추가적으로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당직 면제 규정을 삽입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에서는 당직명령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에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추가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의2(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공무원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td><td>제7조의2(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공무원과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에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일반공공행정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제24조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는 의무조항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서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의회의 여성의원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원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해당 조례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출연기관의 이사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즉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이사의 추천에 있어서 성별 균형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지니며, 중요한 의사결정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사의 추천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제안하였음.

○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아니지만 청문주재자나 옴부즈맨과 같이 정책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자들을 구성할 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즉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청문주재자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청문주재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청문주재자를 구성하도록 제안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옴부즈맨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옴부즈맨이란 여론 수렴과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여론 수렴과 의견 제출은 조례 제정 등 주

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의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옴부즈맨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것임.

○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성별 특성 지표를 동시에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열거사항 중에서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입법평가 분석지표에는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인지 정책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1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 제1항</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2020. 10. 14. 일부 개정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내부규정과 조직·인사 평가 시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추천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임·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함. 관련 영에 위촉 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이 명시되지 않아,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요청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도의회에 추천할 것을 요청하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신설>
② (생략)</td><td>1안)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2안)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부터 추천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td></tr>
</table>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도의회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조례 개정	

16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8조 제4항	
분류	③ 성별 균형 참여	
문제점	2013. 4. 10. 개정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의원 1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여성의원 참여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함. 제주도의회의 여성의원은 제9대(2010년)에 5명이었으나 제11대(2018년)에는 8명으로 증가했으며, 여성의원 중 지역구 당선자 비율이 높아짐. 이는 여성의 적극적 정치 참여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의정활동에서 여성의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전·현직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에서는 여성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성 원으로서의 차별, 비례대표로서의 차별, 남성중심 의회 운영에 대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운동가로서 기반을 다진 여성의원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할 뿐 아니라 지역운동으로 전개되어온 활동과제들을 지방의회 활동과 연계하여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음(출처: 오옥만(2019).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성의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여성의원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의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개선의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원을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8조(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도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선과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원을 1명 이상으로 조례 개정	

1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의회운영 전반에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 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과정에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사용함.

<별표>
입법평가 분석지표(제7조 관련)
<table>
<tr><td>평가항목</td><td>세부항목</td><td>분석 및 평가</td><td>결과 및 의견</td></tr>
<tr><td rowspan="2">3. 조례의 공평성</td><td>(3-1)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d></td></tr>
<tr><td>(3-2)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d>(예시) 예산상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td></tr>
<tr><td>5.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td><td>(5-2)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d>(예시)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므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입법평가 분석지표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지,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함. 성별에 따른 차별 조항 여부와 합리적 차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이 중요하며, 입법평가위원회에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포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입법평가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해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 입법평가위원회에 성인지 정책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을 제안함.
-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법령</td><td>개정안</td></tr>
<tr><td>제5조(구성)
① (생략)</td><td>1안)
제5조(구성)</td></tr>
</table>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신설> 4.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삭제 <2018. 2. 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성인지 정책 전문가 5. ~ 6.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성인지 정책 전문가 5. ~ 6.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입법평가위원회에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포함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1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 창안을 심의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주민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주민창안심사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해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주민창안심사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 이내
2.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등 실국장 2인 이내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4인 이내
⑥ ~ ⑨ (생략)</td><td>1안)
제7조(주민창안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주민창안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주민창안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3조(기본원칙)에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을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이 명시됨. 사회적 자본 육성에 모든 계층에 차별이 없도록 심의·자문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1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1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1

<table>
<tr><td>조례명</td><td>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제7조</td></tr>
<tr><td>분류</td><td>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삶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시책이 수립되어야 함. 제주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은 321명이며, 그 중 여성은 248명임(2020년 3월말 거주자 기준). 전국 현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며, 제주지역도 여성 비율이 77%로 상당히 높음.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해야 함.

지역별 거주현황표 ('20. 3월말 거주자 기준)
(단위 : 명)
<table>
<tr><td>지역</td><td>서울</td><td>경기</td><td>인천</td><td>부산</td><td>경북</td><td>경남</td><td>대구</td><td>충북</td><td>충남·
세종</td></tr>
<tr><td>남</td><td>2,233</td><td>2,603</td><td>775</td><td>255</td><td>220</td><td>249</td><td>141</td><td>248</td><td>348</td></tr>
<tr><td>여</td><td>4,852</td><td>7,795</td><td>2,185</td><td>757</td><td>869</td><td>826</td><td>525</td><td>1,030</td><td>1,328</td></tr>
<tr><td>합계</td><td>7,085</td><td>10,398</td><td>2,960</td><td>1,012</td><td>1,089</td><td>1,075</td><td>666</td><td>1,278</td><td>1,676</td></tr>
<tr><td>지역</td><td>광주</td><td>강원</td><td>대전</td><td>전남</td><td>전북</td><td>울산</td><td>제주</td><td colspan="2">계</td></tr>
<tr><td>남</td><td>132</td><td>199</td><td>129</td><td>149</td><td>123</td><td>130</td><td>73</td><td colspan="2">8,007</td></tr>
<tr><td>여</td><td>456</td><td>610</td><td>488</td><td>460</td><td>417</td><td>367</td><td>248</td><td colspan="2">23,213</td></tr>
<tr><td>합계</td><td>588</td><td>809</td><td>617</td><td>609</td><td>540</td><td>497</td><td>321</td><td colspan="2">31,220</td></tr>
</table>
※ 사망, 말소, 이민, 거주불명,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 제외
주 :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조례개정안</td><td>
<table>
<tr><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td><td>1안)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협의회 구성 등)</td></tr>
</table>
</td></tr>
</table>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22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12조	
분류	③ 성별 균형 참여	
문제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⑨ (생략)	1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	

2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⑦ (생략)</td><td>1안)
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지역 주민간 상호 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본 조례에서는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두고 있음.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5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1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1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td><td>1안)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위원)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8조(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8조(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함.
본 조례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복수의 구성원이므로 위원회 구성요건 중 성별 균형 참여가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정책고문 및 정책 자문위원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고문 및 자문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고문 등 위촉)
① (생략)
<신설>
② (생략)</td><td>1안)
제3조(고문 등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2안)
제3조(고문 등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고문 및 자문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3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1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1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함.
다만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함. 협의회의 구성 시 성별이 고려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는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td><td>제2조(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조직관리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구성 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4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4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조직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연구원은 제주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 1. 29.) 기본원칙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의 임용은 법령·이 지침·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은 시험성적·근무성적·그 밖의 실증에 따라 행하여야 함. 다만,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실질적인 양성 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이사 추천 시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 2. (생략)</td><td>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이사 추천 시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함.
본 조례에서는 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조항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본 조례의 협의회 구성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여 ‘하여야 한다’인 의무 조항으로 수정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를 의무 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협의회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를 의무 조항으로 조례 개정</td></tr>
</table>

3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 고시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심의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td><td>1안)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종합계획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2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12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12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⑦ (생략)</td><td>1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td><td>1안)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1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16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1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과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4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⑨ (생략)</td><td>1안)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의회인사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⑧ (생략)</td><td>1안)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의회인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td><td>1안)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며,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3조(구성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13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3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규제개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개정</td></tr>
</table>

4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28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총괄부서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됨.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청문주재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음.
여성이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청문주재자 구성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청문주재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청문주재자 구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td><td>제4조(청문주재자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문주재자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청문주재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보존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4·3관련 단체 및 문화재 전문가, 교육계 인사,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td><td>1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4·3관련 단체 및 문화재 전문가, 교육계 인사,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2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4·3관련 단체 및 문화재 전문가, 교육계 인사,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1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u><신설></u></td><td>1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2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며,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td><td>1안)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며,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며,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1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1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사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 소비자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11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 ④ (생략)</td><td>1안)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u>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u>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td><td>1안)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3</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① (생략)
1. ~ 6. (생략)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td><td>1안)
제11조(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11조(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노동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14조(노동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14조(노동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⑥ (생략)</td><td>1안)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당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란 여론 수렴과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함. 여론 수렴과 의견 제출은 조례 제정 등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의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있음. 이러한 주요한 역할을 맡는 옴부즈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다른 정책 요구 등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는 옴부즈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은 읍·면 및 동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td><td>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은 읍·면 및 동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갈등조정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td><td>1안)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민간투자시설사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성인지 예산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td><td>1안)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등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생략)
⑦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td><td>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등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⑥ (생략)
⑦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td><td>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여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⑦ (생략)</td><td>1안)
제9조(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일반공공행정 분야 자치법규에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7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제3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이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으면 예우시책의 대상이 됨.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제2항에 명시된 예우시책 중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내용을 근거로 성별 균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위촉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에 성별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별지 제3호서식]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에 성별 구분 표기란 신설하여 예우시책 중 위촉위원 요청시 기초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호수</td><td>소속
또는
직위</td><td>성 명</td><td>생년월일</td><td>현주소</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호수</td><td>소속
또는
직위</td><td>성 명</td><td>성별</td><td>생년월일</td><td>현주소</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별지 제3호서식]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에 성별 구분 표기란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7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 4</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5">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신고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전화번호</td><td>별지 1호 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신고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남, 여)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전화번호</td></tr>
<tr><td>별지 2호 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수형자)
신고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전화번호</td><td>별지 2호 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수형자)
신고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남, 여)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전화번호</td></tr>
<tr><td>별지 3호 서식
제주4·3사건유족결정통지서
신고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전화번호</td><td>별지 3호 서식
제주4·3사건유족결정통지서
신고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남, 여)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 )의 전화번호</td></tr>
<tr><td>별지 4호 서식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 주소 (전화)</td><td>별지 4호 서식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주와 관계 / 주소 (전화)</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 4</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6">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td><td>처리기간
15일 이내</td></tr><tr><td rowspan="2">희생자</td><td>성명</td><td></td><td>본적</td><td colspan="3"></td></tr><tr><td>구분</td><td colspan="2">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td><td>결정일</td><td colspan="2"></td></tr><tr><td rowspan="2">수급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희생자와의 관계</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5">(☏)</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6">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td><td>처리기간
15일 이내</td></tr><tr><td rowspan="2">희생자</td><td>성명</td><td></td><td>본적</td><td>성별</td><td colspan="2"></td></tr><tr><td>구분</td><td colspan="2">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td><td>결정일</td><td colspan="2"></td></tr><tr><td rowspan="2">수급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d>희생자와의 관계</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5">(☏)</td></tr></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table><tr><td rowspan="2">희생자</td><td>성명</td><td></td><td>본적</td><td colspan="3"></td></tr><tr><td>구분</td><td colspan="2">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td><td>결정일</td><td colspan="2"></td></tr><tr><td rowspan="2">수급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희생자와의 관계</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5">(☏)</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table><tr><td rowspan="2">희생자</td><td>성명</td><td></td><td>본적</td><td>성별</td><td colspan="2"></td></tr><tr><td>구분</td><td colspan="2">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td><td>결정일</td><td colspan="2"></td></tr><tr><td rowspan="2">수급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d>희생자와의 관계</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5">(☏)</td></tr></table></td></tr>
<tr><td>별지 3호 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table><tr><td rowspan="2">희생자</td><td>성명</td><td></td><td>본적</td><td colspan="3"></td></tr><tr><td>구분</td><td colspan="2">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td><td>결정일</td><td colspan="2"></td></tr><tr><td rowspan="2">수급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희생자와의 관계</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5">(☏)</td></tr></table></td><td>별지 3호 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table><tr><td rowspan="2">희생자</td><td>성명</td><td></td><td>본적</td><td>성별</td><td colspan="2"></td></tr><tr><td>구분</td><td colspan="2">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td><td>결정일</td><td colspan="2"></td></tr><tr><td rowspan="2">수급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d>희생자와의 관계</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5">(☏)</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별지 4호 서식.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colspan="3">희 생 자</th><th colspan="3">수 급 자</th></tr>
<tr><th>본적</th><th>성명</th><th>생년월일</th><th>주소</th><th>성명</th><th>희생자와의 관계</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
<td>별지 4호 서식.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colspan="3">희 생 자</th><th colspan="4">수 급 자</th></tr>
<tr><th>본적</th><th>성명</th><th>생년월일</th><th>주소</th><th>성명</th><th>성별</th><th>희생자와의 관계</th></tr>
<tr><td></td><td></td><td></td><td>(남, 여)</td><td></td><td></td><td></td><td></td></tr>
</table>
</td>
</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4</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성 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성 명</td><td></td><td>생년
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별지 4호 서식. 사료의사용허가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기관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r><tr><td>주 소</td><td></td><td>전화
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4호 서식. 사료의사용허가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기관명)</td><td></td><td>생년
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td><td>전화
번호</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td><td>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소비제품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관·단체 등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td><td>제7조(소비제품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관·단체 등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td><td>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2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5, 6</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4">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td></tr>
<tr><td rowspan="4">업소
일반
현황</td><td>업소명</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사업자
번호</td><td></td><td>휴대
전화</td><td></td></tr>
<tr><td>업종</td><td></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td></tr>
<tr><td rowspan="4">업소
일반
현황</td><td>업소명</td><td></td><td>대표자</td><td><u>(남, 여)</u></td></tr>
<tr><td>사업자
번호</td><td></td><td>휴대
전화</td><td></td></tr>
<tr><td>업종</td><td></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able></td></tr>
<tr><td>별지 5호 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대장
<table>
<tr><td>일련
번호</td><td>선정
번호</td><td>업종</td><td>업소명</td><td>대표자</td><td>주 소</td><td>연락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별지 5호 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대장
<table>
<tr><td>일련
번호</td><td>선정
번호</td><td>업종</td><td>업소명</td><td>대표자</td><td><u>대표자
성별</u></td><td>주소</td><td>연락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별지 6호 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회수대장
<table>
<tr><td>일련
번호</td><td>업 종</td><td>업소명</td><td>대표자</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td><td>별지 6호 서식.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회수대장
<table>
<tr><td>일련
번호</td><td>업 종</td><td>업소명</td><td>대표자</td><td><u>대표자
성별</u></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83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
<table>
<tr><td>마을
기업
명</td><td></td><td rowspan="2">조직
형태
(설립
일자)</td><td rowspan="2"></td></tr>
<tr><td>법인
명</td><td></td></tr>
<tr><td>대표
자</td><td>성명 :
전화 :
Email :</td><td>실무책
임자</td><td>성명 :
전화 :
Email :</td></tr>
</table>
</td><td>별지 1호 서식.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
<table>
<tr><td>마을
기업
명</td><td></td><td rowspan="2">조직
형태
(설립
일자)</td><td rowspan="2"></td></tr>
<tr><td>법인
명</td><td></td></tr>
<tr><td>대표
자</td><td>성명 :
성별 :
전화 :
Email :</td><td>실무책
임자</td><td>성명 :
성별 :
전화 :
Email :</td></tr>
</table>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8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2</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3">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
<table><tr><td>청원건명</td><td colspan="4"></td></tr><tr><td rowspan="2">청원인</td><td>주소</td><td colspan="3"></td></tr><tr><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
<table><tr><td>청원건명</td><td colspan="4"></td></tr><tr><td rowspan="2">청원인</td><td>주소</td><td colspan="3"></td></tr><tr><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
<table><tr><td>청원건명</td><td colspan="4"></td></tr><tr><td rowspan="2">청원인</td><td>주소</td><td colspan="3"></td></tr><tr><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
<table><tr><td>청원건명</td><td colspan="4"></td></tr><tr><td rowspan="2">청원인</td><td>주소</td><td colspan="3"></td></tr><tr><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85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2, 3, 4</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4">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2호 서식. 도정정책모니터 접수대장
<table><tr><td>연번</td><td>접수
일자</td><td>성명</td><td>주소</td><td>생년
월일</td><td>직업</td><td>전화
번호
(핸드
폰)</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도정정책모니터 접수대장
<table><tr><td>연번</td><td>접수
일자</td><td>성명</td><td>주소</td><td>생년
월일</td><td>성별</td><td>직업</td><td>전화
번호
(핸드
폰)</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별지 3호 서식. 도정정책모니터 관리대장
<table><tr><td>연번</td><td>위촉
일</td><td>성명</td><td>주소
(메일
주소)</td><td>생년
월일</td><td>직업</td><td>전화
번호
(핸드
폰)</td><td>해촉
일</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3호 서식. 도정정책모니터 관리대장
<table><tr><td>연번</td><td>위촉
일</td><td>성명</td><td>주소
(메
일주
소)</td><td>생년
월일</td><td>성별</td><td>직업</td><td>전화
번호
(핸
드폰
)</td><td>해촉
일</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별지 4호 서식. 도정정책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table><tr><td rowspan="2">접수
번호</td><td rowspan="2">접수
방법</td><td colspan="3">제 보 자</td></tr><tr><td>성 명</td><td>제보일시</td><td>제 보 내 용</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4호 서식. 도정정책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table><tr><td rowspan="2">접수
번호</td><td rowspan="2">접수
방법</td><td colspan="4">제 보 자</td></tr><tr><td>성 명</td><td>성별</td><td>제보일시</td><td>제 보 내 용</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8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사업자금보조(융자)신청서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
2. 보조(융자)사업의 목적과 내용 :
…</td><td>별지 1호 서식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u>성별</u> :
2. 보조(융자)사업의 목적과 내용 :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 재정·세제·금융 (5개)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세제·금융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재정·세제·금융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td><td>1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⑩ (생략)</td><td>1안)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⑪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⑪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재정·세제·금융 분야 자치법규에서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2, 3</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2호 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
<table><tr><td colspan="3">납세의무자</td></tr><tr><td>주소</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tr><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
<table><tr><td colspan="4">납세의무자</td></tr><tr><td>주소</td><td>성명</td><td>생년월일</td><td>성별</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별지 3호 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table><tr><td colspan="3">체 납 자</td></tr><tr><td>주소</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tr><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3호 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table><tr><td colspan="4">체 납 자</td></tr><tr><td>주소</td><td>성명</td><td>생년월일</td><td>성별</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
별지 1호 서식. 근로자 추가 고용 현황
<table>
<tr><td rowspan="4">신청
법인</td><td colspan="2">①법인명</td><td colspan="2">②법인등록번호</td></tr>
<tr><td colspan="2">③상호(대표자)</td><td colspan="2">④사업자등록번호</td></tr>
<tr><td colspan="4">⑤주소(영업소)</td></tr>
<tr><td colspan="2">⑥전화번호
(휴대전화:)</td><td colspan="2">⑦전자우편주소</td></tr>
<tr><td rowspan="4">감면
신청</td><td>근로자수</td><td>종전</td><td>현재</td><td rowspan="4">감면신청차량번호</td><td>1)</td></tr>
<tr><td rowspan="2">시점</td><td rowspan="2">년 월 일
현재</td><td rowspan="2">년 월 일
현재</td><td>2)</td></tr>
<tr><td>3)</td></tr>
<tr><td>인원(명)</td><td></td><td></td><td>4)</td></tr>
<tr><td></td><td></td><td></td><td></td><td></td><td>5)</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⑧일련번호</td><td colspan="4">추가 고용 근로자 현황</td><td colspan="4">4대보험납부기간</td><td rowspan="2">비고</td></tr>
<tr><td>성명</td><td>생년월일</td><td>주소지</td><td>계약기간</td><td>건강보험</td><td>국민연금</td><td>고용보험</td><td>산업재재보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개정안
별지 1호 서식. 근로자 추가 고용 현황
<table>
<tr><td rowspan="4">신청
법인</td><td colspan="2">①법인명</td><td colspan="2">②법인등록번호</td></tr>
<tr><td colspan="2">③상호(대표자)
(남, 여)</td><td colspan="2">④사업자등록번호</td></tr>
<tr><td colspan="4">⑤주소(영업소)</td></tr>
<tr><td colspan="2">⑥전화번호
(휴대전화:)</td><td colspan="2">⑦전자우편주소</td></tr>
<tr><td rowspan="4">감면
신청</td><td>근로자수</td><td>종전</td><td>현재</td><td rowspan="4">감면신청차량번호</td><td>1)</td></tr>
<tr><td rowspan="2">시점</td><td rowspan="2">년 월 일
현재</td><td rowspan="2">년 월 일
현재</td><td>2)</td></tr>
<tr><td>3)</td></tr>
<tr><td>인원(명)</td><td></td><td></td><td>4)</td></tr>
<tr><td></td><td></td><td></td><td></td><td></td><td>5)</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⑧일련번호</td><td colspan="5">추가 고용 근로자 현황</td><td colspan="4">4대보험납부기간</td><td rowspan="2">비고</td></tr>
<tr><td>성명</td><td>생년월일</td><td>성별</td><td>주소지</td><td>계약기간</td><td>건강보험</td><td>국민연금</td><td>고용보험</td><td>산업재재보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모범(유공)납세자 추천서</td></tr>
<tr><td rowspan="2">피
추
천
인</td><td>성명
(법인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r>
<tr><td>주소
(법인소
재지)</td><td colspan="3"></td></tr>
</table></td><td>개정안
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모범(유공)납세자 추천서</td></tr>
<tr><td rowspan="2">피
추
천
인</td><td>성명
(법인명)</td><td></td><td>생년
월일</td><td>(남, 여)</td></tr>
<tr><td>주소
(법인소
재지)</td><td colspan="3"></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1. 지역개발 (19개)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지역개발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도시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범죄예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 시에 포함되어야 할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에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따른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기존 성중립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 정책에서 성별·연령별·장애유무, 가구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의 이용 특성 및 요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제주도는 전국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015년부터 6년 연속 범죄·생활안전 분야 최하위 5등급을 받으며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며, 신승배·손태주(2020)에 따르면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은 여성 58.1%, 남성 48.1%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즉 지구단위계획에 여성 등의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 시에 포함되어야 할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에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도 반영하도록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지역'이라는 공간의 변화를 수립할 때, 돌봄, 안전, 공간 및 시설 이용 등에서 차이를 경험하는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여성의 경우에는 아동, 고령자 등 돌봄 대상자를 동반하는 것이 남성보다 많은 경향이 있음. 그러나 돌봄 보호자가 많은 여성들이 지닌 특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시설 및 공간은 이들에게 많은 불편과 제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가 필요한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그 이유로는 공공디자인은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에 돌봄 및 안전 등에 있어서 성별로 나타나는 불편과 필요에 대한 다

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 해당검토조례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서'「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따른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낙후된 도시환경의 공공 공간, 건축물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 및 이용성에 대한 재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성중립적이라는 인식의 바탕에서 도시공간의 조성 정책에서 성별·연령별·장애유무, 가구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의 이용 특성 및 요구 등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어 왔음. - 일례로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이 집중된 상황에서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를 동반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때 여성은 돌봄대상자가 지닌 보행약자의 이동특성을 공유하게 되어 일상생활의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면서 불편함과 제약이 가중되어 차별적인 공간이용 유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령, 성별, 신체능력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한 도시환경 조성의 필수적인 기반 확보의 방안임. - 2015년 5600명이던 출생아수는 2016년 5494명, 2017년 5037명, 2018년 4781명, 2019년 4500명, 2020년 398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출처: 통계청(2020).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제주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9년 11.9%에서 2019년 15.0%로 증가함으로써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65세 이상 제주 인구의 58.2%는 여성이며, 41.8%는 남성임. 또한 장애인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2019년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은 3만6천287명으로, 도내 총 인구대비 5.41%로 나타났음(출처: 호남지방통계청(2020). 「2020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개선의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성인지 관점의 환경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따른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사항 포함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따른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개선과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성인지 관점의 환경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생활환경 계획에 대한 규정 포함 조례 개정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검토조례 제15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공간정책에 ‘안전성’을 구체화해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도시에서의 범죄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시 범죄발생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공간적 특정 장소이며 범죄발생은 대부분 뚜렷한 시·공간적 패턴이 존재함. 따라서 도시계획적 방법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은 적절한 공간과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범죄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활동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것임(출처: 조중구(2005). “범죄발생의 도시계획적 함의”. 통계청).
– 제주도는 전국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015년부터 6년 연속 범죄·생활안전 분야 최하위 5등급을 받으며 범죄에 취약한 상황임.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은 여성 58.1%, 남성 48.1% 남성보다는 여성인식이 더 높음(출처: 신승배·손태주(2020).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분야별 안전등급>
<table><tr><th>지역</th><th>교통사고</th><th>화재</th><th>범죄</th><th>생활안전</th><th>자살</th><th>감염병</th></tr><tr><td>제주</td><td>3</td><td>2</td><td>5</td><td>5</td><td>4</td><td>2</td></tr></table>
주: 행정안전부(2019). 「2019년 지역안전지수」.

– 도시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성의 공간이용 방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공간이용에 제약으로 작용하여 안전성이 취약한 공간은 여성들에게 불공평한 공간이 됨. 따라서 안전성 확보는 여성들의 평등한 공간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기도 함.
– 도시 구성원에게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도시계획정책은 구성원의 도시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여성, 어린이 등 범죄취약계층 및 주민이 안전감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을 적극 고려해야 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지구단위계획에 성인지 관점의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 사항 신설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 ② (생략)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9항 및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td><td>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9항 및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td></tr>
</table>

	<신 설> ④ (생략)	8.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 ④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에 성인지 관점의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사항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3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 해당검토조례는 여성,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도민의 삶과 양성평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문화조성 시 성인지적 관점의 고려가 필요함. – '지역'이라는 공간의 변화를 수립할 때, 돌봄, 안전, 공간 및 시설 이용 등에서 차이를 경험하는 다양한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5조 제3호에서 지역의 특성 및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 추가 개정을 제안함. – 일례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를 동반하는 경향이 많아 돌봄대상자가 지닌 보행약자의 이동특성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면서 불편함과 제약이 가중되어 차별적인 공간이용 유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개선의견	제5조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추가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의 특성 및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 6.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제10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시,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정책 등과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포함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공공디자인 시책 관련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운영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공공디자인은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에 돌봄 및 안전 등에 있어서 성별로 나타나는 불편과 필요에 대한 다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시책 관련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정책’등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시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정책 등의 관련자 포함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각·공간·제품·브랜드 디자인, 환경, 도시, 건축, 문화, 토목, 조경, 교통,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나. ~ 라. (생략)</td><td>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각·공간·제품·브랜드 디자인, 환경, 도시, 건축, 문화, 토목, 조경, 교통, 옥외광고,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정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나. ~ 라.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시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정책 등의 관련자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개발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지역개발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이외에도 위원회는 아니지만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조례도 있었음. 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시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의 참여를 고려하도록 하였음. 그 이유는 주민주도 사업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어 도시공간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성 참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23조의2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모니터링 참여단 구성 시에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거대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마다 사회적 약자 등 모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정책과 운영은 성별 · 연령 · 장애유무 ·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안을 모색하여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0조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거대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마다 사회적 약자 등 모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정책과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6조(주민협의체)</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해당 검토조례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주민주도 사업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어 도시공간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성 참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됨.
이에 제16조 주민협의체 구성 시 성평등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한 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평등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 주민협의체 구성 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6조(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td><td>제16조(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되, 균형있는 성별·연령별·계층별 등의 참여를 고려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주민협의체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설립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 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현행 검토조례는 제10조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거대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마다 사회적 약자 등 모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정책과 운영은 성별·연령·장애유무·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안을 모색하여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공원, 광장, 공공건축 등의 시설물은 고령자, 장애인 등 신체적인 자유가 제한된 사람, 임산부, 어린이, 외국인 등 여러 사람의 이용을 전제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계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10조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 주민의견 수렴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주민의견 수렴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 규정 명시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10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주민의견 수렴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3조의2(도민참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 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현행 검토조례는 제23조의 2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에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참여단’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거대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마다 사회적 약자 등 모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정책과 운영은 성별 · 연령 · 장애유무 ·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안을 모색하여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제도적 의미와 실현을 위해, 제23조의 2에서 성별, 연령, 장애유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참여단의 다양한 구성을 제안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 연령, 장애유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니터링 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3조의2(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도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지역에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td><td>제23조의2(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도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지역에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링 참여단은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 연령, 장애유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니터링 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9조에서는 사업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사업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 3. (생략)
<신 설>
4. ~ 9. (생략)</td><td>1안)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 10.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 ~ 10.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9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검토조례 제29조에서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토지평가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9조(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td><td>1안)
제2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2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토지평가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검토조례 제2조에서는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⑥ (생략)</td><td>1안)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2안)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9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검토조례 제29조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9조(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2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2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3조(주민협의회의 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33조의 주민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3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⑨ (생략)</td><td>1안)
제33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33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4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생략)</td><td>1안)
제4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4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7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제4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7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td><td>1안)
제47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47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지역개발 분야 자치법규에서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1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제2항 [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4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사 용 승 인 신 청 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table><tr><th rowspan="2">지구명</th><th colspan="4">종 전 의 토 지</th><th colspan="3">환 지 예 정 지</th><th rowspan="2">사용
목적</th><th rowspan="2">사용
면적</th><th colspan="2">소 유 자</th></tr><tr><th>동</th><th>지번</th><th>지목</th><th>지적</th><th>블럭</th><th>롯트</th><th>면적</th><th>주 소</th><th>성 명</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사 용 승 인 신 청 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table><tr><th rowspan="2">지구명</th><th colspan="4">종 전 의 토 지</th><th colspan="3">환 지 예 정 지</th><th rowspan="2">사용
목적</th><th rowspan="2">사용
면적</th><th colspan="3">소 유 자</th></tr><tr><th>동</th><th>지번</th><th>지목</th><th>지적</th><th>블럭</th><th>롯트</th><th>면적</th><th>주소</th><th>성명</th><th>성별</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1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사용승인)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항 [별지 제2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이미지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회사주소 / 전화번호(FAX)</td><td>[별지 제1호서식]
이미지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남, 여) / 회사주소 / 전화번호(FAX)</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이미지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회사주소 / 전화번호(FAX)</td><td>[별지 제2호서식]
이미지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남, 여) / 회사주소 / 전화번호(FAX)</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1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7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제51조(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제5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3항 [별지 제9호서식] , 제63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제6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8항 [별지 제18호서식] , 제65조(교육의 위탁 등) 제2항 [별지 제19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5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제51조 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제57조 제3항 [별지 제9호서식] , 제63조 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제64조 제8항 [별지 제18호서식] , 제65조 제2항 [별지 제19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 제안</td></tr>
<tr><td>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td><td>[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안전점검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색상이 있는 부분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타인명의로 옥외광고업을 대행하는 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td><td>[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안전점검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색상이 있는 부분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타인명의로 옥외광고업을 대행하는 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남, 여)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td></tr>
<tr><td></td><td>[별지 제4호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광고물등의 종류 | 수량 | 규격 |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허가(신고)번호 | 표시기간
광고물 관리자(변경 전) | 성 명 (인) | 생년월일
업소명 | 전화번호
주 소
광고물 관리자(변경 후) | 성 명 (인) | 생년월일
업소명 | 전화번호
주 소</td><td>[별지 제4호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광고물등의 종류 | 수량 | 규격 |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허가(신고)번호 | 표시기간
광고물 관리자(변경 전) | 성 명 (인) | 생년월일 (남, 여)
업소명 | 전화번호
주 소
광고물 관리자(변경 후) | 성 명 (인) | 생년월일 (남, 여)
업소명 | 전화번호
주 소</td></tr>
</table>

[별지 제6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광고주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별지 제6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광고주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주 소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여)
	업소명 (단체명)			
	주 소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 ]신규 [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 ]신규 [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여)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별지 제18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별지 제18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남, 여)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남, 여)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개선과제	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하여 조례 개정

18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 제1항 [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 제안</td></tr>
<tr><td>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6">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td></tr>
<tr><td>사업명</td><td colspan="5">(○○○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td></tr>
<tr><td rowspan="2">사업부서</td><td>부서명
(기관명)</td><td colspan="2"></td><td>담당자</td><td></td></tr>
<tr><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6">사업내용</td><td>사업위치</td><td colspan="4"></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4"></td></tr>
<tr><td>규 모</td><td>(전체면적 층수등)</td><td>규격·수량</td><td colspan="2"></td></tr>
<tr><td>용 도</td><td colspan="4"></td></tr>
<tr><td>구조형태</td><td colspan="4"></td></tr>
<tr><td>신청내용</td><td colspan="4">○○○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td></tr>
<tr><td rowspan="2">설계자</td><td>상 호</td><td colspan="2"></td><td>주소</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Fax)</td></tr>
</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6">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td></tr>
<tr><td>사업명</td><td colspan="5">(○○○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td></tr>
<tr><td rowspan="2">사업부서</td><td>부서명
(기관명)</td><td colspan="2"></td><td>담당자</td><td></td></tr>
<tr><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6">사업내용</td><td>사업위치</td><td colspan="4"></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4"></td></tr>
<tr><td>규 모</td><td>(전체면적 층수등)</td><td>규격·수량</td><td colspan="2"></td></tr>
<tr><td>용 도</td><td colspan="4"></td></tr>
<tr><td>구조형태</td><td colspan="4"></td></tr>
<tr><td>신청내용</td><td colspan="4">○○○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td></tr>
<tr><td rowspan="2">설계자</td><td>상 호</td><td colspan="2"></td><td>주소</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2">(남, 여)</td><td>연락처</td><td>(Fax)</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하여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9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제6조(경관협정 승계신고서)[별지 제4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 제안</td></tr>
<tr><td rowspan="3">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전화:)</td><td>[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남, 여)
대표자 주 소 (전화:)</td></tr>
<tr><td>[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협정번호 / 경관협정 일 자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td><td>[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협정번호 / 경관협정 일 자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신청인 주소 (전화:)</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하여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2. 통일·외교 (9개)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외교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통일·외교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td><td>1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위원의 위촉)
① (생략)
<신설>
② (생략)</td><td>1안)
제4조(위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위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2조(운영위원회)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2조(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2조(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6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평화교류·평화안전·평화환경·평화문화·평화봉사분과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3조(분과위원회)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3조(분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3조(분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자문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자문위원회)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td><td>1안)
제4조(자문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자문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통일·외교 분야 자치법규에서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서식
<table><tr><td colspan="4">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사용신청서</td></tr><tr><td>사용자명
(회사,
단체 등
표시)</td><td></td><td>대표자
(사용신청자)</td><td></td></tr><tr><td>사업자등
록번호
(생년월일)</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서식
<table><tr><td colspan="4">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사용신청서</td></tr><tr><td>사용자명
(회사,
단체 등
표시)</td><td></td><td>대표자
(사용신청자)</td><td></td></tr><tr><td>사업자등
록번호
(생년월일)</td><td colspan="3">(남, 여)</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지원신청서
<table><tr><td rowspan="2">개인·기관
또는
단체명</td><td rowspan="2"></td><td rowspan="2">대
표
자</td><td>성명</td><td></td></tr><tr><td>생년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지원신청서
<table><tr><td rowspan="2">개인·기관
또는
단체명</td><td rowspan="2"></td><td rowspan="2">대
표
자</td><td>성명</td><td></td></tr><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3. 해양수산 (18개)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해양수산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 예시를 “관할 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장, 관할 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로만 규정하고 있음. 수산 및 어촌 관련 장이나 대표는 주로 남성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위촉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히게 됨. 이에 위촉직 위원의 위촉이 가능한 자격 예시에 “수산업 또는 어항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td><td>1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⑨ (생략)</td><td>1안)
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 예시를 “관할 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장, 관할 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로만 규정하고 있음. 수산 및 어촌 관련 장이나 대표는 주로 남성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위촉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히게 됨.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위촉이 가능한 자격 예시에 “수산업 또는 어항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위촉이 가능한 자격 예시에 “어업 또는 어항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 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할 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2.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장
3. 관할 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신설>
⑤ ~ ⑨ (생략)</td><td>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 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할 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2.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장
3. 관할 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4. 그 밖에 수산업 또는 어항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위촉이 가능한 자격 예시에 “어업 또는 어항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4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심의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4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2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2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심의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td><td>1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9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2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td><td>1안) 제12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12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 분야 자치법규에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③ (생략)</td><td>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호의2, 1호의3, 2, 3</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2 서식
<table><tr><td colspan="5">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
(법인명)</td><td></td><td>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d>별지 1호2 서식
<table><tr><td colspan="5">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
(법인명)</td><td></td><td>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남, 여)</td></tr><tr><td>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r>
<tr><td>별지 1호3 서식
<table><tr><td colspan="5">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td></tr><tr><td>낚시어선업자</td><td>성 명
(법인명)</td><td></td><td>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1호3 서식
<table><tr><td colspan="5">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td></tr><tr><td>낚시어선업자</td><td>성 명
(법인명)</td><td></td><td>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남, 여)</td></tr></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5">행정처분통지서
제 호</td></tr><tr><td rowspan="2">사업자</td><td>성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5">행정처분통지서
제 호</td></tr><tr><td rowspan="2">사업자</td><td>성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r>
<tr><td>별지 3호 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table><tr><td colspan="2">낚시어선업자</td></tr><tr><td>주소</td><td>성명</td></tr><tr><td></td><td></td></tr></table></td><td>별지 3호 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table><tr><td colspan="3">낚시어선업자</td></tr><tr><td>주소</td><td>성명</td><td>성별</td></tr><tr><td></td><td></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2</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신청서</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주소</td><td></td><td>성명</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사고 어업인과의 관계</td><td></td></tr>
<tr><td rowspan="2">사고 어업인</td><td>주소</td><td></td><td>성명</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세대주 여부</td><td></td></tr>
</table>
별지 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지급 확인서</td></tr>
<tr><td rowspan="2">지급선</td><td>주소</td><td></td><td>성명</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사고 어업인과의 관계</td><td></td></tr>
<tr><td rowspan="2">사 고 어업인</td><td>주소</td><td></td><td>성명</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세대주 여부</td><td></td></tr>
</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신청서</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주소</td><td></td><td>성명</td><td></td></tr>
<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d>사고 어업인과의 관계</td><td></td></tr>
<tr><td rowspan="2">사고 어업인</td><td>주소</td><td></td><td>성명</td><td></td></tr>
<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d>세대주 여부</td><td></td></tr>
</table>
별지 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지급 확인서</td></tr>
<tr><td rowspan="2">지급선</td><td>주소</td><td></td><td>성명</td><td></td></tr>
<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d>사고 어업인과의 관계</td><td></td></tr>
<tr><td rowspan="2">사 고 어업인</td><td>주소</td><td></td><td>성명</td><td></td></tr>
<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d>세대주 여부</td><td></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10</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묘 반입·입식자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묘 반입·입식자 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묘 생산자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묘 생산자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r>
<tr><td>별지 3호 서식
<table><tr><td colspan="6">안전성 검사 신청서</td></tr><tr><td rowspan="3">수산생물양식시설(신청인)</td><td>양식장명</td><td></td><td>소 재 지</td><td></td></tr><tr><td>대표자</td><td></td><td>어업허가번호</td><td></td></tr><tr><td>일반전화(핸드폰)</td><td></td><td>FAX</td><td></td></tr></table></td><td>별지 3호 서식
<table><tr><td colspan="6">안전성 검사 신청서</td></tr><tr><td rowspan="3">수산생물양식시설(신청인)</td><td>양식장명</td><td></td><td>소 재 지</td><td></td></tr><tr><td>대표자</td><td>(남, 여)</td><td>어업허가번호</td><td></td></tr><tr><td>일반전화(핸드폰)</td><td></td><td>FAX</td><td></td></tr></table></td></tr>
<tr><td>별지 4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다른 검사기관(조례 제 5조 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d>별지 4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다른 검사기관(조례 제 5조 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별지 5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 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d>별지 5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입식자 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6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묘 생산자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d>별지 6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묘 생산자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7호 서식
<table><tr><td colspan="6">안전성 검사 증명서</td></tr><tr><td rowspan="2">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td><td>양식장명</td><td></td><td>소재지</td><td></td></tr><tr><td>대표자</td><td></td><td>어업허가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7호 서식
<table><tr><td colspan="6">안전성 검사 증명서</td></tr><tr><td rowspan="2">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td><td>양식장명</td><td></td><td>소재지</td><td></td></tr><tr><td>대표자</td><td>(남, 여)</td><td>어업허가번호</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8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다른 검사기관(조례 제 5조 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d>별지 8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다른 검사기관(조례 제 5조 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9호 서식
<table><tr><td colspan="5">검정검사 시험 의뢰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tr><td>주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9호 서식
<table><tr><td colspan="5">검정검사 시험 의뢰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10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시험(검정 검사) 성적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tr><td>주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10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시험(검정 검사) 성적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td><td>별지 1호 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주 소:
○ 전화번호:</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5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2</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3">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3">유 어 장 지 정 신 청 서</td><td>처리
기간
5일</td></tr><tr><td rowspan="2">신
청
인</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3">유 어 장 지 정 신 청 서</td><td>처리
기간
5일</td></tr><tr><td rowspan="2">신
청
인</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유 어 장 지 정 증</td></tr><tr><td rowspan="2">유어장을
지정
받은
자</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유 어 장 지 정 증</td></tr><tr><td rowspan="2">유어장을
지정
받은
자</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6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융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
청
인</td><td>대표자
성명</td><td></td><td rowspan="2">전화
번호</td><td>일 반 :
휴대폰 :</td></tr>
<tr><td>단체명</td><td colspan="3"></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사업자
(법인)
등 록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조 합
원 수</td><td></td><td>영 어
규 모</td><td>(ha·척)</td></tr>
</table>
</td><td>별지 1호 서식.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융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
청
인</td><td>대표자
성명</td><td>(남, 여)</td><td rowspan="2">전화
번호</td><td>일 반 :
휴대폰 :</td></tr>
<tr><td>단체명</td><td colspan="3"></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사업자
(법인)
등 록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조 합
원 수</td><td></td><td>영 어
규 모</td><td>(ha·척)</td></tr>
</table>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7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2, 3, 4, 5, 7, 8, 9, 10, 11</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4">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td><td>처리
기간
20일</td></tr><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tr><td>주 소</td><td colspan="4"></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td><td>처리
기간
20일</td></tr><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4"></td></tr></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도지정 검사기관)
지정서</td></tr><tr><td>지정번호</td><td colspan="3"></td></tr><tr><td>검사기관</td><td colspan="3"></td></tr><tr><td>대 표 자</td><td></td><td>생년
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도지정 검사기관)
지정서</td></tr><tr><td>지정번호</td><td colspan="3"></td></tr><tr><td>검사기관</td><td colspan="3"></td></tr><tr><td>대 표 자</td><td></td><td>생년
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별지 3호 서식
<table><tr><td colspan="8">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신청서 접수대장</td></tr><tr><td rowspan="2">접수번호</td><td rowspan="2">접수일자</td><td>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td><td rowspan="2">검사의
종류
검사품종</td><td colspan="2">검사수량(kg)
총수량 / 검체수량</td><td rowspan="2">검사담당자</td><td rowspan="2">비 고</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3호 서식
<table><tr><td colspan="8">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신청서 접수대장</td></tr><tr><td rowspan="2">접수번호</td><td rowspan="2">접수일자</td><td>업 체 명
대 표 자
대표자 성별
주 소</td><td rowspan="2">검사의
종류
검사품종</td><td colspan="2">검사수량(kg)
총수량 / 검체수량</td><td rowspan="2">검사담당자</td><td rowspan="2">비 고</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r>
</table>

별지 4호 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집행상황부

접수 번호	신청인	검사의 종류	검사신청총수량	검사 결과			검사 일	검사 원	증명서 번호	용도	반출·반입지	비고
				적합	부적합	기타						
접수 일자	품명		검체수량	수량	수량	수량						

별지 4호 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집행상황부

접수 번호	신청인 (성별)	검사의 종류	검사신청총수량	검사 결과			검사 일	검사 원	증명서 번호	용도	반출·반입지	비고
				적합	부적합	기타						
접수 일자	품명		검체수량	수량	수량	수량						
	(남, 여)											

별지 5호 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증명서 발급대장

발행번호	발행일자	품명	검사결과	전체수량 / 검체수량	검사일자	주소	성명	증명서종류	발급방법	비고

별지 5호 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증명서 발급대장

발행번호	발행일자	품명	검사결과	전체수량 / 검체수량	검사일자	주소	성명 (성별)	증명서종류	발급방법	비고
							(남, 여)			

별지 7호 서식

검사증명서·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처리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별지 7호 서식

검사증명서·시험성적서(분할발급,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처리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업체명	

별지 8호 서식

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묘 도내 반입·입식자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별지 8호 서식

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수산종묘 도내 반입·입식자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연락처	

<table>
<tr><td></td><td>별지 9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묘 생산자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d>별지 9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방역검사 증명서(재발급)
(제주자치도 내 수산종묘 생산자용)</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10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d>별지 10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안전성 검사 증명서(재발급)</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11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시험(검정 검사) 성적서(재발급)</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td><td></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d>별지 11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시험(검정 검사) 성적서(재발급)</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td><td>(남, 여)</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1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2</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td><td>처리기간
15 일</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① 성명
또는 대표자</td><td></td><td>②
생년
월일</td><td></td></tr><tr><td>③ 업체명</td><td></td><td>④
전화
번호</td><td></td></tr><tr><td>⑤ 주소
또는 소재지</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td><td>처리기간
15 일</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① 성명
또는 대표자</td><td></td><td>②
생년
월일</td><td>(남, 여)</td></tr><tr><td>③ 업체명</td><td></td><td>④
전화
번호</td><td></td></tr><tr><td>⑤ 주소
또는 소재지</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부담금 납부통지서</td></tr><tr><td rowspan="3">납부의무자</td><td>① 성명
또는
대표자</td><td></td><td>②
생년
월일</td><td></td></tr><tr><td>③ 업체명</td><td></td><td>④
전화
번호</td><td></td></tr><tr><td>⑤ 주소
또는
소재지</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2호 서식
<table><tr><td colspan="5">부담금 납부통지서</td></tr><tr><td rowspan="3">납부의무자</td><td>① 성명
또는
대표자</td><td></td><td>②
생년
월일</td><td>(남, 여)</td></tr><tr><td>③ 업체명</td><td></td><td>④
전화
번호</td><td></td></tr><tr><td>⑤ 주소
또는
소재지</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4. 환경 (52개)

□ '성별 특성' 지표의 검토 결과

○ 환경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예시에 영·유아 및 임산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받은 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교육에 불법촬영 관련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해설사의 직무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관련 별표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시를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여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유해인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임신·출산기는 태아의 세포가 성장하고 기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임산부의 산소요구량이 15~20% 정도 증가하여 일반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취약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음.[3] 따라서 해당 조례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예시를 어린이, 노약자, 환자 외에도 영·유아 및 임산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 교육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에서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으로 급증했으며, 공중화장실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는 1,311건, 성범죄 1,269건, 절도범죄 1,083건, 폭력범죄 580건, 강력범죄 168건 등으로 나타났음. 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4] 또한 제주도에서의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41건, 2016년 69건, 2017년 32건, 2018년 36건, 2019년 74건으로 5년간 252건이 발생됐음.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을 위해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공중화장실 825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7.7%인 146곳에 불과하였음.[5]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의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받은 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해당 조례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교육에 불법촬영 관련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의

3) "미세먼지가 임신 합병증 발생 위험 높인다", 의학신문, 2021.04.21.
4) "작년 공중화장실 범죄 4천528건…5년간 2배 급증", 연합뉴스, 2020. 09. 17.
5) "제주 공중화장실 범죄 급증...비상벨 설치 비율은 바닥", 제주의 소리, 2020. 10. 06.

수립·시행에 있어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미세먼지에 대한 역학 연구와 통제된 인간 노출연구 결과, 생애단계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질환발생률이 달라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층이 존재하고 질환별로 민감성 및 지연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음(한설희, 2019).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등과 같은 민감군은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욱 큼. 이에 해당 조례 제5조에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8조에서는 해설사의 직무교육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설사는 다양한 성별, 연령 등의 특성을 갖은 방문객과 직접 대면하여 제주의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 등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 홍보대사와도 유사함. 따라서 제주를 찾는 다양한 성별과 세대와 상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젠더의식을 함양한 태도와 소양이 필요함. 따라서 해당 조례 제8조에 “도지사는 직무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을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에서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의 민감군으로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를 포함하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노약자, 환자 외에 ‘영·유아 및 임산부’역시 민감군으로서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여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유해인자에 민감하게 반응함. 특히 여성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성은 모자보건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임산부가 흡입한 미세먼지는 태아의 성장·발달은 물론 조산과도 관련이 있음. 더욱이 임산부는 치료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유해인자로부터의 사전예방이 중요함.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위험 임신 78만 9595건을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기는 태아의 세포가 성장하고 기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임산부의 산소요구량이 15~20% 정도 증가하여 일반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취약한 시기로 밝혀졌음. 이로 인해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물질농도가 높아지면 임신성 당뇨 발생 위험은 1.17배, 임신성 고혈압 발생 위험은 1.08배, 조산 발생 위험은 1.05배 증가하며 임신합병증 종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에 따라 미세먼지에 받는 영향에서도 미세먼지 노출이 많았던 임신부가 낳은 아이 중 남자는 태아~2세, 여자는 4~5세 때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받았음(출처: 의학신문, “미세먼지가 임신 합병증 발생 위험 높인다”, 2021. 4. 21.).
–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하여 정의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영·유아 및 임산부’를 포함하여 보호 대상 범위 확대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
① 도지사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 때의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td><td>제6조(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td></tr>
<tr><td>[별표]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6조 제1항 관련)
<table><tr><td>경보단계</td><td>도민 건강보호</td></tr><tr><td>주의보</td><td>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td></tr></table></td><td>[별표]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6조 제1항 관련)
<table><tr><td>경보단계</td><td>도민 건강보호</td></tr><tr><td>주의보</td><td>가. 민감군(영유아·어린이·노인·임</td></tr></table></td></tr>
</table>

	<table><tr><td></td><td>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td></tr><tr><td>경 보</td><td>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td></tr></table>	<table><tr><td></td><td>산부·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td></tr><tr><td>경 보</td><td>가. 민감군(영유아·어린이·노인·임산부·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td></tr></table>
개선과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영·유아 및 임산부’를 포함하여 보호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2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분류	② 성별 특성	
문제점	· 해당 검토 대상 조례는 청결과 이용 편리성에 집중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외,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범죄예방과 이용 불안해소를 위한 내용 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천981건, 2016년 2천44건, 2017년 2천81건에서 2018년 4천224건, 2019년 4천528건으로 급증했음. 공중화장실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는 1천311건, 성범죄 1천269건, 절도범죄 1천83건, 폭력범죄 580건, 강력범죄 168건 등으로 나타남. 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출처: 연합뉴스, "작년 공중화장실 범죄 4천528건…5년간 2배 급증", 2020. 9. 17.). – 또한 제주도에서의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41건, 2016년 69건, 2017년 32건, 2018년 36건, 2019년 74건으로 5년간 252건이 발생됐음.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을 위해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공중화장실 825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7.7%인 146곳에 불과함(출처: 제주의 소리, "제주 공중화장실 범죄 급증...비상벨 설치 비율은 바닥", 2020. 10. 6.). – 또한 인천광역시는 2020년 7월에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음. – 따라서 불법촬영, 각종 성범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받은 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공중화장실 등 관리자의 범죄예방 교육과 불법촬영장치 확인 및 안전관리 조치 내용 추가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신 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공중화장실 등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고, 안전관리 등 조치
개선과제	공중화장실 등의 범죄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관리인의 교육)</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 검토 대상 조례는 청결과 이용 편리성에 집중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외,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범죄예방과 이용 불안해소를 위한 내용 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천981건, 2016년 2천44건, 2017년 2천81건에서 2018년 4천224건, 2019년 4천528건으로 급증했음. 공중화장실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는 1천311건, 성범죄 1천269건, 절도범죄 1천83건, 폭력범죄 580건, 강력범죄 168건 등으로 나타남. 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출처: 연합뉴스, "작년 공중화장실 범죄 4천528건…5년간 2배 급증", 2020. 9. 17.).
– 또한 제주도에서의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41건, 2016년 69건, 2017년 32건, 2018년 36건, 2019년 74건으로 5년간 252건이 발생됐음.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범죄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을 위해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공중화장실 825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7.7%인 146곳에 불과함(출처: 제주의 소리, “제주 공중화장실 범죄 급증…비상벨 설치 비율은 바닥”, 2020. 10. 6.).
– 또한 인천광역시는 2020년 7월에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음.
– 따라서 불법촬영, 각종 성범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제10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교육에 범죄예방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범죄예방 관련 교육 내용 추가</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관리인의 교육)
① ~ ② (생략)
<신 설></td><td>제10조(관리인의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공중화장실 등의 범죄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 검토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성은 성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수준, 생활습관 등에 따른 개인, 그리고 녹지수준, 의료인프라 등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함. 더욱이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건강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인지 관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과 관련 지원시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에 대한 역학 연구와 통제된 인간 노출연구 결과, 생애단계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질환발생률이 달라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층이 존재하고 질환별로 민감성 및 지연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출처: 한설희(2019). “먼지와 치매: 대기 오염이 인지 건강과 관계있을까?”. 「J Korean Neurol Assoc」. 37(2)).
–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등과 같은 민감군은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 큼. 특히 여성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성은 모자보건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임산부가 흡입한 미세먼지는 태아의 성장·발달은 물론 조산과도 관련이 있음. 더욱이 임산부는 질병 발생 시 치료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유해인자로부터의 사전 예방이 중요함.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위험 임신 78만 9595건을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기는 태아의 세포가 성장하고 기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임산부의 산소요구량이 15~20% 정도 증가하여 일반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취약한 시기로 밝혀졌음. 이로 인해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물질농도가 높아지면 임신성 당뇨 발생 위험은 1.17배, 임신성 고혈압 발생 위험은 1.08배, 조산 발생 위험은 1.05배 증가하며 임신합병증 종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에 따라 미세먼지에 받는 영향에서도 미세먼지 노출이 많았던 임신부가 낳은 아이 중 남자는 태아~2세, 여자는 4~5세 때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받았음(출처: 의학신문, “미세먼지가 임신 합병증 발생 위험 높인다”, 2021. 4. 21.).
– 폐가 다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는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숨을 더 빠르고 깊이 쉬게 되어 보다 많은 미세먼지 입자를 흡입하게 되며, 고령자는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 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위험할 수 있음.
– 따라서 제5조 제1항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 사항에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방안 수립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td><td>제5조(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td></tr>
</table>

	1. ~ 4. (생략) <신 설> 5.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방안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방안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직무교육 및 평가)</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② 성별 특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현행검토조례는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종류의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제8조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직무교육 및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의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 등에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설사의 직무 교육을 보수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 방문객의 성별, 유형별, 연령별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성인지적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접근 등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과목의 마련을 제안함.
– 해설사는 다양한 성별, 연령 등의 특성을 갖은 방문객과 직접 대면하여 제주의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 등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 홍보대사와도 유사함. 따라서 제주를 찾는 다양한 성별과 세대와 상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젠더의식을 함양한 태도와 소양이 필요함.
–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성인지력향상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에 성인지 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8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td><td>제8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추가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이에 환경 분야 자치법규 중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안하였음. 즉 1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안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1안을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2안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음.

○ 또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14조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지니며, 중요한 의사결정 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에 이들을 구성할 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즉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것임.

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이사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검토조례 제1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의 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발공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특정 성의 과다한 독점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원 구성 시 성별균형에 따른 고려를 명시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승진에 제약과 차별을 받거나 조직에서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함.
– 2021년 경영평가대상 공공기관 131곳(공기업36, 준정부기관 95)을 대상으로 임원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1556명 중 341명(21.91%)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18.9%)를 달성했지만, 공공기관 여성 임원 대부분은 외부에서 영입한 비상임 이사들임. 특히 내부 출신 상임이사 중 여성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음(출처: 이데일리, “공공기관 임원 5명중 1명은 여성이지만…상임은 고작 5.3%뿐”, 2021. 6. 15.).
– 제주 대표 공기업 여성임원 비율이 전무한 가운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원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보면 전체 18% 중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은 없음(출처: 제주도민일보, “제주개발공사 등 여성 임원 ‘제로(0)’…조례 개정”, 2020. 9. 3.).</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 ⑦ (생략)</td><td>제1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9조(평가단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현행검토조례 제19조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리업무를 평가하는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에서 여성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험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성별균형참여 명시를 권고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제19조 평가단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9조(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도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td><td>제19조(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도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제19조 평가단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조례 개정</td></tr>
</table>

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7조(이사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 해당검토조례 제17조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의 규정 취지를 반영하여 에너지공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특정 성의 과다한 독점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원 구성 시 성별균형에 따른 고려를 명시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승진에 제약과 차별을 받거나 조직에서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함.
– 2021년 경영평가대상 공공기관 131곳(공기업36, 준정부기관 95)을 대상으로 임원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1556명 중 341명(21.91%)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18.9%)를 달성했지만, 공공기관 여성 임원 대부분은 외부에서 영입한 비상임 이사들임. 특히 내부 출신 상임이사 중 여성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음(출처: 이데일리, “공공기관 임원 5명중 1명은 여성이지만…상임은 고작 5.3%뿐”, 2021. 6. 15.).
– 제주 대표 공기업 여성임원 비율이 전무한 가운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원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보면 전체 18% 중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은 없음(출처: 제주도민일보, “제주개발공사 등 여성 임원 ‘제로(0)’…조례 개정”, 2020. 9. 3.).</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7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 ⑧ (생략)</td><td>제17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에서는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물산업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7조(임기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7조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7조(임기 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57조(임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57조(임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 (수도사업자문위원회)</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0조에서는 수도사업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수도사업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 (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⑫ (생략)</td><td>1안)
제10조 (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⑬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 (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⑬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⑨ (생략)</td><td>1안)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2조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조(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td><td>1안)
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1조에서는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td><td>1안)
제11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7조에서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⑧ (생략)</td><td>1안)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2안)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4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주민지원협의체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 ② (생략)
<신 설>
③ ~ ⑦ (생략)</td><td>1안)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2안)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⑧ (생략)</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9조(지역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4조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지역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9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td><td>1안)
제29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2안)
제29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4조(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4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td><td>1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1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1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td><td>1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심의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조에서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생략)</td><td>1안)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1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에서는 기상산업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기상산업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 ④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규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2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15조(조사단의 구성)	
분류	③ 성별 균형 참여	
문제점	현행검토조례는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15조에서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을 준용하여, 조사단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의 규정 명시를 제안함.	
개선의견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의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15조(조사단의 구성) ① (생략)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주민·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 ③ ~ ⑦ (생략)	제15조(조사단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주민·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의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	

2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6조에서는 곶자왈보전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곶자왈보전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⑨ (생략)</td><td>1안)
제6조(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2안)
제6조(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0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0조에서는 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td><td>1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9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19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조정요청심의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19조(구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td><td>1안)
제1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1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위원회의 구성・임기)</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 습지보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습지보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 ③ (생략)
<u><신 설></u>
④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⑤</u>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⑤</u>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3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환경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td><td>1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2안)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28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분석평가 대상 조문	제8조(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분류	③ 성별 균형 참여	
문제점	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8조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조례개정안	현행 조례	개정안
	제8조(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신 설>	1안) 제8조(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안) 제8조(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선과제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	

2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위원회의 구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5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유치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u><신 설></u>
⑤ (생략)</td><td>1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⑥ (현행과 같음)

2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⑥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위원회의 설치)</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③ 성별 균형 참여</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조례 제7조 생태관광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생태관광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u><신 설></u>
④ (생략)</td><td>1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2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⑤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 '성별 통계' 지표의 검토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환경 분야 자치법규에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별지 등에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란에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31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신청) [별지 제4호서식], 제24조(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 [별지 제25호서식], 제25조(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별지 제27호서식], 제27조(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별지 제33호서식], 제28조(지하수 정화업 등록) [별지 제36호서식], 제30조(계량기 성능검사) [별지 제40호서식], 제31조(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41호서식], 제32조(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 [별지 제42호서식], 제35조(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 신청) [별지 제45호서식], 제40조(온천의 굴착허가 신청) [별지 제50호서식], 제42조(온천의 동력장치 설치 허가 신청) [별지 제52호서식], 제43조(온천의 이용허가 신청) [별지 제54호서식], 제45조(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별지 제56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 [별지 제4호서식], 제24조 [별지 제25호서식], 제25조 [별지 제27호서식], 제27조 [별지 제33호서식], 제28조 [별지 제36호서식], 제30조 [별지 제40호서식], 제31조 [별지 제41호서식], 제32조 [별지 제42호서식], 제35조 [별지 제45호서식], 제40조 [별지 제50호서식], 제42조 [별지 제52호서식], 제43조 [별지 제54호서식], 제45조 [별지 제56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 제안</td></tr>
<tr><td>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td><td>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남, 여)
주 소 | (전화번호 :</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25호서식]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25호서식]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27호서식]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별지 제27호서식]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남, 여)
	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별지 제33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별지 제33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별지 제36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별지 제36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1호서식]

지하수 원수대금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1호서식]

지하수 원수대금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2호서식]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2호서식]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5호서식]

인공함양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5호서식]

인공함양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9호서식]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49호서식]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table>
<tr><td></td><td>

[별지 제50호서식]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td><td></td><td>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able>

[별지 제52호서식]

동력장치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td><td></td><td>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able>

[별지 제54호서식]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td><td></td><td>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able>

[별지 제56호서식]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자</td><td>처리기간 4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 colspan="2">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td><td>생년월일</td></tr>
<tr><td colspan="2">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td><td>전화번호</td></tr>
</table>

</td><td>

[별지 제50호서식]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td><td></td><td>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able>

[별지 제52호서식]

동력장치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td><td></td><td>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able>

[별지 제54호서식]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td><td></td><td>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td><td>(남, 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able>

[별지 제56호서식]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자</td><td>처리기간 4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 colspan="2">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td><td>생년월일
(남, 여)</td></tr>
<tr><td colspan="2">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td><td>전화번호</td></tr>
</table>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32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급수공사의 승인 신청)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절차·요건) [별지 제5호서식] , 제15조(특수가압시설 신청 및 허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 제21조(급수설비의 변동사항 신고 등)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제22조(급수의 판매) [별지 제15호서식] , 제28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조정) [별지 제18호서식] , 제29조(수도계량기 성능검사) [별지 제19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 제15조 [별지 제7호서식] , 제21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제22조 [별지 제15호서식] , 제28조 [별지 제18호서식] , 제29조 [별지 제19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 도 사 업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 리 기 간 28일(간이상수도 21일)
신 고 인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
수전위치
급수종별 | 공 사 구 분 | 신설, 증설, 개조, 위치변경
월소유량 | 급수전수 및 구경
건 축 물 허가유무 | 허가 번호 | 허 가 년월일 | 건축주 | 용 도
위와 같이 급수를 받으려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분기점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은 귀 도의 소유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td><td>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수 도 사 업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 리 기 간 28일(간이상수도 21일)
신 고 인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
수전위치
급수종별 | 공 사 구 분 | 신설, 증설, 개조, 위치변경
월소유량 | 급수전수 및 구경
건 축 물 허가유무 | 허가 번호 | 허 가 년월일 | 건축주 | 용 도
위와 같이 급수를 받으려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분기점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은 귀 도의 소유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생년월일
성별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려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인)

주 소	가구주	인	비고

[별지 제4호서식]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려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인)

주 소	가구주	성별	인	비고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1. 영업장소 :
2. 상 호 : (전화번호 :)
3. 대 표 자 : 성명 (생년월일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으려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덧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1. 영업장소 :
2. 상 호 : (전화번호 :)
3. 대 표 자 : 성명 (생년월일 : 성별:)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으려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덧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에 따른 모든 시설물(토지, 건물을 포함한다)을 귀도의 소유로 기부채납 할 것을 신청합니다.

시설위치						
기 부 채 납 내 역						
시 설 물	별첨 설계도서와 같음.					
토 지	지번		지목		목적	
건 물	지번		구조		면적	

20 년 월 일

운영회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에 따른 모든 시설물(토지, 건물을 포함한다)을 귀도의 소유로 기부채납 할 것을 신청합니다.

시설위치						
기 부 채 납 내 역						
시 설 물	별첨 설계도서와 같음.					
토 지	지번		지목		목적	
건 물	지번		구조		면적	

20 년 월 일

운영회 대표자
주 소
성 별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민원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 )월분 고지서 사항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민원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 목	급수전 소재지	내 용	비 고

[별지 제13호서식]

민원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 )월분 고지서 사항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민원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별 :
성 명 : (인)

제 목	급수전 소재지	내 용	비 고

[별지 제14호서식]

☐ 유리파손에 따른 교체
수도계량기 신청서
☐ 분실에 따른 설치

◇ 급수전 소재지 :
◇ 수용가 번호 :
◇ 수 용 가 명 :
◇ 규 격 :
◇ 신 청 사 유 :

상기 소재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 유리 파손에 따른 교체 □ 분실에 따른 설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계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 유리파손에 따른 교체
수도계량기 신청서
☐ 분실에 따른 설치

◇ 급수전 소재지 :
◇ 수용가 번호 :
◇ 수 용 가 명 :
◇ 규 격 :
◇ 신 청 사 유 :

상기 소재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 유리 파손에 따른 교체 □ 분실에 따른 설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별 :
성명 : (관계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급수판매 승인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수도전번호	
	상 호 및 성명 (관리인)		연락처 (전화번호)	
판 매 용 도		공용급수, 선박급수		

[별지 제15호서식]

급수판매 승인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수도전번호	
	상 호 및 성명 (관리인)	(남, 여)	연락처 (전화번호)	
판 매 용 도		공용급수, 선박급수		

<table>
<tr>
<td></td>
<td>
[별지 제18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옥내 누수요금 적용 신청서</td></tr>
<tr><td rowspan="2">수용가</td><td>주 소</td><td></td><td>성 명</td><td></td></tr>
<tr><td>수용가번호</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신고내용</td><td>누수일시</td><td></td><td>누 수
수리일자</td><td></td></tr>
<tr><td>누수위치 및
누수발생사유</td><td colspan="3"></td></tr>
</table>
본인이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td>
<td>
[별지 제18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옥내 누수요금 적용 신청서</td></tr>
<tr><td rowspan="2">수용가</td><td>주 소</td><td></td><td>성 명</td><td>(남, 여)</td></tr>
<tr><td>수용가번호</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신고내용</td><td>누수일시</td><td></td><td>누 수
수리일자</td><td></td></tr>
<tr><td>누수위치 및
누수발생사유</td><td colspan="3"></td></tr>
</table>
본인이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td>
</tr>
<tr>
<td></td>
<td>
[별지 제19호서식]
수도계량기 검사 신청서

◇ 급수전소재지 :
◇ 수용가 번호 :
◇ 수 용 가 명 :
◇ 규 격 :

상기 소재지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는 금번 수도 사용량에 차이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수도 계량기를 검사하려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계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td>
<td>
[별지 제19호서식]
수도계량기 검사 신청서

◇ 급수전소재지 :
◇ 수용가 번호 :
◇ 수 용 가 명 :
◇ 규 격 :

상기 소재지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는 금번 수도 사용량에 차이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수도 계량기를 검사하려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계 :)
성별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td>
</tr>
<tr>
<td>개선과제</td>
<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
</tr>
</table>

3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별지 제1호서식], 제9조(지원 신청 등) [별지 제3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h colspan="5">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th></tr><tr><td rowspan="3">신청자</td><td>건축물(시설)명</td><td colspan="3"></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이 름</td><td></td><td>준공일</td><td></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h colspan="5">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th></tr><tr><td rowspan="3">신청자</td><td>건축물(시설)명</td><td colspan="3"></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이 름</td><td>(남, 여)</td><td>준공일</td><td></td></tr></table></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table><tr><th colspan="5">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th></tr><tr><td rowspan="3">신청자</td><td>건축물(시설)명</td><td colspan="3"></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이 름</td><td></td><td>준공일</td><td></td></tr></table></td><td>[별지 제3호서식]
<table><tr><th colspan="5">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th></tr><tr><td rowspan="3">신청자</td><td>건축물(시설)명</td><td colspan="3"></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r><td>이 름</td><td>(남, 여)</td><td>준공일</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4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및 공사비의 환부)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감면)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4">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4">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td><td>처리기한
7일</td></tr><tr><td rowspan="3">설치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3"></td></tr><tr><td>성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4">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td><td>처리기한
7일</td></tr><tr><td rowspan="3">설치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3"></td></tr><tr><td>성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table></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5">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td><td>처리기한
7일</td></tr><tr><td rowspan="2">신청자</td><td>주 소</td><td colspan="2"></td><td>상 호</td><td></td></tr><tr><td>생년월일</td><td></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5">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td><td>처리기한
7일</td></tr><tr><td rowspan="2">신청자</td><td>주 소</td><td colspan="2"></td><td>상 호</td><td></td></tr><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table><tr><td colspan="5">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td><td>처리기한
15일</td></tr><tr><td rowspan="2">신청자</td><td>주 소</td><td colspan="2"></td><td>상 호</td><td></td></tr><tr><td>생년월일</td><td></td><td>대표자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제3호서식]
<table><tr><td colspan="5">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td><td>처리기한
15일</td></tr><tr><td rowspan="2">신청자</td><td>주 소</td><td colspan="2"></td><td>상 호</td><td></td></tr><tr><td>생년월일</td><td>(남, 여)</td><td>대표자성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별지 제10호서식]
<table><tr><td colspan="5">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td><td>처리기한
5일</td></tr><tr><td rowspan="3">사용자</td><td>하수번호</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tr><td>주 소</td><td></td><td>상 호</td><td colspan="2"></td></tr><tr><td>업 태</td><td></td><td>대표자성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d>[별지 제10호서식]
<table><tr><td colspan="5">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td><td>처리기한
5일</td></tr><tr><td rowspan="3">사용자</td><td>하수번호</td><td></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남, 여)</td></tr><tr><td>주 소</td><td></td><td>상 호</td><td colspan="2"></td></tr><tr><td>업 태</td><td></td><td>대표자성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3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table>
<tr><td colspan="2">사업의 명칭</td><td></td></tr>
<tr><td rowspan="3">사업 시행자</td><td>명칭(상호)</td><td></td></tr>
<tr><td>대표자</td><td>(연락처 :)</td></tr>
<tr><td>소재지</td><td>(연락처 :)</td></tr>
</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table>
<tr><td colspan="2">사업의 명칭</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사업 시행자</td><td>명칭(상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td><td>(남, 여)</td><td>(연락처 :)</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2">(연락처 :)</td></tr>
</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9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5">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td></tr><tr><td colspan="2">개방화장실 명칭
(상 호)</td><td colspan="3"></td></tr><tr><td rowspan="2">개방시간
선 택</td><td>상시개방화장실</td><td colspan="3">24시간 개방 (00:00 ~ 24:00)</td></tr><tr><td>정시개방화장실</td><td colspan="3">일정한 시간만 개방(○○시부터 ○○시까지)</td></tr><tr><td colspan="2">건물주(또는 관리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table></td><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5">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td></tr><tr><td colspan="2">개방화장실 명칭
(상 호)</td><td colspan="3"></td></tr><tr><td rowspan="2">개방시간
선 택</td><td>상시개방화장실</td><td colspan="3">24시간 개방 (00:00 ~ 24:00)</td></tr><tr><td>정시개방화장실</td><td colspan="3">일정한 시간만 개방(○○시부터 ○○시까지)</td></tr><tr><td colspan="2">건물주(또는 관리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able></td></tr>
<tr><td>[별지 제4호서식]
<table><tr><td colspan="3">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td><td>처리기간
3일</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상 호(명칭)</td><td colspan="3"></td></tr><tr><td>성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4호서식]
<table><tr><td colspan="3">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td><td>처리기간
3일</td></tr><tr><td rowspan="3">신청인</td><td>상 호(명칭)</td><td colspan="3"></td></tr><tr><td>성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5조(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현행검토조례 제5조 제4호 실태조사 시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21년 4월 20일 기준, 국내 석면피해구제인정자는 5088명이며, 이 중 남녀성비는 남자 3,374명(66.3%), 여자 1,714명(33.7%) 분포됨(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지원센터(2021). “석면피해구제시스템,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현황”(2021.4.30.). 발생 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50~70대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2~3배정도 많이 발생함.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노출 및 건강 위해성은 성별, 거주력, 연령, 직업군, 활동양상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를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예방책 및 발병에 대한 대비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제18조 참고).</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생략)</td><td>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3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2조(사용 신청 등)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2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자: 주 소 / 기관 또는 단체명 / 전화번호 / 성 명 (대표자)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 주소 / 기관 또는 단체명 / 전화번호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td><td>[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자: 주 소 / 기관 또는 단체명 / 전화번호 / 성 명 (대표자) / 생년월일 (남, 여)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 주소 / 기관 또는 단체명 / 전화번호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남, 여)</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39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지원신청) [별지 제1호서식]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별지 제2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3">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설치, □개선,□악취저감) 지원사업 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인</td><td>①상호(사업장 명칭)</td><td colspan="3"></td></tr><tr><td>②성명(대표자)</td><td></td><td>③생년월일</td><td></td></tr><tr><td>④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설치, □개선,□악취저감) 지원사업 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인</td><td>①상호(사업장 명칭)</td><td colspan="3"></td></tr><tr><td>②성명(대표자)</td><td></td><td>③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④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table></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설치, □개선, □악취저감) 지급 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인</td><td>①상호(사업장 명칭)</td><td colspan="3"></td></tr><tr><td>②성 명(대표자)</td><td></td><td>③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td><td></td></tr><tr><td>④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table></td><td>[별지 제2호서식]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설치, □개선, □악취저감) 지급 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인</td><td>①상호(사업장 명칭)</td><td colspan="3"></td></tr><tr><td>②성 명(대표자)</td><td></td><td>③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④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40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3조(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제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별지 제2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3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제9조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개정</td></tr>
<tr><td rowspan="3">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장비 보급·비치 신청서</td></tr><tr><td rowspan="4">신청인</td><td>① 상 호</td><td></td><td>② 성 명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tr><td>③사업자등록번호</td><td></td><td>④전화번호</td><td colspan="2"></td></tr><tr><td>⑤ 업 종</td><td></td><td>⑥다량배출
사업자여부</td><td colspan="2">□유 □무</td></tr><tr><td>⑦주소(사업장)</td><td colspan="4"></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장비 보급·비치 신청서</td></tr><tr><td rowspan="4">신청인</td><td>① 상 호</td><td></td><td>② 성 명
(생년월일)</td><td colspan="2">(남, 여)</td></tr><tr><td>③사업자등록번호</td><td></td><td>④전화번호</td><td colspan="2"></td></tr><tr><td>⑤ 업 종</td><td></td><td>⑥다량배출
사업자여부</td><td colspan="2">□유 □무</td></tr><tr><td>⑦주소(사업장)</td><td colspan="4"></td></tr></table></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4">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td><td>처리기한
즉 시</td></tr><tr><td rowspan="3">신고인</td><td>① 상 호(명 칭)</td><td></td><td>②사업자등록번호</td><td></td></tr><tr><td>③ 성 명(대표자)</td><td></td><td>④ 생 년 월 일</td><td></td></tr><tr><td>⑤ 주 소(사업장)</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4">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td><td>처리기한
즉 시</td></tr><tr><td rowspan="3">신고인</td><td>① 상 호(명 칭)</td><td></td><td>②사업자등록번호</td><td></td></tr><tr><td>③ 성 명(대표자)</td><td></td><td>④ 생 년 월 일</td><td>(남, 여)</td></tr><tr><td>⑤ 주 소(사업장)</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41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제15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별지 제6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7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제15조 [별지 제6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3">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2호의2서식]
<table><tr><td colspan="5">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서</td></tr><tr><td rowspan="2">폐기물
배출자</td><td>성명</td><td></td><td>연락처</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2호의2서식]
<table><tr><td colspan="5">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서</td></tr><tr><td rowspan="2">폐기물
배출자</td><td>성명</td><td>(남, 여)</td><td>연락처</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별지 제6호서식]
<table><tr><td colspan="3">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td><td>처리기간</td></tr><tr><td colspan="3"></td><td>3일</td></tr><tr><td rowspan="3">신
청
인</td><td>상호(명 칭)</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tr><td>성명(대표자)</td><td></td><td>생 년 월 일</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d>[별지 제6호서식]
<table><tr><td colspan="3">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td><td>처리기간</td></tr><tr><td colspan="3"></td><td>3일</td></tr><tr><td rowspan="3">신
청
인</td><td>상호(명 칭)</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tr><td>성명(대표자)</td><td></td><td>생 년 월 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 :)</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42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조(반출승인 등) [별지 제1호서식] , 제5조(승인서 교부)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반입보고) [별지 제4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4">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도외반출 승인 신청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1호서식]
<table><tr><td colspan="4">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도외반출 승인 신청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5">제 호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도외반출 승인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2호서식]
<table><tr><td colspan="5">제 호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도외반출 승인서</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별지 제4호서식]
<table><tr><td colspan="5">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입보고서</td></tr><tr><td rowspan="2">보고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제4호서식]
<table><tr><td colspan="5">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입보고서</td></tr><tr><td rowspan="2">보고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 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43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7조(융자절차) [별지 제1호 서식], 제16조(사후관리) [별지 제5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이며,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제16조 [별지 제5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td><td>[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주 소 | (전화 :)</td></tr>
<tr><td>[별지 제5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채무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td><td>[별지 제5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채무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주 소 |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44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21조(에너지복지 등)</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제21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유용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 ③ (생략)</td><td>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u>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u>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5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6조(풍력발전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제4항 [별지 제3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6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제4항 [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4">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20일
공 사 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 전 화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또는 소재지</td><td>[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20일
공 사 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남, 여) / 전 화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또는 소재지</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
공 사 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 전 화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또는 소재지</td><td>[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
공 사 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남, 여) / 전 화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또는 소재지</td></tr>
<tr><td>[별지 제3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공 사 명
신고인: ①대표자 성명 / ②전화 / ③회사명 또는 상호 / ④주소 또는 소재지</td><td>[별지 제3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공 사 명
신고인: ①대표자 성명 (남, 여) / ②전화 / ③회사명 또는 상호 / ④주소 또는 소재지</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46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7조(손실보상) [별지 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이며,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7조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서식]
<table><tr><td colspan="4">손 실 보 상 청 구 서</td><td>처리기간
30일</td></tr><tr><td rowspan="2">청구인</td><td>①성 명</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td></tr><tr><td>③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 -)</td></tr></table></td><td>[별지 서식]
<table><tr><td colspan="4">손 실 보 상 청 구 서</td><td>처리기간
30일</td></tr><tr><td rowspan="2">청구인</td><td>①성 명</td><td></td><td>②성년월일</td><td>(남, 여)</td></tr><tr><td>③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 -)</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47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12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별지제3호서식], 제18조(수렵승인 등) [별지 제5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제13조 [별지제3호서식], 제18조 [별지 제5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td><td>[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 기관명 / 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④ 소재지 (전화번호:)</td><td>[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 기관명 / 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남, 여) / ④ 소재지 (전화번호:)</td></tr>
<tr><td></td><td>[별지제3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td><td>[별지제3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주소 (전화번호:)</td></tr>
<tr><td></td><td>[별지 제5호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td><td>[별지 제5호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주 소</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48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환경산업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제안</td></tr>
<tr><td rowspan="2">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td><td>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환경산업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조례 개정</td></tr>
</table>

49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40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별지 제13호서식], 제41조(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별지 제14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40조 [별지 제13호서식], 제41조 [별지 제14호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3호서식]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신청서 |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 호 (명 칭)
②성 명 (대표자) | ③생년월일
④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td><td>[별지 제13호서식]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신청서 |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 호 (명 칭)
②성 명 (대표자) | ③생년월일 (남, 여)
④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td></tr>
<tr><td>[별지 제14호서식]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신청서 |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 호 (명 칭)
②성 명 (대표자) | ③생년월일
④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td><td>[별지 제14호서식]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신청서 |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 호 (명 칭)
②성 명 (대표자) | ③생년월일 (남, 여)
④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50

<table>
<tr><td>조례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별지 제1호서식] ,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별지 제2호서식]</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성별분리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 통계 자료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초자료임.
「통계법」 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td></tr>
<tr><td rowspan="3">조례개정안</td><td>현행 조례</td><td>개정안</td></tr>
<tr><td>[별지 제1호서식]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 주 소 | 우 (전화 :)</td><td>[별지 제1호서식]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남, 여)
신청인 | 주 소 | 우 (전화 :)</td></tr>
<tr><td>[별지 제2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접수(※) | 제 호 | 처리기간
처리(※) | 제 호 | 4년
토지소유자 | ①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토지소유자 | ③주 소 | 우 (전화 :)</td><td>[별지 제2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접수(※) | 제 호 | 처리기간
처리(※) | 제 호 | 4년
토지소유자 | ①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남, 여)
토지소유자 | ③주 소 | 우 (전화 :)</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td></tr>
</table>

51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 16</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4">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보존자원 이동신고서</td><td>처리
기한
3일</td></tr>
<tr><td rowspan="5">신청인</td><td>①상호
(명칭)</td><td></td><td>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③성명
(대표자)</td><td></td><td>④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⑤공사
명</td><td></td><td rowspan="2">⑥운반
책임자</td><td>성 명</td><td></td></tr>
<tr><td>⑦주소
(사무실)</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r><td>⑧주소
(현장)</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able></td><td>별지 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보존자원 이동신고서</td><td>처리
기한
3일</td></tr>
<tr><td rowspan="5">신청인</td><td>①상호
(명칭)</td><td></td><td>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③성명
(대표자)</td><td></td><td>④생년월일</td><td colspan="2">(남, 여)</td></tr>
<tr><td>⑤공사
명</td><td></td><td rowspan="2">⑥운반
책임자</td><td>성 명</td><td></td></tr>
<tr><td>⑦주소
(사무실)</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r><td>⑧주소
(현장)</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able></td></tr>
<tr><td>별지 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td></tr>
<tr><td rowspan="5">신청인</td><td>①상호
(명칭)</td><td></td><td>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③성명
(대표자)</td><td></td><td>④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⑤공사
명</td><td></td><td rowspan="2">⑥운반
책임자</td><td>성 명</td><td></td></tr>
<tr><td>⑦주소
(사무실)</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r><td>⑧주소
(현장)</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able></td><td>별지 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td></tr>
<tr><td rowspan="5">신청인</td><td>①상호
(명칭)</td><td></td><td>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③성명
(대표자)</td><td></td><td>④생년월일</td><td colspan="2">(남, 여)</td></tr>
<tr><td>⑤공사
명</td><td></td><td rowspan="2">⑥운반
책임자</td><td>성 명</td><td></td></tr>
<tr><td>⑦주소
(사무실)</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r><td>⑧주소
(현장)</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able></td></tr>
</table>

별지 3호 서식

보존자원매매업	□사업 □사업 변경	계획서	처리 기간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별지 3호 서식

보존자원매매업	□사업 □사업 변경	계획서	처리 기간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생년월일	(남, 여)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별지 4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별지 4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남, 여)
	③ 주소	(전화번호 :)		

별지 5호 서식

제 호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증			
① 상호			
②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③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대표자 ④ 성명		⑤ 생년월일	
대표자 ⑥ 주소	(전화번호 :)		

별지 5호 서식

제 호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증			
① 상호			
②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③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대표자 ④ 성명		⑤ 생년월일	(남, 여)
대표자 ⑥ 주소	(전화번호 :)		

별지 6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대장			
① 허가번호			
② 상호		③ 허가년월일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대표자 ⑥ 성명		⑦ 생년월일	
대표자 ⑧ 주소	(전화번호 :)		

별지 6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대장			
① 허가번호			
② 상호		③ 허가년월일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대표자 ⑥ 성명		⑦ 생년월일	(남, 여)
대표자 ⑧ 주소	(전화번호 :)		

별지 7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① 허가번호				
② 상호		③ 허가년월일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대표자	⑥ 성명		⑦ 생년월일	
	⑧ 주소	(전화번호 :)		

별지 7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① 허가번호				
② 상호		③ 허가년월일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대표자	⑥ 성명		⑦ 생년월일	(남, 여)
	⑧ 주소	(전화번호 :)		

별지 8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				처리 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별지 8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				처리 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남, 여)
	③ 주소	(전화번호 :)		

별지 9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① 허가번호		② 허가년월일		
③ 상호				
④ 영업장소				
대표자	⑤ 성명		⑥ 생년월일	
	⑦ 주소	(전화번호 :)		

별지 9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① 허가번호		② 허가년월일		
③ 상호				
④ 영업장소				
대표자	⑤ 성명		⑥ 생년월일	(남, 여)
	⑦ 주소	(전화번호 :)		

별지 10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상황부

매입(매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별지 10호 서식. 보존자원 매매상황부

매입(매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별지 11호 서식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별지 11호 서식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남, 여)
	③주소	(전화번호 :)	

별지 12호 서식

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한 3일
반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채취자(판매자)	④성명	⑤생년월일	
	⑥주소		

별지 12호 서식

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한 3일
반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채취자(판매자)	④성명	⑤생년월일	(남, 여)
	⑥주소		

별지 13호 서식. 반출증 발부대장

채취자(판매자)		채취지 및 판매소	반출 수량	반출 기간	수요자(반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성 명(생년월일)	주 소

별지 13호 서식. 반출증 발부대장

채취자(판매자)			채취지 및 판매소	반출 수량	반출 기간	수요자(반출자)		
성명(생년월일)	성별	주소				성 명(생년월일)	성별	주 소

별지 14호 서식

제 호 보존자원 도외 반출증				
반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채취지				
판매소				
반출수량		용 도		
반출지				
수요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별지 14호 서식

제 호 보존자원 도외 반출증				
반출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채취지				
판매소				
반출수량		용 도		
반출지				
수요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별지 15호 서식

제 호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반출예정지		용도		

별지 15호 서식

제 호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반출예정지		용도		

<table>
<tr><td></td><td>별지 16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제 호
발출허가 미대상 증명서</td></tr><tr><td rowspan="2">반출자</td><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3"></td></tr></table></td><td>별지 16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제 호
발출허가 미대상 증명서</td></tr><tr><td rowspan="2">반출자</td><td>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52

<table>
<tr><td>시행규칙명</td><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td></tr>
<tr><td>분석평가
대상 조문</td><td colspan="2">별지 1, 3, 5, 6, 8, 10</td></tr>
<tr><td>분류</td><td colspan="2">④ 성별 통계</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2">「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 별지에서는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td></tr>
<tr><td>개선의견</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td></tr>
<tr><td rowspan="4">시행규칙
개정안</td><td>현행 시행규칙</td><td>개정안</td></tr>
<tr><td>별지 1호 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및 취소 대장
<table><tr><td colspan="2">포획승인</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주소</td></tr><tr><td>번호</td><td>일자</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1호 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및 취소 대장
<table><tr><td colspan="2">포획승인</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생년
월일</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주소</td></tr><tr><td>번호</td><td>일자</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별지 3호 서식. 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 대장
<table><tr><td colspan="3">신고자</td></tr><tr><td>성명</td><td>주소</td><td>생년월일</td></tr><tr><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3호 서식. 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 대장
<table><tr><td colspan="4">신고자</td></tr><tr><td>성명</td><td>주소</td><td>생년월일</td><td>성별</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별지 5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td></tr><tr><td>한글</td><td></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r><tr><td>한자</td><td></td></tr></table></td><td>별지 5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
(　　년도)</td></tr><tr><td>한글</td><td></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남, 여)</td></tr><tr><td>한자</td><td></td></tr></table></td></tr>
<tr><td>별지 6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수렵장종사자 신고서</td></tr><tr><td>한글</td><td></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r><tr><td>한자</td><td></td></tr></table></td><td>별지 6호 서식
<table><tr><td colspan="4">수렵장종사자 신고서</td></tr><tr><td>한글</td><td></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남, 여)</td></tr><tr><td>한자</td><td></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별지 8호 서식. 수렵장종사자 증명서 발급대장
<table><tr><td>발급
번호</td><td>발급일
자</td><td>성명</td><td>주소</td><td>생년
월일</td><td>직
업</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지 8호 서식. 수렵장종사자 증명서 발급대장
<table><tr><td>발급
번호</td><td>발급
일자</td><td>성명</td><td>주소</td><td>생년월일</td><td>성별</td><td>직업</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td><td>별지 10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td></tr><tr><td>승인얻은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4"></td></tr></table></td><td>별지 10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제 호
수렵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td></tr><tr><td>승인얻은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 여)</td></tr><tr><td>주소</td><td colspan="4"></td></tr></table></td></tr>
<tr><td>개선과제</td><td colspan="2">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 개정</td></tr>
</table>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 성인지적 자치법규를 위한 개선과제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 본 연구는 2021년 4월 19일 기준 1,039개의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조례, 시행규칙)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지표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음.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로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전체 결과는 아래 표 4-1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총 389개였음.

- 분야별로 개선이 요구되는 자치법규 수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개, '교육' 분야는 9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개, '농림' 분야는 31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0개, '보건' 분야는 18개, '사회복지' 분야는 57개,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는 11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4개, '재정·세제·금융' 분야는 4개, '지역개발' 분야는 12개, '통일·외교' 분야는 6개, '해양수산' 분야는 16개, '환경' 분야는 46개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 요구 건수는 총 495건으로 나타났음.

- 지표별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에서는 개선 요구 건수가 14건이었고, '성별 특성' 지표에서는 77건, '성별 균형 참여' 지표에서는 253건, '성별 통계' 지표에서는 151건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0건, '교육' 분야가 12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1건, '농림' 분야가 38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18건, '보건' 분야가 21건, '사회복지' 분야가 75건,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가 11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6건, '재정·세제·금융' 분야가 5건, '지역개발' 분야가 19건, '통일·외교' 분야가 9건, '해양수산' 분야가 18건, '환경' 분야가 52건으로 나타났음.

〈표 4-1〉 성인지적 개선 요구 자치법규 수 및 건수 현황

분야	검토한 자치법규 수(개)	개선 요구 자치법규 수(개)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 요구 건수(건)				
			합계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1. 공공질서 및 안전	55	15	20	3	2	11	4
2. 교육	20	9	12	0	2	4	6
3. 교통 및 물류	62	10	11	0	5	4	2
4. 농림	91	31	38	0	5	26	7
5. 문화·체육·관광	127	80	118	3	20	45	50
6. 보건	47	18	21	0	5	9	7
7. 사회복지	128	57	75	3	20	32	20
8. 산업·통상·중소기업	46	11	11	0	0	11	0
9. 일반공공행정	300	74	86	5	9	58	14
10. 재정·세제·금융	14	4	5	0	0	2	3
11. 지역개발	24	12	19	0	4	10	5
12. 통일·외교	11	6	9	0	0	7	2
13. 해양수산	31	16	18	0	0	9	9
14. 환경	83	46	52	0	5	25	22
총 합계	**1,039**	**389**	**495**	**14**	**77**	**253**	**151**

2. 성인지적 자치법규를 위한 개선과제

가. 성인지적 개선 요구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 앞서 언급되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된 자치법규에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등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인지적인 자치법규가 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개정안도 함께 제시하였음.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성인지적 자치법규가 되기 위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자치법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성별 균형 참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한 자치법규[6]와 별지 및 실태조사 시 성별 조사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을 요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일괄개정을 통하여 한 번에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나. 의원발의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인지적 자치법규가 되기 위하여 앞서 제·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는 계속적으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향후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은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대상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의원발의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의원이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의 심사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원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적 자문체계 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다.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본 연구에서 검토된 자치법규 이후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성별영향평가도 하지만 전문가가 이후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들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특히 의원발의 제·개정 자치법규는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기에 더욱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정기적으로 필요할 것임.

○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제·개정 자치법규를 다시금 검토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성인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라.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성인지 교육 실시

○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과 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된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인지 관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여성친화도시 등으로 이루어

6) 참고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 비율은 88.4%이고, 위촉 위원 수 중 여성위원 참여율은 평균 45.3%로 나타났음(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내부자료).

져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때 '성별영향평가'부문에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내용 및 성인지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자치법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의 연 횟수를 더욱 늘려 좀 더 소수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해주는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컨설턴트를 통하여 공무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의원 및 도의회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등을 통하여 도의원과 도의회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마. 성인지적 자치법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내용으로 하였음. 하지만 자치법규 중에는 성인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음. 성인지적인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성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이처럼 성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자치법규 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하여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좋은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타 지역의 성인지적인 자치법규 사례를 발굴하여 자료화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리고 우수사례 자료집을 배포할 때는 SNS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성인지적인 자치법규 우수사례 자료는 성인지적 자치법규 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강경숙·이해응·고보숙(2019),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인권위원회(2020).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김경희·유희정·마경희·김둘순·문희영·박건표·제정은(2013).「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불굴 및 전략개발」. 여성가족부.

김수완·류연규(2018).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여성학」. 34(3).

김수정(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성별 격차”. 「여성학연구」. 25(1).

김학실·송수진(2008). 「2008 충청북도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장애인 생활체육, 농업경영컨설팅, 장애인정책 환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모지환·배진희(2011). “자살행동 영향 요인 : 성별, 연령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문현주(2015).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재활복지」. 19(3).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관광사업체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박민희·전해옥(2013). “성별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건강행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박정호(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서해정·장명선(2018).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이화젠더법학」 10(2).

선민정·정은숙·홍선영·이화진(2020).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선민정·좌동열·이연화(2020).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실태와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원

송효진·박선영·박복순·남궁윤영·장명선·장민선·장미현·김현아·김효영(2016). 「『지방자치단체 조례(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송효진·윤덕경·박복순·남궁윤영·장명선·한지영·김현아·김효영(2015).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교통·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신승배·손태주(2020).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신승배·손태주(2020).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방안 - 세대 간 특성을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오옥만(2019).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연화(2016).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2019).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재영(2018).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 융복합적 요인: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10).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2018). 「공정 채용 가이드북」.
전국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2018). 「2018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2020). "제주지역 여성농민 성평등 실태조사".
전주상·이창원·조문석·김희강·임현·김현주(2017). 「『지방자치단체 조례 (고용·노동, 교육·학술, 산업·경제·통상 분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전진아(2014). "한국 성인의 성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 우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10(1).
정형옥·서해정·원진실(2009). 「경기도 성차별적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주관광공사(2020), "2020년 관광종사원 교육 실적 정보공개".
조중구(2005). "범죄발생의 도시계획적 함의". 통계청.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7).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최범규·이녹범(2004).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놀이 성향 - R. Caillois의 놀이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4(1).
최지혜·정수연·허준·김경미(2009). "학령기 아동의 놀이 가치와 놀이선택과의 상관관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2016). 「충북지역 어르신의 욕구조사」.
통계청(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2020).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표정선(2009). "국민건강통계에 나타난 성별차이와 여성 내 차이 정신건강, 의료이용,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10(1).
한국관광공사(2018). 「201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2018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9). 「2019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지원센터(2021). “석면피해구제시스템,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현황”(2021.4.30.).
한설희(2019). “먼지와 치매: 대기 오염이 인지 건강과 관계있을까?”. 「J Korean Neurol Assoc」. 37(2).
한애경·최은희·이해진(2018). 「충북 자활근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충북여성재단.
해양수산부(2016).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행정안전부(2019).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2019). 「2019년 지역안전지수」.
호남지방통계청(2020). 「2020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황남희·정경희·오영희·김경래·박신아(2016).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황옥경·한유미·김정화(2018).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놀이·여가 실태에 대한 연구 -연령별, 지역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5).

경향신문, “록 페스티벌 공연장서 여성 성추행 잇따라 몰카 피해도”, 2016. 8. 17.
뉴시스, "'미스OO' 지역축제 성차별적 문구 시정해야”, 2020. 4. 2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2020. 3. 3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2021. 5. 26.
여성신문. “생애 전반의 성차별이 결국 여성 노인 문제 원인”. 2015. 11. 28.
연합뉴스, "작년 공중화장실 범죄 4천528건…5년간 2배 급증”, 2020. 9. 17.
의학신문, “미세먼지가 임신 합병증 발생 위험 높인다”, 2021. 4. 21.
이데일리, “공공기관 임원 5명중 1명은 여성이지만…상임은 고작 5.3%뿐”, 2021. 6. 15.
제주도민일보, “제주개발공사 등 여성 임원 ‘제로(0)’...조례 개정”, 2020. 9. 3.
제주의 소리, “제주 공중화장실 범죄 급증...비상벨 설치 비율은 바닥”, 2020. 10. 6.
제주일보, “공공기관 성불평등 용어 개선해야”, 2019. 10. 21.
프레시안, “출판사 여직원 80% "성폭력 경험 있다”, 2016.11.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보도자료, “국어사전 성차별적 단어”, 2018. 11. 2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2021. 7. 14.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4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발 행 일 2021년 11월 30일
발 행 인 구 만 섭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064-710-6542, Fax.064-710-6519
http://www.jeju.go.kr/index.htm
인 쇄 소 참디자인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791-01